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 11.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기획재정부 : 169건)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 97건

1.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 ····· 2
2.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3
3.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강화 ····· 4
4. 경제심리 안정화 방안 마련 ····· 5
5. 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6
6.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마련 ····· 8
7. 미래혁신산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 9
8. 기업가치 제고 방안 마련 ····· 9
9. 경제전망 오차 개선 방안 마련 ····· 9
10. 수출 증대 방안 마련 ····· 10
11.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인식 개선 대책 마련 ····· 10
12. 개 식용 산업 폐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11
13.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과제에 대한 예산 관리 필요 ····· 11
14.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 11
15.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 12
16. 개인 주식투자자 보호 방안 강화 필요 ····· 13
17.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 14
18. 발산, 원전,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검토 ····· 14
19. 정확한 통계 생성·전달 시스템 구축 ····· 15
20.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 16
21.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 16
22. 공공조달 정책 개선 추진 ····· 16
23. 대북사업 정리 방안 마련 ····· 18
24. 국유재산 관리 강화 ····· 18
25.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 ····· 20
26. 유사담배 규제를 위한 노력 필요 ····· 20
27.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21
28. 불법 복권 사이트 조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21
29.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민간항공기교역협정 문제 해결 필요 ···· 22
30.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계획 등 국회 제출 필요 ····· 22
31.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한 전기요금 결정 필요 ····· 23
32. 핵심 원자재 비축 업무의 광해광업공단 이관계획 수립 ····· 23

33.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23
34.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대책 마련 ····· 24
35. 자료 미제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필요 ····· 24
36. 정부 소비를 포함한 경제전망 발표 필요 ····· 24
37.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25
38. 삼성물산 흡수합병 관련 ISDS 결과 검토 자료 제공 ····· 25
39. 채권 관리 방안 개선 ····· 26
40. R&D 사업 관리 강화 ····· 26
41. 경제안보공급망 관리 체계 개선 ····· 27
42. 편향 우려 경제교육 개선 ····· 27
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 공개 검토 ····· 27
44. 성인지 예산제도 강화 방안 검토 ····· 28
45. 상품권 발행·유통 관리 제도 개선 ····· 28
46. 기금평가 결과 이행 방안 마련 ····· 28
47. 국민연금 운용 환경 개선 방안 마련 ····· 29
48. 예비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29
49.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 ····· 29
50. 재정준칙 법제화 신중 검토 필요 ····· 29
51. 지속가능성 있는 재정 운용 필요 ····· 30
52. 양극화 완화 노력 필요 ····· 30
53. 예산 조기집행 제도 개선 방안 말녀 ····· 30
54.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31
5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31
56. 지방재원 확보 필요 ····· 31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 필요 ····· 32
58. 세수결손 대응 위한 추경 편성 제도화 및 재정청문회 실시 ····· 32
59. 세수 결손 대응 위해 탄력적 재정운용 추진 ····· 33
60. 세수의 주기적 재추계 및 세수추계 결과 성과평가 마련 ····· 33
61.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33
62. 누적법 기반 세수효과 발표 및 대응 추진 ····· 34
63. 불납결손액 관리 위한 법령개선 및 제재 부과방안 마련 ····· 34
6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위해 100% 정부배당금 지양 및
기관별 배당성향 표시 ····· 34
65.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파악 및 수출 증가 위한 대책 마련 ···· 35
66. 반도체 인프라 구축 국가 책임제 검토 ····· 36
67.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 대책 마련 ····· 37
68. 공급망 관련 용어정비 및 핵심광물·원자재 비축·이관 예산
마련 등 ····· 37

69.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대책 마련 ····· 38
70. 경제형벌 완화 과제에 대한 신중한 추진 필요 ····· 38
71.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 39
72. 공무직 임금 인상 등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 40
73. 저출산 대책 마련 ····· 41
74.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 41
75.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41
76.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 42
77.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한 부동산 시장 관리 ····· 42
78. 전세 사기 대응 방안 마련 ····· 42
79. 착한임대인 제도의 보완책 마련 ····· 43
8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 43
81. 공공기관 인력 관리 ····· 44
82. 공공기관 일자리 감축 정책의 문제점 개선 ····· 44
83. 한전 KDN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 개선 ····· 45
84. 공공기관 채용 관련 자료의 제출 ····· 45
85.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 46
86.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 방안 마련 ····· 47
87.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 방안 마련 ····· 47
88.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등 법률 규정 ····· 48
89.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확립 및 방만 경영 개선 ····· 48
90.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도록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현실화 ····· 49
91.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황 개선 노력 ····· 49
92.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개편 ····· 49
93. 온실가스배출권 수입 확대방안 마련 ····· 49
94.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작성 대상사업 확대 ····· 50
95.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산업 관련 지원 확대 ····· 50
96. 기획재정부의 조직구조 개선 방안 마련 ····· 50
97. 성인지예산 활용 인력 및 가이드라인 마련 ····· 51

나. 세제 부문 : 72건

1. 세수 추계 및 세수 결손 대응 관련 제도 개선 ····· 52
2. 2025년 세수 재추계 필요 ····· 54
3. 세수 결손 대응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적인 협의 필요 ····· 54
4. 연례적인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세금 정책 개편 필요 ···· 54
5.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신규 세원 확보 필요 ····· 55

6. 세입 관련 통계 작성 개선 ····· 55
7. 서민·중산층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 시 중위소득 활용 ····· 55
8. 교부세·교부금이 축소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교부방안 마련 ·· 56
9.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의 구조적 개선 필요 ····· 56
10.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필요 ····· 57
11.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관련 방안 마련 ····· 57
12.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및 재저으이 지속가능성 고려 필요 ····· 58
13.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58
14. 종업원 할인 금액 과세 지양 필요 ····· 59
15.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적용 ····· 59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지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 마련 필요 ···· 59
17.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폐지 필요 ····· 60
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 ····· 60
1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의 동시 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61
2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보완 필요 ····· 61
21.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자료 확보 필요 ····· 62
22.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필요 ····· 62
23.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63
24. 주주환원 촉진세제 관련 제도개선 ····· 63
25.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과세방안 등 검토 필요 ····· 64
26.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보완 필요 ····· 64
27. 반도체 산업 법인세 감면 등 검토 필요 ····· 65
28.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필요 ····· 65
29.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 66
30.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 66
31.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 67
32. 민간위탁 R&D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67
33. AI 산출물에 대한 과세전략 방안 검토 필요 ····· 68
34. 톤세제 개선 필요 ····· 68
35.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69
36.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70
37. 기업의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 71
38.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 71
39. 공익법인 제도 활성화 필요 ····· 72
40. 개별소비세 관련 제도 개선 ····· 72

41.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하 신중 검토 필요 ····· 73
42. 가향탁주의 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필요 ····· 73
43. 주세 제도 관련 제도 개선 ····· 74
44. 반려동물세 논의 필요 ····· 74
45. 교통에너지 환경세 관련 제도 개선 ····· 74
4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 조세체계의 정비 검토 필요 ····· 75
47.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우선권 구매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검토 필요 ····· 75
48.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 세수감소 등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76
49.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속세제 등의 개편 필요 ····· 76
50.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 77
51. 가업상속공제 제도 관련 제도 개선 ····· 78
52.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확대 필요 ····· 78
53.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검토 필요 ····· 79
54. 상증세 부담 완화 필요 ····· 79
55. 상증세 인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80
56. 가업상속공제 제도 보완 및 개편 필요 ····· 80
57. 가업상속공제제도 정비 ····· 81
58. 부정무신고가산세 상향 ····· 81
59. 관세 관련 제도 개선 ····· 81
60. 국제조세 관련 제도 개선 ····· 82
61. 조세지출 관련 제도 개선 ····· 83
62. 조세특례 일몰 관련 제도 개선 ····· 85
63.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85
64.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86
65. 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 제도 강화 필요 ····· 86
66.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 필요 ····· 87
67. 세입예산 확대를 위한 세외수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 ····· 87
68. 군납 면세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 87
69. 국세 관련 통계자료 관리 강화 필요 ····· 88
70. 국세 납부 관련 제도 개선 ····· 88
71. 국회 제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필요 ····· 89
72. 관세청 관련 제도 개선 ····· 89

(국세청 : 136건)

1. 납세자 권익구제 제도 개선 필요 ····· 91
2.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적극적 조치 필요 ····· 95
3.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 관련 대안 마련 필요 ····· 96
4.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필요 ····· 98
5. 가상자산 강제 집행 관련 제도 개선 ····· 100
6. 세수 관련 제도 개선 ····· 101
7.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활용 제고 필요 ····· 102
8. 비수도권 지역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인력 확보 필요 ····· 103
9.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활용한 세금 탈루행위 근절 대책 ····· 104
10.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 105
11. 중고거래 관련 매출파악 시스템 정비 ····· 106
12. 홈택스,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등 개선 정비 ····· 107
13. 세무대리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대책 마련 ····· 109
14. 원스톱 세액공제시스템 구축 ····· 110
15. 세무플랫폼 허위과장광고 관련 조사 필요 ····· 111
16. 아프리카 TV BJ의 후원금에 대한 과세 등 대책 마련 ····· 112
17.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 검토 ····· 113
18. 에어비앤비 숙박제공자의 숙박영업 등록 검토 ····· 114
19. 편법증여에 대한 소급과세 및 편법증여 방지대책 마련 ····· 115
20. 미성년자 불법·편법 증여 관련 자료 정리 필요 ····· 116
21.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상 소송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117
22. 소송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118
23. 세무조사 기준 정비 ····· 119
24. 투기성 주택보유 외국인의 취득 등 세무조사 실시 ····· 120
25.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 121
26. 중증환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 122
27. 현장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123
28. 국정조사 등과 관련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검토 ····· 124
29.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관련 산출기준 등 마련 ····· 125
30.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우대혜택 재검토 필요 ····· 126
31. 먹튀 주유소 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 127
32.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 면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128

3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필요 ····· 129
3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30
35.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티몬·위메프사태 피해사업자 외 유사 피해업체 추가 필요 ····· 131
36.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개정 필요 ····· 132
37. 과세정보 적극적 공개 필요 ····· 133
38. 웨딩업체 탈세행태 근절을 위한 노력 및 세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 134
39.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초과납부 원천징수세액 자동환급시스템 구축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 135
40.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일괄납부제 재도입 필요 ····· 136
41. SNS 플랫폼 등을 활용한 조세탈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37
42. 비상장주식 물납관리 철저 ····· 138
4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기준금액 완화 필요 ····· 139
44. 지방 창업기업 확인제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환수 필요 ····· 140
4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141
46. 세금포인트 현금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42
47. 주택임대사업자 탈세 근절을 위해 수입금액 검증인원 확대 필요 ····· 143
48. 부정 무신고 가산세 조항을 해외자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44
49. 조세특례 관련 집행 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 ····· 145
50.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 146
51. 세무조사 유예 법적근거 마련 필요 ····· 147
52.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 제출 제도 유지 필요 ····· 148
53. 공익법인 관리 강화 필요 ····· 149
54.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 강화 필요 ····· 150
55. 체납 전담조직 등 비선호부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151
56. 청년인턴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 152
57.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 개선 필요 ····· 153
58. 배달업계 관련 일관된 사업자 등록지침 마련 필요 ····· 154

59. 골프장 캐디 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 필요 ····· 155
60.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대응 강화 필요 ····· 156
61.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검토 필요 ····· 157
62. CARF 체계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필요 ····· 158
63.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및 수수료 공제 검토 필요 ····· 159
64. 근로장려금 담당 직원 감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 160
6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고소득 유튜버 포함 필요 ····· 161
66.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군부대에 대한 지도 및 조사 수행 필요 ····· 162
6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제도 보완 필요 ····· 163
68.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할 필요 ····· 164
69. 탈세제보 접수 사안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 필요 ····· 165
70.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강화 ····· 166
71. 알머스기업 세무조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치 필요 ····· 167
7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관련 개선방안 마련 ····· 168
7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폐지 ····· 169
74.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 공개 ····· 170
75.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및 환수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171
76.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방식 개선 ····· 172
77. '플리바게닝' 철저 관리 필요 ····· 173
78.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퇴직 후 불로소득 포기 서약 필요 ····· 174
79.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혜택 변경 필요 ····· 175
80.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 ····· 176
81.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율 및 비위 발생률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177
82. 역외탈세 및 조세불복 증가에 대응하여 소송 전문성 강화 등 필요 ····· 178
83.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필요 ····· 179
84.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직원 복귀 ····· 180
85.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원직 공개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필요 ····· 181
86. 국세청 홍보대사 선임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82
87. 국세청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183
88. 국세청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개선책 마련 필요 ····· 184
89. 세무조사 성과평가 방식 변경 필요 ····· 185

90. 인사 조직 관련 제도 개선 ····· 186
91. 청사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191
92.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발굴 노력 필요(서울지방국세청) ····· 193
93.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인천지방국세청) ····· 194
94. 납세인원 급증에 따른 조직 확대 검토 필요(인천지방국세청) ····· 195
95. 인천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세정지원 필요
(인천지방국세청) ····· 196
96. 세무조사 참관제도 실적 개선 필요(중부지방국세청) ····· 197
97.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필요(대전지방국세청) ····· 198
98. 과세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의 엄밀한 적용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199
99. 미수령 환급금 축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200
10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액 관리 필요(대전지방국세청) ····· 201
101. 체납액 및 심판청구 불복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202
10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효과성 제고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203
103.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관련 홍보 강화 및 신고방법 안내 필요(대전지방국세청) ····· 204
104.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205
105.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206
106. 다단계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강구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207
107.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부산지방국세청) ····· 208
108.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부산지방국세청) ····· 211
109. 부산 지역 내 탈세・탈루 관리 감독 강화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213
110. 상속・증여 조사 시 일괄조회 제도의 엄격한 활용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214
111. 영세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 활동 강화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215
112. 서민대상 폭리 수취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근절 대책 마련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216

113. 특별재난지역 납세유예제도 홍보 강화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217
114. ㈜타이거월드 관련 과세처분 오류 시정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218
11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징수유예 및 납부유예 제도
홍보 필요(대구지방국세청) ····· 219
116.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대구지방국세청) ····· 220
117.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대구지방국세청) ····· 221
118. 간병비 세액공제 포함 방안 검토 필요(대구지방국세청) ····· 225
119. 체납액 정리보류 금액 대응 방안 마련 필요(대구지방국세청) ····· 226
120.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대구지방국세청) ····· 227
121. 대구 수성세무서의 조속한 청사 이전 필요(대구지방국세청) ····· 230
122. 세무조사 시 일괄조회 제도의 엄격한 활용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 231
123.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 개선 필요(대구지방국세청) ····· 232
124. 대구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법인세 감면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 233
125. 처리사건이 없는 국선대리인의 연임에 대한 대책 마련
(광주지방국세청) ····· 234
126.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광주지방국세청) ····· 235
127. 국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등을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광주지방국세청) ····· 236
128. 지속적으로 낮은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광주지방국세청) ····· 237
129.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탄력적 집행 검토
(광주지방국세청) ····· 238
130.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광주지방국세청) ····· 239
131. 광주전남지역의 국세수입 목표 설정 시 한국은행과 공조
(광주지방국세청) ····· 240
132.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필요(광주지방국세청) ····· 241
133. 탈세제보의 활용율 제고방안 마련(광주지방국세청) ····· 242
134. 지방국세청에 대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 243
135. 파산 및 회생신청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 244
136. 증가하는 악성·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광주지방국세청) ····· 245

(관세청 : 75건)

1.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247
2. 대마제품의 밀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250
3. 마약탐지견 확대와 마약 레드팀 운영 필요 ····· 251
4. 통관 관련 수사 개입 최소화 필요 ····· 252
5. 통관 인력 증원 필요 ····· 252
6. 첨단 산업기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52
7. 오픈마켓 서면실태 조사 관련 관리책임 전가 등 유의 필요 ····· 253
8. 특송화물을 통한 위험물 반입 방지 필요 ····· 254
9. 노후화된 'e-SEAL'의 최신화 필요 ····· 254
10. 담배의 니코틴 성분 속인 불법업자 처벌 강화 필요 ····· 255
11. 개인통관부호 도용 불법 해외직구에 명의대여행위 적용 필요 ····· 256
12. 식용견 금지 잔여견의 마약 탐지견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256
13. 관세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 등 대책 마련 필요 ·· 257
14. 관세청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258
15. 온라인 플랫폼 내 유해물품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 258
16. 세관별 인력배치 개선 필요 ····· 259
17. 해외직구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60
18.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 재검토 필요 ····· 260
19. 세관의 감시 역량 강화 필요 ····· 261
20. 드론 성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61
21.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의 세관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262
22. 언더밸류를 활용한 관세탈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63
23. 산업기술 유출 피해 관련 수출입관리 강화 필요 ····· 263
24. 북한산 물품의 불법반입 단속 강화 ····· 264
25.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방식 개선 필요 ····· 264
26.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CIQ 인력 충원 필요 ····· 265
27. 특송물량 비용 부담 제도 개선 필요 ····· 265
28. 개인통관고유 부호 유출 차단 필요 ····· 265
29.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 ····· 266
30. 기관 간 협력 개선 필요 ····· 267
31. 위조품 판매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267
32. 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의 화물관리비용 감면 개선 필요 ····· 269
33. 할당관세 정책의 효과성 점검 필요 ····· 269
34. 포괄가격신고 제도 개선 필요 ····· 269
35.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필요 ····· 270
36.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선 필요 ····· 271

37.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확대 필요 ····· 271
38. 면세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 272
39. 불법 환전업체에 대한 대책 보고 필요 ····· 272
40.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확보 필요 ····· 273
41. 카지노 환전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보고 필요 ····· 273
42.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악용 직원에 대한 조치 필요 ····· 274
43. 관세인제개발원 교수 인력 관리 개선 필요 ····· 274
44. 조사 시 인권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시행 필요 ····· 275
45. 성비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75
46. 관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77
47.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 재직중인 협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278
48. 관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축소를 위해 실행계획 마련 ····· 278
49. AEO 인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279
50. 재해복구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 ····· 279
51. 고가 휴대품의 반출신고 관리 필요 ····· 280
52. 압수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보관·관리 개선 ····· 281
53.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중국 제품의 수입현황 파악 실시 등 ····· 281
54. 반도체 등 특수화물의 한-일 복합운송의 간소화 ····· 282
55. 해외직구 의약품 및 유해물질 함유 제품 통관관리 강화 방안 마련 ··· 282
56.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 283
57. 관세청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의혹 등 해소를 위한 조치 실시 ··· 284
58. 관세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재점검 실시 ····· 284
59. 한일간 특수화물 복합운송절차 관련 고시 개선 필요(부산본부세관) ··· 284
60. 드론 활용 등 불법 마약 유통 검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 285
61. 부산본부세관 통관 절차 관련 제도 개선(부산본부세관) ····· 285
62.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 286
63. 관세 체납 징수율 향상 필요(부산본부세관) ····· 286
64. 기업 수출 지원 확대 필요(부산본부세관) ····· 287
65. 외화밀반출입 관련 제도 홍보 및 계도 필요(부산본부세관) ····· 288
6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내 통관 관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 289
67. 철강 수출기업 대상 CBAM 대응 필요(대구본부세관) ····· 290
68. 통관관리 및 조사 단속 강화(대구본부세관) ····· 291
69. 불법마약 단속 강화 필요(대구본부세관) ····· 291
70.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대구본부세관) ····· 292
71. 군산세관의 검색기 추가 배치 필요(대구본부세관) ····· 293
72. 서남해권 관할 분석실 마련(광주본부세관) ····· 294
73. JDC 활성화 방안 마련(광주본부세관) ····· 295
74. 세액탈루 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방안 마련(광주본부세관) ··· 296
75. 군산세관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광주본부세관) ····· 297

(조달청 : 14건)

1.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299
2. 혁신제품 시범사용 확대 ····· 300
3. 조달 공정성 강화 및 조달제도 보완 ····· 300
4.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제도 보완 ····· 302
5.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 제도 개선 ····· 303
6.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 간 조화로운 운영방안 마련 ····· 304
7. 국가보안시설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 마련 ····· 304
8. 조달청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 강화 ····· 305
9.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자체계약 건에 대한 관리 강화 ····· 305
10. 조달청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 306
11. 공공주택 계약의 부실 심사 방지 방안 마련 ····· 306
12. 중소기업 지원 강화 ····· 307
13. G-PASS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308
14.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마련 ····· 308

(통계청(現 국가데이터처) : 22건)

1. 물가지수 등 통계지표 체감도 제고 ····· 310
2. 지역별 GRDP 작성 시기 개선 ····· 310
3.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310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포함 ····· 311
5. 통계작성 변경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 ····· 311
6. 농가경제조사 작성 개선 ····· 312
7. 통계 발표 시차 및 주기 단축 ····· 313
8.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계 확충 ····· 314
9. 안전한 통계 조사 환경 조성 ····· 315
10. 조직 및 운영 개선 ····· 315
11.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 필요 ····· 317
12. 타 기관 통계와의 정합성 필요 ····· 317
13. 출산율 추계의 정확성 개선 필요 ····· 318
14. 60~64세를 포함하여 연금통계 작성 필요 ····· 318
15. 사회적 고립도 조사 실시 필요 ····· 319
16. 가계부채 관련 통계 개선 필요 ····· 319
17.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는 지수 개발 필요 ····· 319
18. 자산불평등에 대한 통계 개발 및 기후위기에 대한 분석 필요 ····· 320
19. 통계조사원 처우 개선 필요 ····· 321
20.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 개선 노력 필요 ····· 321
21. 외국인 사망자 관련 통계 생산 필요 ····· 322
22. IMD 국가경쟁력지수 관련 검토 필요 ····· 323

(한국은행 : 34건)

1.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의 병행 ····· 325
2.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 326
3.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 제고 ····· 327
4. 경제전망 오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328
5.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개선 ····· 329
6.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 330
7. 대외변동성 대응 방안 마련 ····· 331
8. 대정부 일시대출금 활용에 있어 부대조건 준수 ····· 332
9. 한국은행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대 ····· 333
10. 자영업자를 고려한 가계대출비율 축소 방안 마련 ····· 334
11.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된 부동산 정책 실시 ····· 335
1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 336
13.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대출의 방지 ····· 337
14.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실효성 제고 ····· 338
15.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검토 ····· 339
1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제도 정비 및 제반 환경 조성 ····· 340
17. 지역거점국립대학 육성방안 마련 ····· 341
18.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정책 검토 ····· 342
19. 지역본부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 강화 ····· 343
20.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목표 추가 고려 ····· 344
21. 한국은행의 내부 조직구조 개선 ····· 345
22. 국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방안 마련 ····· 346
23. 금융통화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다양성 확보 ····· 347
24. 비은행 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348
25. 한국은행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 지양 ····· 349
26. 위조지폐 방지대책 마련 ····· 350
27. 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 ····· 351
28.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통한 가사도우미 제도 확대 ····· 352
29. 녹색채권 발행의 확대 ····· 353
30.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354
31. PF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계획 마련 ····· 355
32.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에 대한 용역 검토 ····· 356
33. 국가 총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357
34.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검토 ····· 358

(한국수출입은행 : 12건)

1. 대규모 방산 수주 위한 수은 내 전담조직 구성 및 특화된 금융지원 수단 개발 ····· 360
2. 특정 계열에 편중된 동일차주 신용공여 관리 철저 ····· 361
3. 대출·보증 연계 직접투자 규정 개정 및 펀드출자 제약 완화 검토 ····· 362
4.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방식 다양화 ····· 363
5.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면밀한 관리 ····· 365
6. 중소기업 등 지원강화 ····· 366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내실화 ····· 368
8. EDCF 사업 관리 강화 ····· 369
9.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여신관리 ····· 373
10. 현물출자 비율, 동일차주 신용공여 및 KAI 지분 관리 등 강화 ····· 374
11. 남북협력기금 사업관리 및 법원에 공탁된 북한 자금 가압류 등 ····· 376
12.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 378

(한국조폐공사 : 18건)

1. 모바일 신분증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382
2. 전자여권 핵심자재 국산화 추진 ····· 382
3. 여권 재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 383
4.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 압인 도입 ····· 383
5.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 384
6. 기술개발 개선 방안 마련 ····· 384
7. 화폐 내구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 ····· 385
8. 여권 발급 절차 개선 ····· 385
9.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 문제 해결 ···· 386
10. 조폐공사 판매·전시 시설 실적 개선 방안 마련 ····· 386
11. 휴가 관련 제도 개편 필요 ····· 387
12. 여성 임직원 비율 확대 ····· 388
13. GKD 경영 실태 개선 방안 마련 ····· 389
14. 지역 본부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 강화 ····· 390
15.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390
16. 사업타당성과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 필요 ····· 391
17.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관련 제도 개선 ····· 391
18. 조폐공사 사업의 다각화 방안 검토 ····· 392

(한국투자공사 : 4건)

1.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 전문인력의 높은 퇴직률 개선 ····· 394
2. 저조한 투자수익률 개선 및 전략적 투자 대책 마련 ····· 395
3. 국부펀드로서의 사회적 책무 등 수행 ····· 398
4.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 402

(한국재정정보원 : 6건)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 향상을 위한 노력 ····· 407
2. 디브레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408
3.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이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 ····· 409
4. 재정정보분석센터의 효율적 운영 ····· 410
5. 사무실 이전 임대계약 시 예산 낭비 여부 확인 ····· 410
6. 장애인·청년 의무 고용 준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인사제도 개선 ··· 411

(한국원산지정보원 : 4건)

1. 원산지정보원의 역할 강화 필요 ····· 413
2. 조직 운영 관련 개선 ····· 414
3.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자격시험 관리 개선 ····· 414
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수요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마련 ····· 415

(한국통계정보원 : 2건)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 417
2. 여성 관리직 비율 제고 ····· 417

기획재정부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낙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환율 등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부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감세·긴축재정의 정책기조를 바꾸어 대책을 마련할 것 수출 증가가 일자리와 내수로 이어지는 구조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것	□ 경기·민생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마련·발표(8.22) → AI 대전환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 * (기술선도 성장)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 등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 지원, 사회안전매트 등 (공정한 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지속성장기반 강화) 생산적금융, 규제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 '26년 예산안(8.29)을 통해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뒷받침 + 성과중심 적극재정 운용 * 低성과 부문 지출구조조정(역대 최대 △27조원)으로 AI 대전환, R&D 예산(역대 최대 35.3조원)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집중 투자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 과제 차질 없이 이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문제 해결방안 마련 내수 부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강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제기와 구조적 연착륙을 위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 정책을 추진할 것	□ 재정 신속집행* 및 두 차례 추경**으로 내수 회복 지원 * '25년 상반기 재정 66.0%(목표대비 +13.9%p), 공공투자 60.4%(목표대비 +2.3%p) 집행 ** (1회, '25.4월)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등 13.8조원 (2회, '25.6월) 경기 진작, 민생 안정, 세입경정 등 31.8조원 □ 소비·투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소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5종 문화소비쿠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지원, 전국민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상생페이백,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 (설비투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반도체 인프라·공급망 재정·금융 지원 확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지원,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국내공장 신·증설 보조금 강화 등 * (건설투자) 공공공사·민자사업 공사비 현실화, PF 보증 규모 확대, 공공주택 등 13.8만호 착공, 1세대1주택 특례 지역·대상주택 확대,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등 □ 채무조정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 등 재기지원 강화 추진 중 ○ 새정부 추경안('25.7월)에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소상공인 채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4.11월→~'25.6월), 상환능력 상실 소상공인·개인 보유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연체 7년↑, 5천만원↓) 일괄 매입 및 1회성 소각 ○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 및 폐업 이후 취업 연계 등** 시행 중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한도 상향(400→600만원) 등 ** (취업) 전직장려수당 지급,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재창업) 재기진단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 AI 활용 등 규모화·스마트화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 □ 향후에도 자영업자들의 재기와 구조적 연착륙을 위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강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 올해 초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25.2.19일) □ 3차례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여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25.11월 부총리 주재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중장기전략 운영방향을 논의하는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역량 강화 * (미래전략포럼) '25.5월(Bio), 25.9월(AI), 25.11월(Culture) (미래전략컨퍼런스) '25.12월 개최 예정 □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경제심리 안정화 방안 마련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경제 심리 회복, 경기 부진 흐름 반전을 위해 추경 등 대책 적극 추진 ○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신속 집행* * '25.9월말까지 85% 이상 집행 목표 ○ 잠재성장률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추진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일)',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8.7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일)' 등 □ 주요 대책, 경제지표 등 발표 계기 대국민 소통 및 설명 노력 지속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예산안 등 발표 시 사전브리핑, 합동브리핑 등 통해 집중 설명 ○ 매월 주요 경제지표* 설명 위한 백브리핑 실시 * 월간 경제동향,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 고용동향 등 ○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적극 추진 * '25.6월 이후 현장방문·간담회 29건 실시(보도자료 배포) ○ 정책 신뢰도 제고 및 홍보 강화 위해 유튜브 등 주요 미디어도 적극 활용 * '25.6월 이후 홍보콘텐츠 총 1,093건을 기관 SNS 채널에 게재·홍보(유튜브 87, 인스타 263, 블로그 251, 페북 217, X 275) □ 향후에도 경제심리 회복 흐름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정책 노력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 ('24.12)88.2→ ('25.10)109.8 기업심리지수(장기평균=100): ('24.12)85.9→ ('25.10)90.6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아 국민과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 국토부 등 주무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 정부는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중 ○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마련 및 추진 중 * 디딤돌 맞춤형 관리방안('24.11),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25.2) 등 □ 앞으로도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정책대출 포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 최선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반도체 경쟁의 선점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것	□ 반도체 경쟁 선점을 위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24.11)」, 「반도체 재정투자 강화방안('25.4)」 등을 통해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조성·운용 지원 중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 체결('24.11) → 전력·용수 공급방안** 마련·추진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 수자원공사 등 ** (용수) 총 107.2만㎥/일 규모 용수공급 추진 (전력) '53년까지 총 10GW 전력공급 추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한도 상향('25.5) * (비율)15~30→30~50%, (한도)최대 500→1,000억원 ※「첨특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고시)」개정 完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 대·중견 최대 30%, 중소기업 최대 40% ※「조세특례제한법」개정 完(3.14) ○ 15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인프라 등 생태계 전반 지원 *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자금 75조원 ※「한국산업은행법」개정 完(12.10) ○ 반도체클러스터 내 용수·전력·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확충 지원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지원 □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등 적극 지원 중 * (금융) 정책금융 '24 5.9→'25 7.9조원(산은 6.8조, 기은 0.6조 등) (세제) 이차전지 핵심광물 기술(양극재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가공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25.2) (재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24 192억원(포항, 울산) → '25 422억원(포항, 울산, 청주, 새만금)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것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❶경제형벌 합리화, ❷신산업 규제 해소, ❸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병행 추진 ○ 사업주 형사리스크 해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25.9월)」 발표 * '배임죄 개선' 포함 총 110개 개선과제 마련 ○ '25년 중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등 신산업 규제개선 지속 추진 ○ 기업지원 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규제 등 개선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마련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민 정책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과 고령층을 중심으로한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하며 수출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	□ (이민정책) 탑티어비자 신설 등 외국인재·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특별비자 신설, 연구비·인건비 지원 등 해외인재유치방안 반영 ○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외국인재·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내수진작) 지역간 격차 완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통해 구조적 내수 활성화 추진 ○ 지방우대 정책체계 개편 등 지역균형성장 추진 *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동남권-조선·방산 등), 아동수당 지역별 추가 지원(최대 3만원),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8.7일)"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일)" 마련, 지역업체의 지방공사 참여 확대, 공공조달 관련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 등 ○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의 경제활동 촉진 및 자녀 양육 관련 재정·세제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편,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령자 통합장려금(월 30만원) 신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 (수출기반)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美 관세부과 등 통상대응,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지속 마련 ○ 「범부처 비상수출대책('25.2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5.4월)」,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25.9월)」 등 대책 마련 ○ 관세피해 대응 및 수출지원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안('25.4월), '26년 예산안 마련('25.8월) ○ 반도체('24.11월, '25.4월), 자동차('25.4월) 등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미래혁신산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투자 방식 고려할 것	□ 미래혁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에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반영 * 기업(AI로봇, AI자동차 등), 공공(AI복지·고용 등), 국민(인재양성·유출방지, 해외인재유치) 등 15개 과제 ** 첨단소재·부품(SiC전력반도체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태양광·차세대전력망 등), K-붐업(K-바이오·의약품 등) 등 15개 과제 ○ 조속한 성과창출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 계획 □ 특히, '26년부터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등을 통해 미래혁신산업을 지원할 예정('26예산안 1조원 반영) *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혁신산업에 투자
8. 기업가치 제고 방안 마련 적세개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위한 세제 개편 추진 ○ 기업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 확대 유도(25년 세제개편안)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5년 세제개편안) *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9. 경제전망 오차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의 오차가 과도하고 KDI 등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제전망 오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5년도 정부 경제전망 모형 고도화 추진 중이며, 연말 완료 예정 * 경제전망용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고도화 (사업추진기관 : KDI) □ '26년 정부예산안에도 ❶전망모형 추가 개선, ❷한은·KDI 등 전망기관 간 경제동향·전망 논의 활성화 등을 위한 별도 내역 사업 반영(금액 6,500만 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수출증대방안 마련 무역수지 흑자는 사실상 반도체 착시효과와 수입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를 감안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美 관세부과 등 통상대응,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지속 마련 ○ 「범부처 비상수출대책('25.2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5.4월)」,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25.9월)」 등 대책 마련 ○ 관세피해 대응 및 수출지원 등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25.4월), '26년 예산안 마련('25.8월) ○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AI 대전환 등을 통한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
11.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 인식 개선 대책 마련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산업으로의 개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경기는 나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구조 변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에 대응해 체감경기 활성화 노력 지속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 사업을 신속 집행*해 그간 부진했던 경기 흐름 반전 * '25.9월말까지 85% 이상 집행 목표 ○ 먹거리·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 취약차주 채무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 노력 지속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17.2만톤),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900억원 투입, 식품원료(27종) 할당관세, 유류세 인하 등 ** 성실상환자 연체이력정보 삭제(324만명),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10조원) 및 금융비용 부담완화 개선방안 마련(9.4일) 등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 관광·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일)' 적극 추진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대전환, 지역균형성장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인구위기 대응 등 * '지역관광 토탈패키지' 마련('26년 시행), 국민성장펀드(150조원) 통한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확대 등 □ 최근 경제심리 회복 등 체감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 ('24.12)88.2→ ('25.10)109.8 기업심리지수(장기평균=100): ('24.12)85.9→ ('25.10)90.6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개 식용 산업 폐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개 식용 산업에 대한 폐업 지원이 예산 운용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책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할 것	□ '24 국감 이후 상임위·예결위 정부안 재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추진 완료 ○ '24 상임위·예결위 예산 검토과정을 거쳐 정부안(국비 544억원)대로 '25 예산 편성 ○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정부 총사업비 계획과 차이 미미** * '24.9~'25.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 '25.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정부안 3,562억원, 검토 대안 3,529억원(△33)
13.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과제에 대한 예산 관리 필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과제에 대한 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	□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사업의 범위와 소요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곤란 ○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조건 및 시기 등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민자 활용, 국비-지방비 분담 등 사전 절차 이행도 필요 □ 다만,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서 충실히 반영
14.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내년도('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예산(정부안) 확대 □ 협동조합 기본계획 마련, 협동조합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외교부장관의 공관이 용도폐지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의 사용승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착수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통령 관저 대상지 변경을 과장이 전결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관련한 사항은 국유재산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 **(사용승인 전 공사 착수)**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용도폐지, 사용승인 등 일련의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던 상황으로, ○ 복수의 관리 주체간의 사용권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실제 사용 간 시차가 발생한 부분이 있음 * '22.5.13(금) 행안부 사용승인 신청 → '22.5.15.(일) 공사 착수 → '22.5.16(월) 기재부 사용승인 □ **(관저 대상지 변경)**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결정 자체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4.6.)를 거침 ○ 이후 이행 과정에서 관저 대상지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것은 상황 변경에 따라 사용재산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괄청인 기재부가 사용승인 □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 검토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부정 선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관저 이전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발표를 실시할 것	□ 국회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25.1.17일) → 감사원 감사 진행중
16. 개인 주식투자자 보호 방안 강화 필요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주주보호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1차)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제, 전자주총, 감사위원 선임시 3%룰 강화 등 ○ (2차)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 또한, 관계부처·재계 등과 함께 기업부담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지속 계획 ○ 경제형벌합리화 TF를 통한 배임죄 개선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자본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를 위한 주가조작 관련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주의를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립할 것	□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엄벌 원칙 수립 및 형사처벌·행정제재 강화 ○ 불공정거래를 신속적발, 엄정제재하기 위한 실천방안 수립('25.7.) *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임원선임 제한 명령 병과 등 제도개선 □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25.3.)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25.7.)
18. 방산, 원전,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검토 방산, 원전,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5.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는 제도 취지, 기술 및 산업 발전수준, 국제적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정확한 통계 생성·전달 시스템 구축 국제기구에 정확한 통계가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협력하여 정확한 통계와 지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에 정확한 통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현황을 주기적(연 2회)으로 확인 ○ 모든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국제기구 제공 통계 항목, 국제기구 통계DB 오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제출받아 점검('25.1월) * 분기·연간 자료 등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집중적으로 확인 ○ 국제기구 통계제공 기관(34개 기관·부처)은 자료제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가 검토 시행 - 국제기구 자료 미제공 항목 일체에 대해 미제공 사유, 통계 제공확대 계획 등 재점검('25.4월) - 주요 자료제공 기관 5곳*의 경우 국제기구 제공자료의 실제 활용 현황 확인('25.4월) * 고용·국토·환경·복지부, 한국은행 □ 통계청은 국제기구 통계DB를 매년 점검해 한국 자료 수치 오류 및 시계열 누락 등에 적극 대응 ○ '24년 OECD 통계포털(data-explorer.oecd.org)의 통계청 자료에 대해 전수조사 시행 ○ '25년 UN, ILO, IMF, WHO 등 통계DB의 통계청 자료 전수조사 진행 중 □ 일반정부 기준 재정통계를 IMF에 제출 중 □ 다만, 미반영 일부지표는 IMF와 개선 협의 중 ○ 통계 산출일정 단축 등 旣 추진* * 당초 차차년도 2월에 제출하였으나 '23년 결산치부터 차년도 12월로 단축·제출 ○ IMF 측과의 추가협의 및 필요시 통계 개선 추진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e-나라지표 중 일부 그래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 통계청은 순위지표 등 지표별 특성을 고려한 그래프가 제공되고 있는지 749개 지표 전체를 점검하여 개선* * ① IMD 국가경쟁력 순위(상위순위 높게 표시되도록 수정) ②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y축 하한값 표시되도록 수정)
20.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범죄, 탈세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마련 예정('25. 下) ○ 가상자산 국경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으로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21.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한국담배판매인회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부패와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	□ 기재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하나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대해 자료제출 협조 요청('25.5월) ○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정관 등을 통해 법인 운영의 적법성, 건전성 등을 점검('25.5~6월) □ 담배판매인회 운영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할 나갈 계획
22. 공공조달 정책 개선 추진 혁신제품/기업에 대한 후속 관리가 부진하므로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질적 관리에 집중할 것	□ 혁신제품 후속관리 강화 ○ 현재 혁신제품 유형II(조달청)에서만 추진 중인 사후점검을 유형I(부처)까지 확대 운영 - '26년부터 혁신제품지원센터를 통해 유형I에 대해서도 최조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 점검 * '26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 전략 계획을 수립할 것	□ 기업별, 국가별 수출금액 및 수출노력도를 분석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원제도(G-PASS) 개선 및 시행('25.7.1.) * 주요개정내용 : 수출노력 유도를 위한 G-PASS 등급 정비, 실태조사를 수출역량 진단으로 개선 등 □ 향후 국정과제(시장·품목 다변화 등)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예정
공공계약에서 고정불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반적으로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판단하여 고정불변계약 체결도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64 제1항 □ 다만, 정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체결되는 고정불변계약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 ○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안내해왔으며('25.9월 등), 향후에도 지속할 예정
국가계약법과 납품대금연동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공사에만 적용중인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물가변동시 특정자재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을 계산하여 해당 자재 계약금액 조정 ○ 구체적인 조정대상·기준 검토 등을 위해 조달청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25), 시범사업 종료 후 시행령 개정 등 진행 예정
허위매출을 통해 입찰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행위로 인한 실적은 배제하도록 노력중 ○ 공공주택 입·낙찰 평가시 부실이 발생한 사업 실적이 인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25.9월, 조달청)하는 등 제도 정비 노력 지속중 *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벌점 처분을 받은 사업이 정상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①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평가낙찰제 세부심사기준, ②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실적 공시주체인 국토부*와도 지속 협의 예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탁기관인 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가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 국토부에서 공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실시공 업체가 벌점을 받았음에도 집행정지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의 집행정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으로 존중 필요 * 확정판결(정부승소)시 집행재개 □ 다만, 중대 위반행위 등*으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집행정지 후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10→20%) → 계약불이행 가능성 높아짐에 따른 발주기관의 부담 완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중) * 중대재해, 뇌물공여, 담합입찰, 서류 위·변조, 사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23. 대북사업 정리 방안 마련 대북사업 재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 등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피해 지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및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피해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칙을 정립하여 지원*** * 피해액 1조 1,845억원 中 기업 지원 총 금액은 9,065억원 □ 추가 피해지원은 **관련 법제도, 타 기업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24. 국유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의 관리 소홀로 유휴건물과 대부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휴 건물 관리)**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공익차원에서 유휴 건물을 활용 중 ○ 나라ON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유휴 건물을 시니어일터 등으로 조성('25.9월 현재 9호점 개소 완료) ○ 분기별로 전 부처에 용도폐지 재산 수요 조사 중 □ **(대부료 미납)** 전담직원 지정 및 정기 독촉, 발견재산 압류 적극 실시 ○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연체채권을 1년에 한번 이상 정기 독촉하도록 관리 중 ○ 장기·고액 연체의 경우 재산 발견 시 적극 관리(압류)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유지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국유재산 상「불법 유해시설 근절을 위한 정기 전수조사」실시 ○ '24년 10·11월: 매매 집결지 및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 총 70개 구역 전수조사 → 2곳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25년 상반기 신규 및 기존 의심지역(5곳) 실태조사 실시 → 4곳 변상금 부과 ○ 지자체 협조 및 매각 추진 - 유해시설 확인 시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단속 및 불법건축물 철거 등 협조 요청 - 공익사업, 정비구역 등인 경우 사업자에 신속 매각 실시
특정 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임대 관련하여 캠코의 특혜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	□ 국유재산 법령 취지·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무상대부한 것으로 확인 ○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제보사건인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국유지 무상 대부'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 실시 ○ 해당 조사결과를 제보 민원인, 감사원에 통보하였고 의원실에 결과 보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 국유재산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청이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양여를 검토할 것	□ **(무상임대 확대)**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 독립적인 재산운영 주체로서 국유재산 사용은 유상이 원칙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지방청사 등)·공공용(도로·하천 등)으로 기간 제한없이 무상사용하게 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공익목적 활용이 어려움 □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련)** 교육부는 교부금 배정을 통해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도록 지원할 예정 ○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공립학교가 점유한 국유재산 가액' 항목 추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중)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인 지자체에 부족한 금액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교부 → 기준재정수요액 증가 시 보통교부금 추가 배정 가능 ○ 우리부도 학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도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증·개축을 허용할 계획 (현재 국유재산법 개정안 기재위 계류 중)
26. 유사담배 규제를 위한 노력 필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와 유사담배를 조속히 규제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합성니코틴 등 전자담배를 담배정의에 포함시켜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논의 진행 중 ○ 정부는 담배정의를 연초+니코틴(합성니코틴 포함)를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 □ 조속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7.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별 지연을 막기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24.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긴 행정절차 간소화*, 민자사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지연 완화 추진 *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운영비 소액 증액시 민투심 면제,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 공사비 급증에 대응한 물가특례 도입, 민간투자법 개정안 추진('24.10월 발의), 만기없는 인프라펀드 설립('25.8월~ 사모 설립 허용) 등
28. 불법 복권 사이트 조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불법 복권 사이트 차단을 위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므로 불법사이트 조기 차단을 위한 신속 심의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 불법 사행산업 대응을 총괄하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중심으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 단축 등 불법사행산업 대응 방안 추진 중 □ 이와 더불어, 복권위(수탁사업자)는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및 홍보, 불법감시 모니터링단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불법사이트 조기 적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사감위·경찰청·소비자원·방심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복권 사이트 조기 차단을 지속 추진 중 □ 앞으로도, 불법 복권 사이트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사감위·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민간항공기교역협정 문제 해결 필요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운항업계와 제조업계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객관적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	□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산업·국토·항공) **의견**** **청취**('25.5.28) *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대상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 현재 관세법(§89⑥)을 통해 관세 감면 중 ** TCA 가입 관련 논의경과, 가입 시 고려 사항(대외 여건, 통상 마찰 가능성 등), 가입 영향 등 ○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TCA 가입 인센티브 확보**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 □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의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30.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계획 등 국회 제출 필요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분담금 납부 계획, 실적과 평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법률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납부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매년 제출** 중* ○ 금년에도 한국은행 통한 출자금 납부 '25년도 실적 및 '26년도 계획 제출(9.30)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2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대한 평가**의 경우 출자의 **특성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 ○ 출자는 **의무분담과 유사한 성격**으로 기구 가입국들의 분담금으로 기구 공통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만의 출자에 대한 **평가가 곤란** ○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8.31일까지 제출*** * 금년도 최초 제출, 8.29일 제출 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1.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한 전기요금 결정 필요 한국전력의 재무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결정할 것	□ 국민부담, 한전 자구노력, 국제에너지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안정적으로 관리 추진
32. 핵심 원자재 비축 업무의 광해광업공단 이관계획 수립 핵심 원자재 비축 업무를 조달청에서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 관계부처 합동(기재부, 산업부, 조달청, 광해공단)으로 연도별 희소금속 이관계획 수립('25.1월)하여 차질없이 이행중* * 코발트 등 일부 광물은 이관완료했으며, 바나듐·인듐·탄탈럼 등은 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관예정
33.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사회 전반 AI 대전환 추진 계획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에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부문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 제시 * 기업(AI로봇, AI자동차 등), 공공(AI복지·고용 등), 국민(인재양성·유출방지, 해외인재유치) 등 15개 과제 ○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AI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업무에 AI 도입 확산 추진 □ 또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세제 지원도 강화 ○ (예산) '26년 AI 분야 예산 10.1조원으로 전년(3.3조원) 대비 3배 이상 확대 ○ (세제) '25년 세제개편안에 AI R&D·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내 복귀 AI 인재 소득세 50% 감면 연장 등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4.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한 대책 마련 은행들이 공적책임은 도외시한 채,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이를 직원들의 성과급, 퇴직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23) 마련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애로사항을 경청하며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금융위·금융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지원 계획 ○ 은행권도 예대마진·부동산 중심 영업 등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공급에 동참
35. 자료 미제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필요 기획재정부가 문서목록 중 일부를 은닉하고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법률위반이므로 관련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현황) 현재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 답변 작성 및 회신 진행 중이나, 회신율 및 답변 내용에 있어 미진한 점 존재 □ (향후계획) 모든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 충실히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방식 변경 또는 현 상황에 대한 양해 요청 등 의원실 사전 협의 강화 ○ 충실히 제출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회신율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 또한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원실 간 소통 제고 추진
36. 정부 소비를 포함한 경제전망 발표 필요 기획재정부는 경제전망 발표 시, '정부소비'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개할 것	□ 대내외 주요 전망기관 및 주요국 전망 사례, 예측력 있는 세부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소비를 포함한 부문별 전망의 공개 범위를 지속 검토 * 정부소비 구성요소 : 중앙·지방·교육재정, 사회보장기금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7.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군 장성들만을 위한 군 골프장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활용할 필요	□ 군 장병 처우 개선사업 추진 ○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대부분 영내 또는 부대 인근에 위치하여 전시 군수물자 야적 및 동원병력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 부지로 사용되므로 처분(매각) 또는 용도 변경은 제한되며, - 군 체력단련장을 비회원(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군 체력단련장은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타당함 * 수입기여율('24년 기준) : 정회원 31.6%, 준회원 2.7%, 비회원 65.7% ○ 입장료 인상* 및 운용 효율화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여 군 장병 처우 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입장료 인상률('24년 시행) : 정회원 30%, 준회원 25%, 비회원 10% - '25년에는 각 부대에 장병이 이용하는 풋살장 건립(68억원), 체력단련기구 및 편의시설의 비품 구입(83억원) 등 군 장병 처우 개선함
38. 삼성물산 흡수합병 관련 ISDS 결과 검토자료 제공 삼성물산 흡수합병 관련 ISDS 결과는 사실상 확정된 단계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공할 것	□ 현재 삼성물산 흡수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1심 법원의 각하판결이 파기 환송되어 본안 판단이 재개된 상황 ○ 동 사안과 관련한 구상권 등 행사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39. 채권관리 방안 개선

채권 소멸방지를 위해서 제재부과 방안 등을 마련하고 미분류 채권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것</td><td>□ 그동안 불납결손에 대한 미분류하여 일괄 ‘기타’로 분류된 채권의 분류 세분화 완료

* 23년 “기타” 1.5조원로 분류된 채권을 상세 재분류하여 24년 “기타” 0.1조원으로 감소

<국세외수입 불납결손 현황>

<table>
<tr><th>(단위: 조원)</th><th>23년</th><th>24년</th></tr>
<tr><td>총계</td><td>5.6</td><td>5.2</td></tr>
<tr><td>시효완성</td><td>3.1</td><td>2.8</td></tr>
<tr><td>체납자무재산</td><td>0.7</td><td>0.9</td></tr>
<tr><td>압류액 < 집행비용</td><td>0.1</td><td>0.08</td></tr>
<tr><td>채무면제, 사망, 행방불명 등</td><td>0.2</td><td>1.3</td></tr>
<tr><td>기타</td><td>1.5</td><td>0.1</td></tr>
</table>
</td></tr>
<tr><td>40. R&D 사업 관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 관리 감독 강화노력을 지속중

○ 민간 위탁 R&D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실무 직원 교육 강화(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직원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24.11월, ’25.11월)

○ 수권예산 편성시 국회 승인받은 예산서 지원대상과 예산액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프로세스 도입(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부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 근거* 마련(‘24.12.31일 시행)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부 고시)

○ 환수금·제제부과금 등 납부 불이행자는 차기 사업 공모시 감점 가능(기존에는 근거 潕)</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1. 경제안보공급망 관리 체계 개선 경제안보공급망이 공급망안정화법, 조달사업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사업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중
42. 편향 우려 경제교육 개선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채널 일부가 경제에 관한 편향적인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의 **채널*** **콘텐츠 등 관리 기준 강화** * **(채널)** 각 경제교육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직접 제공·관리하는 플랫폼 내 별도의 공간(13개 기관 운영) ○ **채널 내**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윤리성, 중립성** 등 업로드 기준*을 마련하여 채널 운영기관에 배포 *「경제배움e+ 채널 운영 매뉴얼」 □ 경제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 제공**을 위해 플랫폼 내 **콘텐츠 모니터링* 지속** * 경제교육 전문기관인 KDI(경제교육·정보 센터)에 「경제배움e+」운영을 위탁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 공개 검토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을 정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배분 내역 공개를 검토할 것	□ 지특회계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 공개 시 우려사항 등을 감안하여 공개 여부 등 검토 필요 ○ 지특회계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 공개 시,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으로 오인*되거나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논란 우려 *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예산('26년안 10.6조원)은 자치단체 보조금 전체규모(105조원)의 10.1% 수준에 불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4. 성인지 예산제도 강화 방안 검토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성별 수혜분석 통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평등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 통계를 포함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중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과 함께 성인지 사업평가 강화 등 성인지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45. 상품권 발행·유통 관리 제도 개선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상품권 발행·유통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4.9)을 통해 재무건전성 취약 선불업자 할인발행 금지 등 상품권 관리 감독 강화 ○ 또한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 *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25.3),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25.9) 등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상품권 발행·유통 등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 상품권 규제 관련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면멸히 검토해 나갈 것 * 상품권유통질서법('24), 상품권법안('25) 계류중
46. 기금평가 결과 이행방안 마련 기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 중 □ 앞으로도 기금평가 결과의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금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7. 국민연금 운용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운용수익률 배점이 지나치게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경영평가를 개선하고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자료요구로 인해 국민연금 운용역의 본래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력 규모*** 등 고려시, 기금운용 수익률 지표(기금운용성과, 6점)는 現 **'경영관리' 내 적정 수준** 반영중 *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총 512명으로, 국민연금공단 전체 인원 총 7,438명 대비 6.9% 수준('25.6월 기준) □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기관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지속 노력하겠음
48. 예비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예비비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 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25.11.12)
49.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 긴축재정, 국가채무 억제 등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 중 ○ '25.9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결과, 국회차원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여야간 旣 협의 ○ 최근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할 계획
50. 재정준칙 법제화 신중 검토 필요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시 투입이 필요한 만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할 것	□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 중 ○ '25.9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결과, 국회차원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여야간 旣 협의 ○ 최근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1. 지속가능성 있는 재정 운용 필요 건전재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정당국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방만한 재정의 운영을 방지하는 등 지속가능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할 것	□ 국가재정이 회복·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음 ○ 불필요한 부문을 구조조정*하여 고성과 부문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26년 예산안) ○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위해 노력
52. 양극화 완화 노력 필요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6년 예산안 편성시 복지 분야 +8.2%(248.7→269.1조원) 확대 ○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 저소득층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설 (월 최대 3.8만원, 74만명) ○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53. 예산 조기집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예산의 조기집행 제도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우 상반기에 무리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뉴얼 제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요금 선납 폐지, 선금 집행 완화, 통계목 및 사업조정 등 지방정부 조기집행 관련 지침* 개정 완료 *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행안부, '25.1)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4.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내수·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지자체 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25.8월)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 또한, 법 개정을 통해 '26년부터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조사 의무화** → 상품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정** □ '26년 예산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 연도별 예산(억원, 추경 포함) : ('24) 3,000 → ('25) 10,000 → ('26안) 11,500 □ '26년 예산안에 **국비지원 할인율**은 **최대** 5 → **7%**까지 확대 ○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지원**도 **강화** * (기존) 일반 2 / 인구감소 5% → ('26안) 수도권 3 / 비수도권 5 / 인구감소 7%
5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 및 수도권 중 소외된 지역에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개선할 것	□ 수도권 사업에서도 기초지자체 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타수행총괄지침 제59조(정책효과) (…중략…)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각 호 내용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
56. 지방재원 확보 필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지방재정 부담 증가, 주민 복지·교육 수준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할 것	□ '25년 세입경정 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세 감액(△1.7조원) 유보 □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시 국회, 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할 계획 ○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43조 개정* 중 * 교부세(금) 예산배정 유보(집행 보류) 시, 미리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와 협의 후 결과를 국회 상임위 보고(법사위 계류 중, '25.9.30.)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 필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별 재원배분 정보공개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균형발전 기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 지방시대위원회, 조세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종합적인 균형발전 성과연구* 추진 중 * 조세연, '24.12월~'25.12월 □ 지특회계 포괄보조 대폭 확충 및 지방시대위원회 권한 강화 추진 ○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보조 규모를 '25년 3.8 → '26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 * 국정위·지방위·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보조사업 중 포괄보조로 이관 대상 선정 ○ 지특회계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추진
58. 세수결손 대응 위한 추경 편성 제도화 및 재정청문회 실시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금·교부세 교부를 유보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므로, 이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청문회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것	□ 그간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 ○ 다만, 국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25년 중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예상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여 대응 □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도,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 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9. 세수 결손 대응 위해 탄력적 재정운용 추진 세수결손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확대 노력, 회계기금의 가용재원 발굴, 기금 간 금융성 거래 중심 지출의 조정, 공공기관 출자·유예 등의 수단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	□ 현재, 국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실효적인 체납액 회수를 위한 통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청과 협의 중 * (부과·징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검토 (체납·압류) 부처 재량인 전문기관 체납회수 위탁을 의무화하고, 국세 등에 준하는 간접강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도입 등 검토 □ 향후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겠음
60. 세수의 주기적 재추계 및 세수추계 결과 성과평가 마련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세수추계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	□ **당해연도 세수**에 대한 **9월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중 (9.25일 기재위 통과) □ 세수추계 오차율을 **성과평가**에 반영 중
61.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기보다 헌법에 따라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세입예산 편성 이후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검토 □ 다만, 국회선진화법 취지* 및 내실있는 국회 심의를 위해 예산안 제출 시기는 현행(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유지 필요 * 헌법상 예산안 국회 의결 시기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준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2. 누적법 기반 세수효과 발표 및 대응 추진 현재 기획재정부는 세수효과를 과소하게 보이기 위해 누적법이 아닌 순액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누적법 기반으로 세수효과를 산출할 것	□ **누적법 기반 세수효과**를 **의원요구자료** 등을 통해 제출 중
63. 불납결손액 관리 위한 법령 개선 및 제재 부과 방안 마련 세수결손이 과도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과다하는 지적이 있었음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채권 관리법 내지 시행령을 개정하여 캠코 조기위탁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현재, 국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실효적인 체납액 회수를 위한 통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청과 협의 중 * (부과·징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검토 (체납·압류) 부처 재량인 전문기관 체납회수 위탁을 의무화하고, 국세 등에 준하는 간접강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도입 등 검토
6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위해 100% 정부배당금 지양 및 기관별 배당 성향 표시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 배당금을 100% 요구해 지급받았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지양할 것	□ 정부배당성향 결정시 국감 의견에 따라 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겠음 * '25년 정부배당시 배당성향 100% 기관은 없었음
기관별로 각각의 배당성향을 표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25년부터 배당내역 국회 보고 및 공표시* 기관별 배당성향을 표시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배당완료시(5월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고 공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5.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파악 및 수출 증가 위한 대책 마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관세장벽, 중국 내수 부진, 아세안 국가 수출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수출 증가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통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들의 관세 대응과 수출지원을 위한 대응방안 지속 마련 ○ 「범부처 비상수출대책('25.2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5.4월)」,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25.9월)」 등 대책 마련 ○ 관세피해 대응 및 수출지원 등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25.4월), '26년 예산안 마련('25.8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6. 반도체 인프라 구축 국가 책임제 검토 주변국이 반도체 인프라 구축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 상향, 송전망 구축 예산편성, 전력기금부담금 감면, 반도체 특별법 등 제반 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화 할 것	□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반도체 시설투자 및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 중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 대·중견 최대 30%, 중소기업 최대 40%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 상향 * 최대 500억원 → 최대 1,000억원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 * ('25년) 626억원 ('26년 예산안) 559억원 ○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요율도 단계적 인하* * ('24.7월-'25.6월) 3.2% → ('25.7월 이후) 2.7% □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 15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인프라 등 생태계 전반 지원 *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자금 75조원 ○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시설 조성, 설비·R&D 투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7.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 대책 마련 원화의 국제적 위상 향상을 위해 통화스왑 활용 직거래 확대, 기업의 원화결제 유도 및 통화바스켓 편입을 추진할 것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자본 유출 가능성 측면에서 엔화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24.9월 **한-인니간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LCT*) **도입** * LCT(Local Currency Transaction) ○ 양국간 무역거래시 LCT를 통해 달러환전 없이 **원화-루피아화**로 **결제 가능** - **韓 기업**은 **원화**, **인니 기업**은 **루피아화**로 **지급·수령**하는 구조로,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 ○ LCT 출범 이후 양국간 **원화결제 증가 흐름 지속***('24.8월 136만$ → '25.10월 1,114만$) * 하나, 기업, 국민은행 등이 同 서비스 제공 중 → 최초 **LCT 사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원화**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추진 □ 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달러/엔 외환시장, 美·日 등 주요국 채권시장 등에 대해 모니터링 중 ○ 앞으로도 엔캐리 트레이드 동향을 포함한 주요국 경제·재정·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할 예정
68. 공급망 관련 용어정비 및 핵심광물·원자재 비축·이관 예산 마련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물자, 광산물 등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핵심광물 및 원자재 비축·이관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사업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중 ○ 조달청-광해공단 핵심광물 및 원자재 비축·이관을 위해 예산 확보* 추진 * 이관예산 조 달 청: ('25년) 2.3억원 ('26년案) 2.3억원 광해공단: ('25년) 82.8억원 ('26년案) 47.1억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핵심 원자재의 목표 재고량 달성을 위한 노력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의존하는 비율을 다변화 할 것	□ 핵심원자재 목표 재고량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품목의 수입다변화·국내생산기반 지원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중** * 비축 목표 달성기간: (旣) '31년 완료 → (改) '29년 완료 ** 특정국의존도 목표(%): ('25년) 70 → ('27년) 60 → ('30년) 50
공급망 기본 계획이 기존 산업부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차별되지 않고, 협업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할 것	□ 공급망 3법 국장회의, 관계부처 합동 소관 품목점검 등을 통해 산업부 및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추진
69.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대책 마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대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적 흐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은): ('19)89.6 ('20)97.1 ('21)98.7 ('22)97.3 ('23)93.0 ('24)89.6 □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금년 세 차례 발표 *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5.2),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25.9) 등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旣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 최선
70. 경제형벌 완화 과제에 대한 신중한 추진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완화 과제들 중 오염물질 불법 배출, 최저임금법 위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경제형벌 합리화는 그간 지속되어온 과잉 처벌 관행을 개선해 기업·국민이 느끼는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 □ 다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사안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1.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수가 늘고 있으므로 청년 고용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창업)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자금지원*,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강화 * 유망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자금 지원하는 팁스(TIPS) 예산 지속 확대('24년 4,715억 → '25년 5,909억) ** 6개 권역별 총 11개 창업중심대학 지정·운영중('25년 2개 추가지정) *** 기술성·사업성 갖춘 재창업자의 투자 유치 지원(재도약 펀드 '25년 300억 출자 → 529억 조성) □ (취업)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9.10.) 등을 통해 쉬었음 등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굴·마련 * 구직촉진수당 인상('25년 50만원→'26년 60만원), 청년미래적금 中企 취업청년 우대(일반형 대비 매칭비율 상향) 등 ** 쉬었음 청년 발굴-다가가기-회복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 AI 등 현장 중심 일경험 및 경력 축적 지원 등 ○ 한편,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사업('25.3~)을 통해 미취업 청년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중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학생 약 156만명 중 10%에 해당하는 약 16만명이 '26년 올케어플랫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계획) 청년층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AI 등 신산업 중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약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2. 공무직 임금인상 등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공무직 실질 임금과 공무직 보수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직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총괄적 사용이 어려우므로 공무직 인건비 편성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공무직 처우개선율을 일반 공무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지속 노력 ○ '26년 예산안에 최근 9년간 가장 높은 3.8% 처우개선율 반영 * '26년안 공무원/공무직 처우개선율: 3.5 / 3.8% ○ 또한 공통처우개선과 별개로 복리후생 3종 수당(공통수당)중 명절상여금도 공무원과 동일수준으로 대폭 인상 * 연 110만원(정액) → 기본급의 120% □ 공무직 인건비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불용액 발생 지양 등)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매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등에 명시하여 지속 안내 ○ 각 부처에서 공무직 인건비 통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고 있음 * 공무직 인건비 사업구조 개편·통합 사례(최근 3년) ('25) 통계청·질병청: 각 3~4개 사업에 분산된 인건비를 1개 사업으로 통합 ('24) 질병청: 3개 사업에 분산된 인건비를 1개 사업으로 통합 ('23) 문체부·인사처·해경청·병무청: 분산된 인건비 사업을 통합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3. 저출산 대책 마련 바우처 형태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혼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부담 경감, 돌봄·일가정양립 및 주거지원 확대 등을 반영한 '26년 예산안 편성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세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수당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시 인센티브 등 반영 □ 또한 바우처 형태인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대상을 확대 * (다자녀·장애인가구) 기준중위 80% → 100%로 확대 □ 출산·양육 재정·세제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추진 * 아동수당 대상 확대,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지급,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 ○ 결혼 패널티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제도 개선 추진 ○ 향후에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
74.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주거빈곤 아동 및 최소 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장애인 주거시설 국비지원 및 장애인 복지예산 반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주거빈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26년 예산안 편성 ○ 주거급여 152만호 대상 기준임대료 월 4.7~11% 상향 ○ 에너지바우처 다자녀가구 지원대상 확대 (+2만가구),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인원 확대(1.2→1.5만명), 장애인 일자리 확대(3.4→3.6만명) 등 돌봄 및 소득기반 확대
75.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주택의 가격과 수요에 대한 인위적인 억제 정책을 지양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집중하되, 공급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한 도시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발표(9.7일)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 착공 계획 □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6.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양도세 등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수준을 점검할 것	□ **지방 주택수요 증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도입('25.1.1.~) ○ 또한, **적용대상 주택**의 **가액기준**을 **확대**(공시가격 4→9억원)할 예정
77.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한 부동산 시장 관리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과열 및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등 발표 □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78. 전세 사기 대응 방안 마련 전세 사기·사고 문제 대응 및 양질의 임대주택, 임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업형 임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 LH가 우선 매입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것	□ 기업형 임대제도 관련하여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매차익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법 시행('24.11월) ○ LH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통해 피해자의 공공임대 무상거주 지원(10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9. 착한 임대인 제도의 보완책 마련 착한임대인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현재 **공제 신청**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부당 공제**를 **방지 중** ○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지급내역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 **공제 적용 후 임대료 인상***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적용 배제 또는 공제세액 전액 추징** *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후 갱신시 5% 초과 인상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관리비 인상**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 인상시 **공제 배제** 등 사후관리 □ 향후 **집행 과정**에서 **부당 공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8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등 출신의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직무 관련성·전문성이 부족한 자에 대한 공공기관 임원 등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통제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공기관 임원 인사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중으로, ○ 앞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은 관련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다양한 분야의 사람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 법 제9조의 규정에 맞추어 공운위 민간위원 구성 중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 민간위원)
81. 공공기관 인력관리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관리 및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발표한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	□ 과도한 정·현원차 축소, 조직·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23～'24년 총정원 약 △12천명을 감축 □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원은 국정과제 수행 등 필수소요 위주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
82. 공공기관 일자리 감축 정책의 문제점 개선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 장애인, 지역 인재 등이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청년·장애인·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전반적으로 과거 수준을 유지('24년) ○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4.4%, 장애인 고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1%,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1.5%로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상회 * '24년 의무고용비율 : 청년 3%, 장애인 3.8%, 이전지역 인재 30%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지난 정부에서 감소하였던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된 정원이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고 있으므로 개선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기관 실정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정규직 채용 등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2025년 5월 관리 종결되었으며, 혁신계획 가점을 삭제한 2025년도 경영평가 수정편람을 발표(9.30.)하여 기관에 안내 ○ 향후 공공기관에서 관련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
83. 한전 KDN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 개선 한전 KDN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향후 한전KDN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전환 타당성 등을 협의할 계획
84. 공공기관 채용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상세계획, 인사감사 등의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임명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 관련 회의록 및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별 통과 사유 및 미통과 후보자별 결격사유를 제출할 것	□ (**조치완료**)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지원을 위한 「공정채용 컨설팅」 및 인사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 * '24년 국감 당시, 「공정채용컨설팅」 및 인사감사 실시현황 등 旣 제출('24.10月) □ 공공기관 임원인사 자료는 후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 시 공정한 인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5.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우며,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 변경 및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에 대한 기관평가 반영에 따른 헐값 자산 매각 등 문제가 있으므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주무부처로 이양하고 기획재정부는 최종 결과만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	□ **기재부**가 평가 제도를 **총괄**하되, 별도의 **독립적·객관적**인 **경영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가 **바람직** ○ **현행 공운법상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넘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취지** ○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직접 평가시, **온정주의적 평가**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실태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이행 여부가 반영되도록 배점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現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실태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內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비계량 3점)에 **반영중**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준수 여부**도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비계량 1점)에 **旣반영중** ○ 다만, 자회사 운영실태평가(노동부)의 경우, **평가대상기관**(‘24년도 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87개 중 43개**(공기업 26개, 준정부 17개)에 불과하여 별도 배점부여는 곤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6.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방안 마련 공공기관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현행 경영평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에 대한 추가 개선 노력을 할 것 업무 전문성 등을 이유로 여러 기관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조직과의 업무중복, 위탁수주형태로의 운영 등 문제가 발생하니 공공기관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중 ○ 기관별 現 재무상태 진단, 자구노력 등 재무관리방안, 재무전망 등 종합적으로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분석·관리 ○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관별 자구노력 계획(지출재구조화,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수립 후 기관 주도로 이행·관리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자구노력의 구체성, 적정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점검·평가 □ 정부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신설을 지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 ○ 정부입법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전에 신설 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 의원입법의 경우, 각 상임위 혹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신설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
87.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방안 마련 공공기관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혁	□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중 ○ 기관별 現 재무상태 진단, 자구노력 등 재무관리방안, 재무전망 등 종합적으로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분석·관리 ○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관별 자구노력 계획(지출재구조화,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수립 후 기관 주도로 이행·관리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자구노력의 구체성, 적정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점검·평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8.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등 법률규정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사유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외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내부규정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기관 내부규정으로 마련하도록 경영지침에 기반영 ○ 다만,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이 국가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참고로, 수사기관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기관의 직무와 무관한 사안도 수사사실·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퇴직·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공운법을 개정하였음
89.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확립 및 방만경영 개선 공공기관의 겸직근무 위반, 근태 문제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등 점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높으며,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사내대출, 과도한 복리후생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혜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호화사택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23년 부터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외부점검과 알리오 공시를 통해 감시 기능 강화 중 ○ '23년부터 시작한 외부점검단에 의한 복리후생비 점검결과(45개 항목) 준수율은 지속 상승 중이며 ('22) 88.6 →('23) 94.1 → ('24) 95.1% ○ 알리오 공시 결과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24년 187만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 * ('13년) 332 → ('14) 254 →('16) 256 →('19) 196 → ('23) 193 → ('24) 187만원 □ 다만, 노사관계법에 따라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노조 동의 필수사항으로 개선에 한계도 있음. □ 한편, 징계감경사유를 강화하여 직무수행 공적과 무관한 표창 등은 징계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경영지침 개정 완료('25.3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0.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도록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현실화 정보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개별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인 틀로 작동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현실화 할 것	□ 정부는 현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수립시 알리오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 ※ ILO는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례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 ○ 공운위에 보수분야 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 -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예산운용지침 수립시 공운위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추가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예정
91.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황 개선 노력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격 산정 시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재무상황을 개선할 것	□ 국민부담, 한전 자구노력, 국제에너지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안정적으로 관리 추진
92.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개편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을 탄소감축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	□ '25년 예산에 기금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은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으로 편입** * 주목적이 탄소저감이 아니거나 탄소감축 효과가 낮은 9개 사업('24년 기준 1,284억원)을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 ** 수소 등 기후대응 연관성이 높은 사업 (그린수소 기술자립프로젝트 등 23개 사업) 기후기금 편입
93. 온실가스배출권 수입 확대 방안 마련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정상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의 주 수입원인 온실가스배출권 수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기금의 규모 확대 및 자체 수입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 추진 ○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시 배출권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 유상할당 비율 대폭 확대 및 엄격한 총량 설정 등 ** 신규 시장참여자(금융기관·연기금 등) 확대 유도, 위탁거래 시스템 오픈('25.11월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작성 대상사업 확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작성 대상 사업을 확대할 것	□ '24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사업 中 감축량을「정량적」으로 측정되는 사업 확대 ○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 수 - ('24) 81 → '(25) 83(+2) → ('26안) 95개(+12개)
95.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 산업 관련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예산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2)에서 '30년 재생e 보급목표 상향(10차 70GW → 11차 78GW) ○ '26 예산안에 신재생e 금융·보급 지원 확대 반영('25 0.5→'26 0.9조원) □ 수소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R&D, 대규모 실증, 인프라 확충 등 추진 중 ○ (예산) 수전해 수소 기술개발 등 수소 R&D 예산 확대('25 1,068 → '26안 1,248억원) ○ (금융) 1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 펀드의 지원대상 첨단전략산업에 수소 분야 포함
96. 기획재정부의 조직구조 개선방안 마련 재정당국의 낙관적인 세수추계가 반복되고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기획보다 재정이 우선시되고 있고, 예산·세제 등 모든 기능이 기획재정부 내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치리완료**) '25.10.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공포**되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26.1.2일 시행) ○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금융정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7. 성인지예산 활용 인력 및 가이드라인 마련 성인지예산 및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것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과 함께 안정적 제도 운영방안 검토 등 성인지예산 제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나. 세제 부문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세수 추계 및 세수 결손 대응 관련 제도 개선 세수오차 및 세입결손 발생 시 구체적 대응방안을 국회에 사전보고 및 협의하는 한편, 세수추계의 적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세수결손 관련 재정청문회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것 세법 개정안 제출 시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 정부가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치를 확정적인 수치로 보고하기 보다는 범위를 두어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세수 결손의 원인은 세수추계 모형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추계된 경제성장률과 같은 부정확한 경제전망에 기인함. 세수추계기관을 재정당국과 분리·독립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경기침체, 감세정책, 예측모델 오류 등으로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정부는 '23~'24년 세수결손 대응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적극 협조중 ○ 추후 이와 관련한 재정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음 ○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수추계 지속 개선 추진 □ 세입예산 편성 이후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검토 ○ 다만, 국회선진화법 취지* 및 내실있는 국회 심의를 위해 예산안 제출 시기는 현행(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유지 필요 * 헌법상 예산안 국회 의결 시기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준수 □ 향후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겠음 □ '25년도 정부 경제전망 모형 고도화 추진 중이며, 연말 완료 예정 * 경제전망용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고도화 (사업추진기관 : KDI) □ '26년 정부예산안에도 ❶전망모형 추가 개선, ❷한은·KDI 등 전망기관 간 경제동향·전망 논의 활성화 등을 위한 별도 내역 사업 반영(금액 6,500만 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25년도에 40% 가량 증가하는 법인세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하반기 주요 경제 전망치 등을 검토하여 2025년 세입 조정을 검토하고,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등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의 오차 최소화 및 추경편성을 통한 세출 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며, 신규 국세감면에 대한 예타제도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4년 연속 세수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할 것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국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실효적인 체납액 회수를 위한 통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청과 협의 중 * (부과·징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검토 (체납·압류) 부처 재량인 전문기관 체납회수 위탁을 의무화하고, 국세 등에 준하는 간접강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도입 등 검토 □ 그간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 ○ 다만, 국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25년 중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예상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여 대응 ○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도,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 中 □ 국세감면액은 납세자의 소득,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전 통제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한도 준수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 □ 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효성 제고, 성과평가 강화 등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26년 정기 세법개정안 반영을 목표로, 조세특례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2025년 세수 재추계 필요 기업의 2024년 하반기 영업실적 둔화로 2025년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둔화로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둔화로 인한 민간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지표 전망이 상당 부분 낙관적인 측면이 있어 당초 추계한 것에 비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할 것	□ 9.25일 **2025년 세수 재추계 발표** 완료
3. 세수 결손 대응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적인 협의 필요 악화되는 지방경기를 고려한 지방재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세수세수결손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재원 미교부시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전에 협의 할 것	□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금) 미교부 시 국회,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 ○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43조 개정* 중 * 교부세(금) 예산배정 유보(집행 보류) 시, 미리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와 협의 후 결과를 국회 상임위 보고(법사위 계류 중, '25.9.30.)
4. 연례적인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세금 정책 개편 필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산 세수가 감소하는 실태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세금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감세정책등은 경제의 동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의성 있는 세제 정책의 운용을 검토할 것	□ 정부는 **법인세율 환원, 교육세율 인상** 등 **세입기반 확대** 내용을 담은 **'25년 세제개편안** 발표(7.31.) → '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35.6조원 세수증가** 전망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신규 세원 확보 필요** 레저용 고급 요트 대상 사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또는 고급 의류 대상 무게 단위를 활용한 고급 의류 대상 과세 등 신규 세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	□ **경제·사회적 여건, 과세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필요** 등을 **지속 검토**하겠음 ○ 다만, **고급요트·고급의류**에 대한 **과세**는 '04년 과세 폐지 취지(고급요트), 해양레저산업 및 국내 의류사업 영향, 과세체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6. **세입 관련 통계 작성 개선** 한국의 GDP 대비 세입이 선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는 중앙정부 수입만 반영된 결과이므로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생성·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일반정부 기준 재정통계를 IMF에 제출 중 □ 다만, 미반영 일부지표는 IMF와 개선 협의 중 ○ 통계 산출일정 단축 등 旣 추진* * 당초 차차년도 2월에 제출하였으나 '23년 결산치부터 차년도 12월로 단축·제출 ○ IMF 측과의 추가협의 및 필요시 통계 개선 추진 계획
7. **서민·중산층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 시 중위소득 활용** 정확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위소득 활용을 검토할 것	□ 세제는 인별로 적용되므로 **개인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 □ **통계청 중위소득**은 **가구단위**로 집계되고, 공적·사적 이전소득 등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에 활용이 어려운 측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교부세·교부금이 축소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교부 방안 마련 세수결손과 관련해 교부세·교부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민생 또는 안전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 일부 추가 교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통하여, 집행상황 점검 지속 이행 ○ '25년 세입경정 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세 감액(△1.7조원) 유보 □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내국세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에 증(增)정산하여 교부세 교부
9.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의 구조적 개선 필요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추계모형 개선과 같은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소수 업종, 소수 기업이 국가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IMF기술자문, AI활용** 등을 통해 **법인세 등 모형 개선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필요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당초 전망 367.3조원보다 29.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세수부족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에 해당되므로 세수결손에 대해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그간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 ○ 다만, 국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25년 중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예상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여 대응 □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도,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11.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관련 방안 마련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소비 특별공제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25년초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 시행중 * 세율 5%→ 3.5%(100만원 한도), '25.1.3.~12.31. 출고분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재정사업** 추진 중 * '24년 월평균 소비지출 대비 금년 9~11월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월 최대 10만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 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 중 하나가 성급한 감세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 지속적인 감세 정책은 의무지출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기반을 붕괴시키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할 것 고령화에 따라 미래에 사회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일본 및 독일 등 고령화 국가는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소득·자산의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으로 인해 미래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세정책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세정책을 재검토할 것	□ 정부는 **법인세율 환원, 교육세율 인상** 등 **세입기반 확대** 내용을 담은 **'25년 세제개편안** 발표(7.31.) → '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35.6조원 세수증가** 전망
13.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최근 10년간 세계 주요국의 조세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는데, 최근 국민 조세부담률이 늘고 주요 세목의 세율이 높아졌으며, 감세를 통해 GDP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요 세목의 세율을 낮추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율 인하** 등은 **신중**할 필요 □ '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종업원 할인 금액 과세 지양 필요 전체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종업원 할인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직장인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이므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감면 논의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종합원 할인금액 과세 입법**은 **과세·비과세**가 **혼재**되어 **집행**됨에 따라 **시장 혼란**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근로자 세부담 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해외사례, 여타 비과세 한도 등을 토대로 **시가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
15.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폐업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는 **과세 형평**, **재정소요** 등 **고려**하여 **신중 검토** ○ 재취업 이후 소득세 감면보다는 **재취업 교육** 등 **재정사업 통한 지원**이 실질적 재취업 유도에 더 실효성 높은 측면 ○ **사업자등록 후 폐업**함으로써 **소득세 감면 적용** 등 **악용 가능성 고려 필요**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 재기·취업**시 **체납세액 납부특례**(5년 분납 및 가산세 면제) 등 **지원 중**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 마련 필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원거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25.2월) * (현금보상) 10→15% (일반채권보상) 15→20% (3년만기 채권) 30→35% (5년만기 채권) 40→45%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폐지 필요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인 외국인 근로자 특례는 외국인 기술자 특례에 비해 요건이 느슨하고, 혜택도 파격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사용자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외국인 기술자 과세특례로 통합하되,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정의를 재정비 할 것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외국인기술자 과세특례의 취지**가 **다른 점** 고려 필요 ○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목적으로 하는 반면, **외국인기술자 특례**는 **이공계 전문인력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목적 □ **제도 일몰 도래**('26.12.31) 시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종합 검토**
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주식시장에서 해외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사모펀드가 과세완화 혜택을 받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사의 밸류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의 동시 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조 1,22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 세수감소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의 동시 추진을 재검토할 것	□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0.05%p 인상)으로 **환원** 추진('25년 세제개편안)
2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보완 필요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실질적 참여율이 2.1%로 저조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2023년에 추징액이 12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참여율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것	□ **(제도 활성화)** 현재도 **매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 중이며, 제도활용·수혜인원이 적지 않음* * 공제 인원('23년 신고) : (임대인) 3.7만명 (임차인) 5.4만명 ○ 내수부진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몰 3년 연장 추진**('25년 세제개편안) □ **(부당공제)** 현재 **공제 신청**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부당 공제**를 **방지 중** * 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지급내역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 공제 적용 후 임대료 인상이 확인되는 경우(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관리비 명목으로 인상하는 경우 등 포함) 추징 등 ○ 향후 **집행 과정**에서 **부당 공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자료 확보 필요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관리되는 양지의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27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예정** ○ **과세 시행 전**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수취 어려움** □ '27년부터 **국제적 정보교환**(CARF)*을 통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거래정보도 확보** 예정 *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2.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필요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 대상의 중요지침이 되고 있으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사 또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구체적인 관련지침을 만들 것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25.2.28)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실적이 2023년 80.4조원으로 2022년 103.6조원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설비투자 지수는 107.5로 2022년 113 대비 감소하였고,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2022년 대비 17.2조원 증가하여 법인세 감세의 경제 활성화 및 낙수효과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감세정책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세부담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2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24. 주주환원 촉진세제 관련 제도개선 자발적으로 고배당을 지속해온 기업에 대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재설계를 검토할 것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의 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한 질의 및 주주환원을 잘 해왔던 우량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할 것	□ **'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안 추진** ○ **역차별 문제**를 **보완**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25년 세제개편안) – ❶고배당 지속 기업과 ❷배당증대 노력 기업을 유형화*하여, 양쪽 모두 세제지원 → 고배당 지속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 * ❶ 배당성향 40% 이상 ❷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고배당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과세방안 등 검토 필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 및 과세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마련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과세체계 구축**) 디지털기업 과세권 배분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 OECD/G20 등에서 **다국적 디지털기업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추가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 논의 중** → **국제노력에 적극 참여** □ **(자료 제출 의무화) 부가가치세법 개정 완료** ○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5조 改정**('24년 정기 국회)
26.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보완 필요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취지와 달리 국내 설비투자 및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과도한 해외투자로 이어져 국내 투자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을 검토할 것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 제도 도입('23 시행) 이후, **해외유보자금**의 **국내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투자 활성화·경상수지** 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다만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필요시 **제도 효과성 분석**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7. 반도체 산업 법인세 감면 등 검토 필요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국가적 지원을 검토할 것	□ '25.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5%p) □ 또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과 같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 (과거) 연구개발시설은 일반시설 수준 공제율 적용 → (개정)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국가전략기술 수준 공제율 적용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26안 1,000억원) 등 투자 지원 강화 * 입지·설비투자액의 30~50% 지원(기업당 200억원 한도) ○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
28.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필요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25.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는 제도 취지, 기술 및 산업 발전수준, 국제적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필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토지·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미국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한이 20년이고 영국과 독일은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한이 무제한인 점을 참고하여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5.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과 같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 **이월공제 기한 확대**는 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30.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큰 수준이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하고,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주요산업의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환급 제도를 신설하거나 세액공제액을 기업 간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5.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상향**(+5%p) □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신설은 **과세형평성, 재정여건** 등 감안시 **신중할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1.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미국은 AI 기술인력을 유입시키려 노력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0.3명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25.9),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 제시('25.9) □ 또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에서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구축과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 제시 * 기업(AI로봇, AI자동차 등), 공공(AI복지·고용 등), 국민(인재양성·유출방지, 해외인재유치) 등 15개 과제 ○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 계획 * (예산) '26년 AI 분야 예산 10.1조원으로 전년(3.3조원) 대비 3배 이상 확대 ** (세제) '25년 세제개편안에 AI R&D·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내 복귀 AI 인재 소득세 50% 감면 연장 등 반영
32. 민간위탁 R&D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민간위탁 R&D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정보 공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 관리 감독 강화노력을 지속중 ○ 민간 위탁 R&D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실무 직원 교육 강화(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직원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24.11월, '25.11월) ○ 수권예산 편성시 국회 승인받은 예산서 지원대상과 예산액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프로세스 도입(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부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 근거* 마련('24.12.31일 시행)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부 고시) ○ 환수금·제제부과금 등 납부 불이행자는 차기 사업 공모시 감점 가능(기존에는 근거 無)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3. AI 산출물에 대한 과세 전략 방안 검토 필요 AI기술 발전과 디지털 창작물 형태의 다변화로 세계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AI 산출물에 대한 과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 구성 및 AI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할 것	□ **AI 산출물**을 **계속·반복적**으로 제작·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현재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 ** ①문예·학술·미술·음악 등 창작품에 대해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예: 원고료, 저작권료, 인세) ②회화·데생·파스텔·판화·인쇄화·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단, 사업자등록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향후 **거래행태 및 해외사례·판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적정한 과세방안** 등 **추가 검토**
34. 톤세제 개선 필요 톤세제는 법인세를 감면시키는 효과가 있고, 기업의 환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톤세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주요국들이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4년 세법개정**('24.12월) 시 **톤세제 적용기한**을 **'30.12.31.까지 연장** ○ 일몰 도래시 조세특례평가 등을 거쳐 연장 여부 뿐 아니라 제도개선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를 **영구화**하는 것은 **신중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5.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는데, 수소는 전략적인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최근 5년간 수소 R&D 및 비R&D 지원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6년 예산안에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25년 92억→ '26년안 264억원),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25년 5억→ '26년안 131억원) 확대 등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6.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비율의 차이는 2021년 34.2%에서 2023년 55.4%로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이 R&D 및 시설에 투자할 때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적용하여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는 지역 투자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 운영중 ○ **지역특구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예: 기회발전특구, 5년 100% + 2년 50%)을 적용하고,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통해 기업의 본사·공장 이전을 유인하는 중 * 소득·법인세 최대 12년 감면(10년 100%+2년 50%, 지역별 차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지방 기업에 수도권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제를 적용 □ **'25년 세제개편안**에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 포함 * 지방이전 세제를 최대 15년 감면으로 확대 등 (10년 100%+5년 50%, 지역별 차등) □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은 **국세**의 **성격***, 지역·법인간 **과세형평, 세수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 * 국세는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현재도 각 지자체는 조례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지방세법§103의20②)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7. 기업의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기업들이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SW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대기업 포함)에 대해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신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장 운영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이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
38.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7.8%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 e스포츠 산업규모는 1.1억 달러로 국제 e스포츠 시장규모인 14.2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5.2월 세법개정**시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4의35) 신설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9. 공익법인 제도 활성화 필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한도를 완화하며, 공익법인이 다양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종합적·일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중** ○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국세청**이 나눠서 담당 ○ 종합적 관리·감독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의무 마련** 등 **협조중** □ **공익법인 제도 활성화**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 **'24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 지원 및 부담 완화 노력 지속중 ○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확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추진 중 ○ 다만, **주식보유한도 완화** 등은 편법증여, 우회지배 등 우려 감안 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 향후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
40. 개별소비세 관련 제도 개선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전환 비율의 일몰연장에 대한 검토할 것	□「지방세법」 일부 개정('24.12.31) ○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민연료로 불리우는 등유가 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율이 높아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위해 등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할 것	□ 현재도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탄력세율 하한**(△30%)까지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외계층 보조금 지원** 중 ○ 개별소비세의 **교정적 성격**, 등유 외 저소득층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 등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신중할 필요**
41.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하 신중 검토 필요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정책이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것	□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안 발표** → **국회 논의**를 통해 **공제율 현행 유지**
42. 가향탁주의 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가향탁주를 기타 주류에서 탁주로 분류하는 정책은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고, 일부의 제조장만 찬성하고 다수의 제조장이 반대하고 있으며, 막걸리를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로 육성하려는 정책 취지에 반하여 막걸리 관련 특허를 위협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25년초 주세법 시행령 개정**시 **업계 내 이견** 등을 고려하여 탁주에 향료·색소 첨가를 허용하는 내용 **미포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3. 주세 제도 관련 제도 개선 주세제도의 종가세 유지로 인한 국내 전통주의 고급화 등을 막고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세 체계를 재검토 할 것	□ **주세**의 **종량세 과세 확대**는 **과세형평성, 국산 주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20년 주세 과세체계 개편 당시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 수렴 → 맥주·탁주 우선 전환 ○ 고가 주류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과세 형평성 및 국산주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WTO 내국민대우에 따라 소주·위스키 등 동등 대우 필요
44. 반려동물세 논의 필요 양육자 책임강화 및 동물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세로서의 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할 것	□ **반려동물세 도입**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반려동물세 등 세목의 신설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반려동물 등록제** 등 **관련 제도 정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45. 교통에너지 환경세 관련 제도 개선 8차 연장을 통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운용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등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시점 및 추후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여부**는 **도입목적 달성 여부, 변화된 여건**에 따른 **목적세* 운영**의 **필요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필요 * 교통세 배분(%): (교통시설) 68 (환경개선) 23 (균형발전) 2 (기후대응기금) 7 ○ 특별회계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교통세 일몰 3년간 연장(~'27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 조세체계의 정비 검토 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계속 연장하고 있으므로, 동 세제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조세체계를 다시 정비하거나 폐지 법률의 폐지를 검토할 것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여부**는 **도입목적 달성 여부, 변화된 여건**에 따른 **목적세*** **운영**의 **필요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필요 * 교통세 배분(%): (교통시설) 68 (환경개선) 23 (균형발전) 2 (기후대응기금) 7 ○ 특별회계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교통세 일몰 3년간 연장(~'27년)
47.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우선권 구매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검토 필요 대중형 골프장에서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것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본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용우선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개별소비세 과세취지**를 감안하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과세**하되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이용우선권 등 판매방식에 따라 개소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은 개별소비세 부과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8.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 세수감소 등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경우, 지방 세입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세수결손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경우 세수결손을 메울 대안을 마련할 것	□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되며, 주요한 지방 재원으로 활용 중 ○ 향후 **종부세 개편논의** 시 **납세자 부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
49.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속세제등의 개편 필요 기업가치를 높여 자본시장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상속세, 배당세, 소득세, 금투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추진 ○ **고배당기업** 및 **배당확대기업**의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고배당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등을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 예정 □ **금융투자소득세**는 **'24년 여야합의**로 **폐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0.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유산취득세 체계에 따라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할 것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자산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할 것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25.5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1. 가업상속공제 제도 관련 제도개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세습과 집중에 기여하고 경제적 균등을 저해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이 있었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부자 감세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업상속공제요건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화** 추진 ○ 앞으로도 지속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예정
52.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확대 필요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는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상속 후 자녀 상속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등을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3.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검토 필요 최대주주 할증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고, 최대주주 할증제도로 상속세 규모가 증가하여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로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려우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경영권 매각 시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재**한다는 점 감안할 때, **시가평가**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54. 상증세 부담 완화 필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높고, 전체 세수에서 상증세 비율이 큰 상황이며, 상속세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 및 징수액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세율 인하, 자녀공제액 확대, 과세표준 조정 등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등을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5. 상증세 인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해 누적법 기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8.6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 상속공제 규모가 확대되어 면세율이 높아질 경우 피상속인의 미실현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가 발생하며, 상증세는 인하로 부자 위주의 감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증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등을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 예정
56. 가업상속공제 제도 보완 및 개편 필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큰 혜택인 점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대상 기업·조건·기간 등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독일의 사례와 같이 기업자산의 일정비율을 동원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세감면 필요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사유에 갑질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법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가업상속지원방식을 공제가 아니라 10% 내외의 저율의 분리과세로 개편하여 가업상속을 받으려는 기업인이 소액이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화** 추진 ○ 앞으로도 지속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7. 가업상속공제 제도 정비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특성 및 사회이동성을 고려하여 기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재검토하고, 베이커리 카페 및 강남의 꼬마빌딩을 활용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 '2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비사업용토지**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화** 추진 ○ 앞으로도 지속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예정
58. 부정무신고가산세 상향 해외에서의 편법적인 증여·상속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상향을 위한 입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도 **최고수준**(60%)의 **가산세율** 적용
59. 관세 관련 제도 개선 할당관세가 실제 물가 하락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할 것	□ 할당관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중 ○ **(농산물 유통관리)** ①축산물 반출기한 단축(45→40일), 냉동고등어 판매완료일자가 빠른 업자에게 우선 배정 ②업체별 판매가격 안정화 계획 및 실적 보고(판매물량·가격 등), ③위반업체 패널티 부여 등 ○ **(농업분야 영향분석)**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별 생산·가격 변화,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여 할당관세 효과 및 농업분야 영향을 연례적으로 점검(농림부-KREI, ~9월) □ 금년도에는 신선 과일·채소보다 물가 안정 효과가 높은 **가공식품 원료*** 위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물가 안정** 및 **국내 농업 보호** 등을 위해 노력 중 * 코코아가공품, 가공과일,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등 □ '26년부터는 할당관세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물가 안정 효과분석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층적 효과 분석을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활용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업체 대상 추가적 관세 부과 및 보복 무역을 행할 수 있으므로 기운영 중인 TF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할 것	□ 각종 회의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계와 적극 소통 중 *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등 □ 앞으로도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가겠음
60. 국제조세 관련 제도 개선 해외 가상자산의 자발적인 신고의무는 성실신고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25.2월부터 시행** 중 * 위반금액의 10~20%→10%, 상한 20억원→10억원 ○ **개정 전 해외금융계좌 과태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조정하였으나,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①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국제거래명세서) 500만원 (개별기업·국가별 보고서) 3,000만원 등 ② 해외부동산 취득·보유명세서 미제출: 취득가액 등의 10%(1억원 한도) ○ **해외가상자산 신고**는 향후 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개시**('27년~) 등을 통해 **정착 기대**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OECD 논의를 거쳐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T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등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경우 세원이 축소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세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OECD 주도로 국제적인 디지털세 필라1·2* 논의 진행 중** * (필라1 : 과세권 배분개선) 거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중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 (필라2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관련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그간 정부는 디지털세 다자협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旣 합의된 **필라2**는 **'22.12월부터** 국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시행 중*** * 소득산입규칙 '24년, 소득산입보완규칙 '25년 시행, 내국추가세 「2025년 세제개편안」 반영 ○ 앞으로도 국익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
61. 조세지출 관련 제도개선 최근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세법에 있는 조세감면 항목 수 380개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감면 항목 수가 69개에 불과하고, 개별세법 69개에서 발생한 조세지출이 34조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세법상 조세감면에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세지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등 **심층 검토** 실시 *「조세지출 관리 개선방안」, KDI, 5~9월 ○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조세지출 분류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25.9월,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일부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고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지출이 2021년 10.4조원에서 2025년 16.6조원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조세지출 귀착비중이 2021년 10.9%에서 2025년 1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소득 및 대기업 중심의 세법개정을 지양하고 중·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혜택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소득자·자산가 대상 비과세·감면 우선 정비**하고, **서민·중소기업**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통해 **효율성 제고**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항목의 폐지 및 개별세법 감면조항들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하며,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점에서 기후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조세지출 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것	□ **조세지출예산서**상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실적을 통해 **환경 분야 실적 공개** 중이며, **예비타당성·심층평가** 통해 **환경 등 영향 평가** 시행 중*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영향 평가**는 **개별 평가 보고서 통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2. 조세특례 일몰 관련 제도 개선 조세특례 일몰의무제 도입 등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관련해 전면적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	□ 서민·중소기업, 투자,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 필요**한 경우 등 감안 시, **일몰의무제 도입**은 **신중 검토** 필요 ○ 조세특례 일몰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 추진 ※ 올해 심층평가(연 감면액 300억 이상 & 일몰도래 제도는 의무실시) 결과, 폐지·축소 의견 7건 중 7건 모두 세법개정안 반영
63.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해외 법인을 대거 설립하고 있어 국내대기업의 해외자회사는 '23년 기준 총 137개이고,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약 25조인 상황이므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해외자회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할 것	□ (**조세피난처 제재 법적수단**) 조세피난처로의 송금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 운영 중 * (이전가격세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제3자간 통상적인 거래가격) 적용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저세율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제 ○ 지속적인 **관련 제도 개선·강화*** **등**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노력**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자료 추가,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대상 추가 등 □ (**배당금 익금불산입 효과분석**) 추후 **필요시**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분석** ○ **저세율국 소재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 **충분한 데이터 축적** 이후, 필요시 **제도 효과성 분석**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4.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구글은 연간 국내 매출액이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023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충분하게 과세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구체적인 매출 현황과 용역의 종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국제논의 참여 등 지속 노력 중** ○ 국가별보고서 등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강화, 이전가격세제 개선 등**을 통해 **국제거래 과세정보 확보 노력** ○ OECD/G20 등에서 **다국적 디지털기업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추가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 논의 중** → **국제노력에 적극 참여** 계획 - **현행 국제기준** 상 다국적기업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분만 과세 가능**
65. 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 제도 강화 필요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지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세지출예산서**상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실적을 통해 **환경 분야 실적 공개** 중이며, **예비타당성·심층평가** 통해 환경 등 영향평가 시행 중*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영향 평가는 개별 평가 보고서 통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6.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 필요 세외수입 미납액 및 불납결손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세외수입 연체액 규모를 파악하고 장기·고액 체납자 재산·소득 정보조회권 강화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국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실효적인 체납액 회수를 위한 통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청과 협의 중 * (부과·징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검토 (체납·압류) 부처 재량인 전문기관 체납회수 위탁을 의무화하고, 국세 등에 준하는 간접강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도입 등 검토
67. 세입예산 확대를 위한 세외수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 내년도 세입예산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 '26년 벌금·과태료 세입예산안 편성 시 최근 결산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소요 반영 * 벌금및과료: ('25) 14,864 → ('26안) 14,852억원(△13억원) 과태료: ('25) 15,101 → ('26안) 15,095억원(△6억원) ○ 향후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적정 수준의 세외수입을 검토할 예정
68. 군납 면세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군마트(PX) 매출 상위 10개 물품이 모두 술, 화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품별 면세 한도량이 군인복지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 군납 면세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군 매점**(PX)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주류**에 한하여 **매년 국방부-기재부 간 협의**를 통해 **면세대상 군납주류 한도량 결정** 중 ※ 주류 외 판매물품 관련 별도 협의 없음 □ 앞으로도 동 제도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9. **국세 관련 통계자료 관리 강화 필요** 국세청은 세목별 불복환급 현황과 수납유형별·체납규모별 체납액 현금정리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므로 국세 통계자료 국세 통계 관련 기구를 신설하거나 현재 국세청 산하 국세통계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국세 관련 통계**의 **내실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 다만, 현재 국세통계센터는 연구원 등 수요가 많은 2개소(세종, 서울)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 국세 통계 기구 설치나 센터 확장은 예산·조직의 확장이 수반되므로 이용 실적 등 수요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접근 필요
70. **국세 납부 관련 제도 개선**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견제 장치가 부재한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결정문 공개할 것	**<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25년 세법개정안)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업종*** **확대** * 사업자·근로자 → 배송, 학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 **체납액 기준 상향**(5천만원 → 8천만원) □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과세전적부심 결정문은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1. 국회 제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필요 국정감사 및 인사 청문회시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개정하는 등 그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	□ **국정감사, 안건심사** 등을 위해 **상세한 국세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국회 제출중** * 국기법 §81의13, §85의6 ○ 인사청문회의 경우, 청문 대상자의 5년간 납부 및 체납실적 제출 * 인사청문회법 §5 ○ 입법·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의 범위에서 국세통계자료 제공* * 국기법 §85의6④, 강행규정 □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 대부분의 선진국도 과세정보와 비밀보호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제공 * 英, 獨, 日 등은 국회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 없음. 美는 비공개회의에 한하여 제공.
72. 관세청 관련 제도 개선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관세청이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세청의 밀수단속 업무에 대한 기재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 * 최은석 의원안('24.12월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국경 간 가상자산 송수신 내역 보고**(한국은행)를 **의무화**하고, 한국은행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관세청** 등에 **제공** □ 관세청의 **밀수단속 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 **지원** 추진 * 마약류 수출입 제한 법령화, 세관공무원 휴대·사용가능 무기 범위 정비 등('24.12월) 마약류 등 신체검색 근거 도입('25년 관세법 정부안)

국 세 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납세자 권익구제 제도 개선 필요 국세행정 상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률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고 조사권 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대로 무분별한 과세권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세무조사 과정의 **조사권 남용 방지** 및 **납세자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규정 정비)**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조사 행위** 전반에 대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 (종전) 금품·향응 등 요구(1개 유형) (개선) 조사기간·범위 임의 연장·확대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6개 유형) □ 향후에도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납세자 권익구제 제도 개선 필요 세무조사 중 납세자 금융거래 정보 일괄조회 및 디지털포렌식의 실시건수가 높으므로 무분별한 계좌추적 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상속·증여세 조사**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활용이 끝나면 폐기**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은 법에 허용된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납세자 권익구제 제도 개선 필요 일용직·특고 대상 소득자료 제출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초기인 '21년부터 현재까지 일용 및 노무제공자 뿐만 아니라 **대국민**을 상대로 **소득자료 제출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 리플릿·홍보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중매체·온라인 홍보 *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 현장소통 * 유관기관 협업 등 □ 특히, **세무대리인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개업 이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월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에게는 **매월 안내문**과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 소득자료가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소득자료가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일용 및 노무제공자,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납세자 권익구제 제도 개선 필요 세무조사 운용 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것	□ '25.3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세무조사 운영 방안**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개** ○ 앞으로도 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 □ 국세청은 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감안하여 '25.5.26.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공개** □ 매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 및 선정 기준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지속 공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비자금, 비거주자제도 및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및 주식 매수, 성실신고 의무 미이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조세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대상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음 ○ 국제 무역·금융·자본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국제공조 강화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 자료상 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중이며 ○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로 거래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음 □ **일부 자산가**들이 국내 체류일수 축소, 해외국적 위장취득, 국내 사업활동 은닉 등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정보활동**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음 □ 앞으로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관련정보 수집,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 관련 대안 마련 필요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강화, 자료요구권 신설, 자료제출 거부 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조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입법화,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국세청은 '25.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미제출 기간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산식) 부과액 = 미제출일수 × 1일평균수입금액 × 0.3%(이내) □ 앞으로도 글로벌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거능력 제한, 입증책임 전환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우선, ①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25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불채택* 되어, 적용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세법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 불채택 사유 : 납세자 불이익 사안, 신중한 접근 필요 ○ ②입증책임 전환, ③증거능력 제한은 사법제도 개편,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 신중하고 정밀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책연구 용역* 후 법무부 등 주무 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 '25.12월 정책연구과제 제출 예정('26년초 연구용역 수행 □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①세법개정 건의, ②제도도입 연구용역 수행, ③학계·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참석 등 추진 중 ■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 기재부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글로벌기업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 진행 * **(필라1)**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25%)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하는 제도 ■ 기재부와 협력하여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규모가 고정되어 있고 징수세액 규모도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대할 것	□ 악의적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위해 '24년 각 지방청에 역외정보 전담팀을 신설하여 총 17명*을 배치함 * 서울·중부·부산 각각 3명, 인천·대전·광주·대구 각각 2명 □ 정보교환, 국제공조 확대 등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과세하겠음 ○ 이를 위해 역외탈세 조사 전담조직·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필요 최근 역외탈세 대응활동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점증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의 효과성 제고,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재검토할 것	□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 전문인력 양성,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였음 *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 ('24년) 6,376백만원 → ('25년) 6,926백만원 □ 앞으로도 역외탈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가상자산 강제집행 관련 제도 개선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를 통해 공매 절차 진행 등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전반의 과정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본청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가상자산 강제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하여 '2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였음 □ **캠코**와 **협의**해 **매각대행 세부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 즉시 원활**한 **매각대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세수 관련 제도 개선 세수추계 참여 기관으로서 기재부에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세수추계참여 기관으로서 기재부에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 – 기획재정부 주관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여(총5회) 신고상황, 세수실적, 우발요인 등을 적극 전달 ○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 – 현금중심 체납관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추적조사 강화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철저히 징수 – 세무서 추적전담반* 도입·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 체납자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 ('22) 8개 세무서 시범운영 → ('23) 19개 → ('24) 25개 → ('25) 73개 – 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마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5('25.6.15.시행) □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를 하는데 **필요한 월별 세수실적 등 국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 위원회에 참여**하여 월별 세수실적 및 진도율, 세목별 증감, 현장의 세입여건 등을 **적극 설명**하겠음 ■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실태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는 외부(기간제 근로자) 전담대응,** 은닉재산 추적 등 **전문적인 부분은 우수 인력**을 **투입**하여 **강력대응** *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재기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추적조사 등 징수역량 집중 ■ 체납자의 재산·소득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징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활용 제고 필요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요건 완화, 분납기한 추가 연장 등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과 신청요건을 완화* 하는 세법개정안 정부입법(기재부) 발의('25.9월) *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특수고용직(대리운전, 배달서비스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 □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한 체납자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 강화하고 있으며, ○ 국세청 블로그, 카드뉴스, 홍보 포스터·리플릿* 등을 이용하여 제도홍보 지속 실시하겠음 * 포스타리플릿 외부기관 배포 확대('24년) 307개 기관→('25년) 466개 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비수도권 지역 납세자 세금 신고지원 인력 확보 필요 비수도권 및 고령층 대상 대면 세금신고 지원이 시급하므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을 지방 고령화 지역에 재배치할 것	□ '24년부터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역에도 위탁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행성과와 사업수요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도 위탁인력을 확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활용한 세금 탈루행위 근절 대책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같은 불법행위 협조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를 강화할 것	□ 불성실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하고, 세법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1] 및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의 명단을 공개[2] 중 1) ('20~'24년, 5개년) 적발업체 880개, 추징세액 16억원 2)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명단공개 업체 ('20~'24년, 5개년) 151개 □ 점검을 강화하여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 * 거짓신고 유인 등 성실신고방해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9②)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1] 및 의무발급화[2] 또한 적극적으로 안내 1) 전산화를 통해 거짓영수증 발급 예방이 가능하며, 발급 시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 2) 전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5.1.1.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주거용 부동산 중 거래금액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한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할 것 시가 형성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되어 실질에 맞지 않게 과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도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과 유사하며, ○ 이에 따라, '25.1.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용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실시중임 □ 정확한 상속·증여 재산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중고거래 관련 매출파악 시스템 정비 중고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 소액 거래하는 일반시민에게 세금폭탄 안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매출 파악 시스템을 정비할 것	□ '23.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자료 수집 ○ 오류금액(9,999,999원 등)이 포함된 이상(異常) 거래를 제외하고 **'25년 신고검증** 실시 ○ (문제점) 점검과정에서 끌어올림 등으로 게시글이 중복 포함된 사례 확인 ■ **중복거래**를 **제외**하고, **상세한 매출내역 수집**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 서식 개정 추진 예정** * (기존) 월별 판매완료 건수·금액 → (개정) 판매게시글 제목·금액·거래시각 등 * 부칙§78(월별 거래명세) 및 전자상거래 고시§15(자료제출) ■ 서식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정확한 매출 내역 확보 기대 □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의 탈루**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검증**을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홈택스,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 등 개선 정비 홈택스 서버 증설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IP를 차단하는 등 과세행정 수요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세무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홈택스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조회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 '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IP는 차단하지 않고 대용량 트래픽은 제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상시 채널을 통해 홈택스 지연이 없도록 세무플랫폼을 관리하였으며, ○ 노후화된 홈택스 서버 등을 교체*하여 국세 신고·납부, 민원 처리 등 홈택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홈택스 서버 30대 등 총 79대 교체 완료(~'25.4월) □ 장기적으로는 홈택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OpenAPI*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 미리 신청한 세무플랫폼 등이 별도 시스템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는 프로그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홈택스,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 등 개선 정비 3월 개통한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은 기관별 양식 및 표기 방식 차이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은 '24.3월에 구축되어 해수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 국가기관과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 공급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상운영 중 ○ 운행 초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면세유 관련 자료의 송·수보 과정에서 일지적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는 오류 없이 송·수보 중임 □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수급 혐의자 점검을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세무대리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대책 마련 세무대리 플랫폼 활성화로 납세자들의 세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홈택스 과부화 및 세무직원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세무플랫폼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홈택스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조회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 노후화된 홈택스 서버 등을 교체*하여 국세 신고·납부, 민원 처리 등 홈택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홈택스 서버 30대 등 총 79대 교체 완료(~'25.4월) □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건수 증가*로 인한 국세청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기한후신고) ('23) 2,592천건 → ('24) 3,969천건(1.5배↑), (경정청구) ('23) 587천건 → ('24) 1,120천건(1.9배↑) ○ 올해 4월부터 일선 직원들이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가 적정한지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항목 등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검토 결과 납세자의 환급신청이 적정한 경우 결의서를 자동 생성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장기적으로는 홈택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OpenAPI*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 미리 신청한 세무플랫폼 등이 별도 시스템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는 프로그램 ○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세무플랫폼을 통한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원스톱 세액공제 시스템 구축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해소하기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원스톱 세액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 '22.10월부터 매년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공제받은 이력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월세 세액공제 안내건수 : ('22) 0.5만 건 → ('23) 1.9만 건 → ('24) 8.5만 건 ○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 **책자 2,600부**를 **금융기관·세무서**에 **배포**하고 **보도참고자료 2회 배포**('24.11월 ~ '25.1월) ○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 및 이에 따른 **월세지출 증빙자료**는 개인 간 거래로서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이 어려워 **공제자료 시스템 구축**은 **어려움** □ 임대인 신고자료 등 내·외부에서 수집한 월세 임대차 계약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25년 15.2만 건 안내 예정(전년 대비 79.3%↑) □ **안내책자** 발간 및 **동영상** 안내,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이용한 제도홍보 강화('25.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세무플랫폼 관련 허위과장 광고 등 조사 필요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 광고,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국세청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관련해서 조사의뢰 및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 세무플랫폼사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금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납세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였으며, * 3회('24.9.24., '25.3.18., '25.9.4.) 개최, 삼쩜삼·토스·쌤157·비즈넵 참석 ○ **허위과장광고**는 **공정위**에서, **개인정보유출**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안으로 **최종결과**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음 □ **'25.3월 세무플랫폼**을 **포함**한 **과다인적공제 혐의자**에 대해 **점검**하여 **40.7억 원 추징**하였음 □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조사** 및 조사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세무플랫폼사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아프리카TV BJ의 후원금에 대한 과세 등 대책마련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프리카TV BJ의 개인계좌로 받는 후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청은 개인후원계좌를 게시한 BJ 등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성실신고를 사전안내 실시 ○ 아프리카TV(現 SoopTV)는 BJ가 영상에 개인계좌를 게시하여 개별후원금 수취하는 행위를 이용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음 ('24.10.15., 플랫폼 상호 변경 시점 부터) *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정의 삭제 □ SoopTV 외 다른 플랫폼(구글 등)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서도 개인후원계좌 게시에 관한 현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개인후원계좌 수입을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음('26.4월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 검토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정확한 수수료 신고를 위해 과세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및 법인세 부과방안 등을 검토할 것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에는 ①정보교환, ②상시검증, ③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 아울러, 조사행정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국회 논의·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마련되었음 *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매일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24.10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송언석의원), (~'25.2월) 기재위 법안심사, ('25.3.14.) 국세기본법 개정, ('25.9.15.) 제도 시행 □ 앞으로도 기재부와 협력하여 OECD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제적인 과세기준 변경 논의(필라1)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에어비앤비 숙박제공자의 숙법영업 등록 검토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제공자로 활동하는 사람의 39%가 불법영업 중이므로, 숙박영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영업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에어비앤비는 이용약관으로 국내공유숙박업자에 숙박업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변경('25.10.15.) ○ 또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개정에 따라 에어비앤비에서 활동하는 국내공유숙박업자에 대한 매출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음('25.7월~) □ 에어비앤비의 결제대행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 자료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미등록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 및 지자체에 숙박업 등록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편법증여에 대한 소급과세 및 편법증여 방지대책 마련 특정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데 국세청 출신 컨설팅 업체가 올해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편법증여에 대한 소급과세의 필요성 검토 및 편법 증여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특정 기업의 승계 관련 합병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것	□ 국세청에서는 '25년 세법개정 이전에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증세법 §45의5)'의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국세청(법규과)에서는 **관련 사전질의**에 대해 '17. 5월부터 일관되게 **과세불가***로 **회신**(총 10회) * (이유) 자본거래는 법령상 열거된 거래(손익거래)가 아님 ○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1년부터 기재부로 **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25.5.7. 법령 개정**으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가능** □ 국세청에서는 언론, 공시자료 등을 활용해 **대기업 사주들의 편법 증여 혐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검증** ○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합병 등 **경영권 편법승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청의 노력**을 **직접 설명** □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대기업 사주의 **경영권 편법승계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법령상 미비점**은 지속적인 개정 건의 등 **입법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미성년자 불법·편법 증여 관련 자료 정리 필요 미성년자 불법·편법 증여 추세 현황과 어떤 형식으로 불법·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것	□ 미성년자 불법·편법 증여 사례는 자금출처·주식변동 검증이나 법인·개인통합조사 등 다양한 검증·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며, ○ 조사결과 통계 등의 자료는 주조사 분야 통계로 통합 관리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증여실적 관련으로만 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편법 증여 유형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더욱 면밀하게 검증하는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차단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으며, ○ 미성년자의 불법·편법 증여 관련 데이터 또한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상 소송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높은데, 이는 국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이 부족함에 기인하므로 전문변호사 인력 확충 등 체계적인 소송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것	□ 외국계 기업 상대 **소송 패소율 축소**를 위해 **조세전문 대리인**을 **적극 선임**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리인 선임체계**를 **보완**하여 **우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리인 선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고액소송 대리인의 **승소 사례금 확대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등을 통해 **소송수행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소송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소송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승소장려금 인상, 승진 혜택 부여, 연봉상한 폐지 등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 승소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상을**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하여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신설하였음 ○ 우수한 내부 변호사의 임기연장으로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특별승소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승소율 제고 위해 노력 □ 승소유인 강화를 위해 승소장려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송무분야 **교육** 등을 통해 자체 소송 대응 역량 강화하겠음 ○ 우수 내부 변호사의 **연봉 상향** 등 내부 변호사의 장기 근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세무조사 기준 정비 납세자의 성실도, 미조사기간 등과 관계없는 무작위추출방식 세무조사는 실적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게 기준을 정비할 것	□ '23년 귀속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기준안 마련 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공평과세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무작위추출에 의한 개인사업자 조사선정 폐지** ○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투기성 주택보유 외국인의 취득 등 세무조사 실시 투기성 주택보유 외국인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해 올해 2차례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25.8.7.), 초고가 주택 연소자·외국인 전수 검증 세무조사('25.10.1.) □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편법증여 및 소득누락 등 탈세혐의가 없는지 보다 면밀히 검증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	□ 개별납세자에 관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대법원 파기환송('25.10.16.)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음 □ 특정 업체의 탈세혐의에 대한 추징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상 개별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음 ○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하고 있음 □ 앞으로도 ①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확대, ②과세인프라 고도화, ③종사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 과세하겠음 ① 금융정보(CRS)·가상자산거래정보(CARF)*를 교환하는 국제공조네트워크 참여 ②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이체 자료** 수집,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③ 실무중심 전문교육 개편, 국내·외 위탁교육 강화 등 * OECD 48개국 참여, 각국 내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 예정('27년) **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의미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용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중증환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 대상의 중요지침이 되고 있으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사 또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	□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료인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음 ○ 다만, **국세청**은 '24년에 장애인공제 대상 확대를 **개정건의**(희귀질환자 추가)한바 있으며, ○ 최근 **세법개정***('25.2.28., 소득령 §107①)을 통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추가**되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 대상**이 **보다 명확화**되었음 * (개정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개정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앞으로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관련하여 개정건의 필요성 등을 모니터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7. 현장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현장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으나, 1.2%의 현장정보만 실제 추징에 활용되고 관련 성과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도 저조한 실정이므로, 활용도 면에서의 개선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할 것	□ 인센티브 확대 ○ 직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마일리지 지급 ■ **탈세사실 적발에 기여한 현장정보를 제출한 직원에게 성과마일리지를 지급** ■ **실효성 높은 현장정보 수집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 실효성 있는 현장정보 수집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을 계속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8. 국정조사 등과 관련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검토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정조사 등과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화 및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OECD 및 주요 선진국은 과세정보 비공개가 원칙이고, 우리 법원도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과세정보 제공 관련 개정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의 비교형량, 납세자와의 신뢰관계 및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 제공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관련 산출기준 등 마련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기준 등을 마련할 것	□ **국가전략기술 추가공제**를 위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산출 기준**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 현재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생산하는 **세법해석**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합리적인 산출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부서에 **적극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0.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우대혜택 재검토 필요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무조사유예 등 세정혜택을 악용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또는 우대혜택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모범납세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이용 실익이 없는 **혜택***을 **정비** * 공항출입국 우대, 납세담보제공 면제,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할인 □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제도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1. 먹튀 주유소 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등 제도 개선 필요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고 탈세한 뒤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의 세금 징수율이 0.7%에 불과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5.1.1.부터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현장유류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석유사업법 시행령」상 주유소 등이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대방에 '매각 행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공매를 통한 신속한 국고 확보 도모('25.8.19. 시행) □ 체납방지 및 세수확보를 위한 추가개선 사항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2.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 면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고액·상습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지난 5년간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징세권한이 사라진 체납세금 규모가 총 8조 8,403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13년 시행)하고,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를 정지('18년 시행)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음 □ 소멸시효는 독촉, 압류, 수색, 교부청구 등 집행 시 중단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제기 시 소송기간 동안 정지되므로, ○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소득을 면밀히 파악하여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수색·소제기 등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부당하게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필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명단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자의 나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자 식별 및 심리적 압박효과 제고를 위하여 법령개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공개하도록 할 것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50% 납부 시 제외기준 : (현행) 전년 말까지 납부 → (개정) 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25년 세제개편안 반영) ○ 명단공개 제도의 **징수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단공개 범위**를 **구체화**(나이 → 생년월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5.3월 **기재부에 건의**함 □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공개 된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소제기** 등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겠음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

3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td><td>

□ 조세회피처*로의 투자나 송금을 모두 탈세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외환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대부분의 경우 거래대금 결제 등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음

*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조세회피처는 없으나, OECD에서 과거('00년, '09년) 정보교환 미이행국가 등 50개국을 지정(단, '09.5월이후 모두 해제)

** 원유 구매 등 무역대금 결제, 해외투자펀드 송금 등 자본거래

□ 앞으로도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부유출을 적극 차단하도록 하겠음

□ 국내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제도 운용중

<table>
<tr><th>제출자료</th><th>주요 보고내용</th><th>비고</th></tr>
<tr><td>해외현지법인 명세서</td><td>해외현지법인 투자현황</td><td rowspan="6">대상 : 거주자/내국법인
기한 : 6월 이내
근거 : 국조법 제58조</td></tr>
<tr><td>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td><td>해외현지법인 재무제표</td></tr>
<tr><td>손실거래 명세서</td><td>손실거래 내역</td></tr>
<tr><td>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td><td>해외지점, 연락사무소 개요</td></tr>
<tr><td>해외부동산등의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td><td>해외부동산 투자현황</td></tr>
</table>

■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모니터링, 철저한 세원관리로 불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음

</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5.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사업자 외 유사 피해업체 추가 필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겪은 사업자 외에 알렛츠 등 유사 사태로 인한 피해업체를 추가할 것	□ **알렛츠, 인터파크 등** 플랫폼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세정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였음 ○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 신고 시, 법정지급기한 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 경색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적극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한 적극 지원 □ 앞으로도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6.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사전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것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후동의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하였음 ○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7월 개정되어 감염병 관련 재난지원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해졌고, '25.1월에는 일반적인 재난 시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과세정보 요구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 □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과세정보 요구근거 법령이 완비된 만큼,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7. 과세정보 적극적 공개 필요 사후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로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민생안정과 경제협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정부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과세정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과세정보가 필요하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 제·개정에 적극 협조하겠음 ○ 사전수요 신청 활성화,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발간·배포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과세정보 활용확대를 위한 긴밀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8. 웨딩업체 탈세행태 근절을 위한 노력 및 세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웨딩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 수행,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웨딩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 웨딩업체 관련 **사업자, 사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발급방법, 주요 위반사례** 등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웨딩업체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고한 때에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함 □ 앞으로도 웨딩업체의 **발급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성실사업자**는 **엄정 대응**하고 웨딩업체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환급금 조기 지급**을 통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9.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초과 납부 원천징수세액 자동환급 시스템 구축 필요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영세 인적용역사업자가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초과징수금을 환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할 것	□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환급 편의를 위해 '22년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왔으며, **'25.3월** 기존 「환급금 찾아주기」를 확장*·개편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 * 서비스 대상자를 인적용역자, 기타·연금·근로소득자로 확대 ○ **('25.9월)** ARS **신고 기능** 및 AI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등 **신고편의**를 대폭 **개선**하여 **소득세 환급금 신청 안내*** *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 1,985억 원 □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신고 없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추진** □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저임금 노동자**의 납세 불편 해소 및 납세 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자료제공** 등에 **협조** 하겠음 ○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세수, 납세협력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 분석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0.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일괄납부제 재도입 필요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시스템 분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납부하던 이전 시스템으로 회귀할 것	□ 지방세 분리납부 시행('20.1월) 이후 세무서와 지자체 **합동신고창구 운영** 및 **홈택스**(국세청)와 **위택스**(행정안전부) **연계** 등을 통해 분리신고 불편 최소화 노력 * **(합동창구)** 세무서와 모든 지자체에 설치, 국세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 지원 * **(홈택스-위택스 연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위택스에 실시간 통보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 **행정안전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1. SNS 플랫폼 등을 활용한 조세탈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형태가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를 가장한 조세탈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SNS마켓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업종코드 신설('19.9.월) 및 성실신고 사전안내 실시 중 * ('19년) 470 → ('20년) 2,051 → ('22년) 8,423 → ('24년) 12,643으로, '24년이 '20년 대비 사업자 수 616% 증가 ■ **SNS마켓**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가 확인되면 **신고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 예정 □ 국세청은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행자료 등을 수집하여 세원관리를 촘촘히 수행하는 동시에, 탈세제보, FIU정보 수집 및 필요시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 검증 □ SNS 플랫폼을 비롯한 온라인상의 다양한 거래형태와 신종 산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포착되는 탈루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2. 비상장주식 물납 관리 철저 비상장주식 물납의 경우 사전에 평가를 면밀히 하고, 물납 허가 시 경영 실적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세청은 상증령 §71에 따라 유가증권 물납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납하고 있음 ○ 또한 유가증권 물납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물납 증권 적정성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였음('25.3월) * 물납증권 회사의 재무비율 양호,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영업이익 발생 등 □ 물납으로 인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 완화 필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기준금액을 완화할 것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기재부에 신고포상금 **기준금액**을 **완화**(5천만원 → 1천만원)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 보도자료 배포, 문자전광판 홍보,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 완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4. 지방 창업기업 확인제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환수 필요 지방 창업기업 확인제를 악용한 탈세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검증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할 것	□ 국세청은 **공유오피스**를 **통한 부당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24년 국정감사 후 공제감면 사후관리 시 **점검** 실시 ○ 공유오피스로 보이는 장소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중 '23귀속 창업감면 적용한 자로서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위장사업 혐의**가 **높은 자**를 **점검대상 선정** ○ 점검대상 중 **일부만이 부당하게 창업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한 자** 중 **창업감면 받은 자는 소수**에 불과하였음 □ 앞으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공유오피스를 통한 **부당 창업감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관리**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창업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탈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등 제도를 정비할 것	□ 국세청은 **공유오피스**를 **통한 부당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24년 국정감사 후 공제감면 사후관리 시 **점검** 실시 ○ 공유오피스로 보이는 장소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중 '23귀속 창업감면 적용한 자로서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위장사업 혐의**가 **높은 자**를 **점검대상 선정** ○ 점검대상 중 **일부만이 부당하게 창업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한 자** 중 **창업감면 받은 자는 소수**에 불과하였음 ○ 최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이 **개정**('24.12.31.)되어 수도권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고 감면한도(연간 5억원)가 신설되었음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중소기업의 감면율 하향개정 : (개정전) 100% → (개정후) 75% □ 앞으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공유오피스를 통한 **부당 창업감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관리**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6. 세금포인트 현금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세금포인트 사용비율이 0.59% 정도밖에 안되므로 세금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여가 분야 사용처**를 적극 **확대*****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목동 아이스링크, 마라도·가파도 여객선 등 7개('25.5월) ○ 다만, **운영예산**이 **없어** 협약기관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 **현금화 방안 도입**에 **한계** □ 향후 포인트 사용 활성화 추이를 살피고 **정책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7. 주택임대사업자 탈세 근절을 위해 수입금액 검증인원 확대 필요 매년 3,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하고 있는데, 세금 탈루로 적발되어 추징된 인원 비율이 평균 85%에 달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탈루 근절을 위하여 검증인원을 확대할 것	□ 주택임대사업자 **탈세 근절**을 위해 **수입금액 검증인원**을 **확대** 실시 ○ **(검증인원)** 검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150명 확대**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등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자 위주**로 **검증 실시** * ('19년) 2,000명 → ('20~'23년) 3,000명 → ('24년) 3,150명 → ('25년) 3,300명 □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의 **탈세 근절**을 위해 수입금액 **검증인원 확대** 등 **지속 노력** ○ 내년에도 고가·다주택자의 **탈세 근절**을 위해 **무(과소)신고** 내역 **정밀분석**을 통해 **검증인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8. 부정 무신고 조항을 해외자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가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조항을 해외자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세포착을 어렵게 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처**와 **논의** ○ 다만 60%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가상자산 상속·증여 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9. 조세특례 관련 집행 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 조세특례는 국가의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거하여 집행할 것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조문**의 **특정문구**를 **확장해석**하지 않고, 해당 조항의 실효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리 □ **헌법재판소 결정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의 **요건**을 **법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집행 □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 문구대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ㅇ 특히, 공제·감면 등 명백한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25년 상속·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점검시 업무연락 등을 통해 엄정집행 지시(추징실적 15.9% 증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0.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불법사금융 신고는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착수율은 1%대에 그치는 실정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 탈세제보, 등록면허세 자료 등 ①자체 정보 수집 및 검찰·경찰·금감원 등 ②유관기관과 정보 공조*를 통해 매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기소자료(검찰), 수사자료(경찰), 피해신고자료(금감원) 등 정보 공유 ○ 다만, 금감원 피해신고 내용 등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고,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등 관련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업무에 애로가 있음 □ 앞으로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1. 세무조사 유예 법적근거 마련 필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추진할 것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조사유예는 **국세기본법**의 **조사연기 규정**(§81의7②)을 **준용**하여 시행중임 □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2.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 제출 제도 유지 필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세를 위해 주식 등 보유 및 거래 현황을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	□ '24.12.10. **금투세가 국회에서 폐지 의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도 함께 폐기됨 □ 상장주식 전체 보유·거래내역 수집, 개정 건의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3. 공익법인 관리강화 필요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500개 이상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보호 및 편법적인 승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규모 공익집단에 대해 점검할 것	□ 국세청은 공익법인 신규 제도 등을 집행하고, 공익법인 검증강화를 위해 조직·인력 보강 노력 ○ '25년 4월 행안부에 세무서 현장인력 증원(94명) 요청(불승인) ○ '25년 10월 임시조직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의 정규조직(공익과) 전환을 요청(진행중) □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이용한 자금의 변칙증여 발견 시 증여세를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 ○ 현재 공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공익법인의 상증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 ○ 회계부정 등 확인되면 증여세 등 제세 추징과 함께 기재부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4. 고액 체납자에 출국금지 제도 강화 필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출국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인의 출국금지 반복 해제 횟수 등을 관리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것	□ 해외 사업계획 등 사유의 **일시적 출국금지 해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국 사유, 출입국 일정, 분납계획** 등 상세 현황을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완료**함 □ 향후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일시적 출국금지 해제 이력**이 **있는 자**는 **출국금지 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관리**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5. 체납 전담조직 등 비선호 부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체납 전담조직 등 비선호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 '25년 **징수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체납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 □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징수포상금 대상 선정기준**, **지급방법** 등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6. 청년 인턴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직무경험을 축적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25년 총 3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본·지방청(38명), 세무서(262명)에 배치하여 직무경험 기회 제공 ○ (본·지방청 인턴) AI 상담 시스템 개발·지원, 최신 불복청구 결정서 요약 등 미래 조세행정 및 전문분야 직무 경험 ○ (일선 세무서 인턴)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 신고창구에서 납세자 직접 응대 및 전자신고 안내 등 국세행정 현장 실무 경험 ○ (부서 순환근무) 세무서 내 주요 부서를 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도록 하여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 부여 □ 향후에도 부서 이동 전 사전 직무교육 강화, 실무 경험 기회 집중 시기를 고려한 인턴 근무기간 조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7.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 개선 필요 가업승계 납부유예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신청기업이 1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하였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	□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는 상속인 사망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익이 크지 않은 점과 납세담보 설정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신청기업 수가 저조*한 것으로 생각됨 * ('24년) 1건 결정 → ('25.10월말 현재) 5건 결정 □ 가업승계 납부유예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8. 배달업계 관련 일관된 사업자 등록지침 마련 필요 배달 대행업체는 늘찬 배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배달 라이더가 이용하는 업종코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사업자 등록지침 마련할 것	□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업무 시 **업종코드**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지침 배포** ○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원의 **업종 특성**, **업종코드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하여, 배달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정정)업무 처리 시 **정확한 업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앞으로도 **납세자**의 **업종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실제 영업형태**를 **반영**한 **정확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9. 골프장 캐디 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 필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골프장 캐디 피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검토할 것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현행 **현금영수증 시스템**도 **사업자**를 전제로 **개발·운영**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인적용역자**인 **골프장 캐디**의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나 ○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점, 타 인적용역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캐디에 대한 **의무발행업종 지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캐디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사업장제공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의해 **파악**하고 있음 □ 앞으로도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무발행업종 지정 필요업종**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를 **면밀히 운영**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0.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대응 강화 필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하여 국세 행정 신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료상 등 부정거래 행위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앞으로 AI분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로 거래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1.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검토 필요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징수한 세액규모가 큰 반면 포상금 지급액 비율이 저조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검토할 것	□ 국세청은 유용한 탈세제보 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시지급,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포상금 수시지급)** 탈루세액 완납 전이라도 **5천만원 이상 일부 납부** 시에는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추후 탈루세액 납부 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 추가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1.2.17. 시행)하고, ○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탈루세액 본세 외에 **피제보자의 거래처로부터 추징한 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21.5.20. 시행)하였으며, ○ **(포상금 기준 완화)** 탈루세액 본세에 부가되는 **모든 가산세를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24.5.22. 시행)하였음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기재부에 신고포상금 **기준금액을 완화**(5천만원 → 1천만원)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현행 40억)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탈세 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 완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2. CARF 체계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필요 2027년부터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체계에 따라 48개국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국세청 전담인력은 5명에 불과하여 가상자산 정보 처리가 가능할지 우려되므로 전담인력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청은 현재 주어진 인력 내에서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관련 전담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국세청은 관련 전담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3.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및 수수료 공제 검토 필요 일정 금액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되 평가수수료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를 기재부에 건의하였음('25.3월)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와 감정평가 의무화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등 시가 과세 정착을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시 적극 개정건의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4. 근로장려금 담당 직원 감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직원 감축을 논의 중이므로 직원 감축이 없도록 잘 대응할 것	□ '19년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도입 관련으로 증원된 **근로장려세제 집행 인력**(374명) 대한 **행정안전부**의 **신규인력평가 심사**에 **적극 대응** ○ 근로장려세제 분야의 업무성과가 양호하고 향후 업무량 및 수요증대가 예상되어 **증원 인력 전원 평가제외** 결정('24.11월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 □ 앞으로도 장려세제 분야 **인력 감축**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인력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 향후 제도 확대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제도 집행을 위해 **인력 증원 요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고소득 유튜버 포함 필요 고소득 유튜버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할 것	□ 유튜버*가 **국외 플랫폼**(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외화수취자료)과 **국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을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 안내**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유튜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 **불성실 신고자**는 **사후검증** 지속 실시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7.5억,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5억원 □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원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검증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6.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군부대에 대한 지도 및 조사 수행 필요 사업장폐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리용역 계약 시 발주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군부대에 대한 지도 및 조사를 수행할 것	□ 동일사안 방지를 위한 안내 실시 ○ 해당 내용을 국방부에 안내하였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에게 안내 □ 군부대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관련 기획점검 실시 ○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점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0월말 현재 각 세무서에서 점검 진행중 □ 점검대상 업체 자금 부담완화 방안 검토 ○ 국방부의 사후조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을 검토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배당하는 방안 검토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제도 보완 필요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다가 자가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요건 적용대상을 현행 세대주에서 부부합산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는 법령상 연도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1]만 **적용 가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판단 시 **근로자별**[2]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1)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2)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 **과세연도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연도 중 지출**한 월세*·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함** * 다만 현금 지급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가능 □ ①**과세기간 중 주택 구매자**도 연중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월세 세액공제** 시 **총급여** 기준을 **부부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 **기재부**에 **개정 의견**을 공유하였으나 '25.7월 **세법개정안**에는 **미반영**됨 □ **법령개정**이 **필요**사항으로, **기재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등 적극 검토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8.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 공헌활동에 기부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를 권고하였으므로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퇴직 및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 예정인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 '24.12월 소멸예정인 항공마일리지(299만 마일리지)로 타월·칫솔·가방 등 약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활동을 실시하였음 □ '25년에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마일리지 기부 희망을 파악하였으며 마일리지 구매 물품을 12월 중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예정임 ○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대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공무 출장에 우선 활용하고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의무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9. 탈세 제보 접수 사안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 필요 국민 탈세제보 중 국세청이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담당인력 1인당 처리 건수가 무려 146건에 달하며 탈세제보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력 충원, 업무체계 점검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	□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탈세제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절차 개선, 장기 미처리 제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지속적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있음 ○ **(즉시 종결)**피제보자 인적사항 불명, 무증빙 등 처리가 불가능한 **탈세제보의 경우 보완요구 없이 즉시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 **(장기 미처리) 장기 미처리 자료**에 대해 지방청에서 점검 후, 본청에 보고하는 등 엄정한 자료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음 □ 앞으로도 탈세제보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0.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강화 컨설팅 업체를 통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탈루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국세청은 불법 R&D 컨설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는 등 부당공제 혐의에 대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정부출연금 자료 등 과기부와 연구개발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에 활용 ○ '25년 본청의 기술심사관 3명을 증원하였고, '25년 4월 행안부에 지방청 R&D 전담인력 증원(38명) 요청 □ 불법 R&D 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부당공제 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 과기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1. 알머스기업 세무조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치 필요 '알머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사가 아닌 연구시설에 대해 착수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혜를 준 것이라면 관계 직위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	□ 특정 기업의 조사 관련 사항은 개별 과세 정보로 제공 어려움 □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그 외 다른 요소나 목적이 개입될 수 없음 ○ 앞으로도,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집행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관련 개선방안 마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의 포괄 양수도와 관련하여 **사업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할 경우, ○ **포괄 양수도 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양도·양수자**에게 부과 되는 **가산세**와 **양수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게 되고, **양수인**의 **자금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선의의 사업양수자**의 **불이익**과 **고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리납부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폐지 편법적인 증여 상담으로 전락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폐지할 것	□ 가업승계 제도의 요건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중이며, ○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함 * 직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이하 소규모기업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4.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 공개 국세청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 가능 여부 검토할 것	□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를 위해** 재무상태표 **가결산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전산간이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전산간이평가액을 납세자에게 공개할 경우 부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이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5.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및 환수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신설로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환수에 따른 대량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층에 대한 **자동신청제도 도입**한 이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장려금 상담센터**를 **상시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 시행 □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환수발생 축소를 위한 **법령 개정** ○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미환수금액**에 대한 **차감기간 연장**(5→10년)’ 및 환수발생 축소를 위해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유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24.3월 개정안 제출 → ’25.2월 개정 □ 당해연도 **소득·재산자료**를 조기에 **수집·활용**하여 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 **지급유보 실시**하고, ○ 현행 연간소득을 추정하는 **상반기분 근로소득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세법개정 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6.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방식 개선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일괄조회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조회 방식을 원칙으로 할 것	□ 국세청은 상속재산 확인, 고액자산가의 편법증여 검증 및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확인 등을 위해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있음 □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승인 시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7. '플리바게닝' 철저 관리 필요 세무조사 시 '플리바게닝' 사례를 전수조사 후, 사실인 경우 청장 및 관계자의 사퇴 및 위증죄로 처벌할 것	□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 제고와 부조리 발생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또한 세무조사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8.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퇴직 후 불로소득 포기 서약 필요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직하여 불로소득을 비호하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퇴직 후의 불로소득 포기 서약을 받을 것	□ 정부 부처별로 고위직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퇴직 후 대형 로펌 등에 재취업하여 전관예우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비호하는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승진 시 불로소득 비호 업무에 대한 포기 서약을 받는 것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즉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9.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혜택 변경 필요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혜택 중 세무조사 관련 우대혜택을 삭제하고 명예 위주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모범납세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이용 실익이 없는 **혜택***을 **정비** * 공항출입국 우대, 납세담보제공 면제,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할인 □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제도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0.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 이해충돌방지 대상에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소유 법인을 포함할 것	□ 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법상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직무 재배정 등 조치하도록 관리하며, ㅇ 본인 및 친족에 대한 세금 결정 업무처리를 제한하는 전산시스템 마련 □ 앞으로 업무부서의 결재권자를 배제한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계속 직무수행 여부 등 조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1.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율 및 비위 발생률 감소 방안 마련 필요 매년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세워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율과 비위 발생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비위 사건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월별 카드뉴스 배포 등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음 ○ 또한 비위적발 중심의 강도 높은 교차복무 감사를 실시하여 엄정 처분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징계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앞으로도 세무조사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감찰을 지속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차단 하는 등 비위근절(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2. 역외탈세 및 조세불복 증가에 대응하여 소송 전문성 강화 등 필요 지능범죄 등 고도화된 탈세 증가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대비가 필요하고 고액 조세 불복 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성을 강화할 것	□ 고액 소송 패소율 축소를 위해 고액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마련 ○ 과세 전에는 과세자문제도를 통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 ○ 과세 후에는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판례교육** 등을 실시 □ 앞으로도 과세처분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개별사건에 적합한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고액 소송 패소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3.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필요 콜센터 상담사들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상담사 임금 인상 등을 검토할 것	□ '25~'26년도 홈택스상담 위탁운영 계약 시 **유급병가 제도 도입** 및 **상담사 임금 인상 실시** ○ (**유급병가 도입**) 유급병가 부여 기준 제시 및 수탁사 내부규정에 따른 병가 중 최대 5일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감액하지 않도록 계약 ○ (**임금 인상**) 상담사 월평균급여를 246만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5%) * ('24) 234만원 ➠ ('25) 246만원(+12만원, 5%) □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타 기관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국세청 위탁사무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위탁위탁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4.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직원 복귀 국세청 직원을 감사업무 지원이라는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감사를 통한 방송장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직원을 복귀시킬 것	□ 부처 간 협업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였으나 '25.1.17. 파견 복귀 이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직원 없음. ○ 향후 다른 기관의 파견 요청 시 부처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행정지원이나 업무협조 등 파견 필요성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5.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원직 공개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필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원직 수행 여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할 것	□ **민간위원**에 대한 **안내** 및 **점검** 실시 ○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안내사항)** 위촉 시 위원이 **준수할 사항 안내** 및 서약서 작성, 활동 시 분기별 **청렴문자 발송**하여 주의 환기 – **(점검사항)** 반기별로 민간위원의 **셀프홍보** 여부를 **점검**하여 공개 사례 확인 시 해촉 조치 ○ 세무관서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 수시 점검**하고 해당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강화** * 위원회 위촉식 사진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민간위원의 위원직 수행 여부 외부 공개 등으로 위원회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 민간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 셀프홍보 점검 등 사후관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6. 국세청 홍보대사 선임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톱스타 연예인의 무보수 홍보대사 위촉은 권력기관의 갑질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년에는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고**, **생성형 AI 이미지**를 활용한 포스터와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있음 □ 홍보대사는 정책홍보에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 있겠으나, **유명 연예인만**을 **선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7. 국세청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국세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비위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청 자체 감사 실시, 감사결과 공개, 개방형 감사 직위 마련 등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정분야 점검 필요시 자체감사 적극 검토 ○ 국세청 본청은 수시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나 특정분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자체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음 □ 감사결과 공개 범위 확대 ○ 그간 지방청에 대한 본청의 감사결과를 연 1회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서에 대한 지방청 감사결과를 포함하여 연 4회 공개하고 있음 □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 중 ○ 개방형 직위 운영 취지에 따라 내·외부 구분 없이 준법 정신과 전문성이 높은 인물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8. 국세청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개선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세청 내 성비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26건에 달하고 파면을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	□ 기관장 포함 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적 실시 중 ○ 피해자가 적기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로 성고충 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 ○ 성비위 예방 전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조직문화 진단을 받고, 종합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 시행('24.2월, '25.2월) ■ **관서장 주도 주기적 근절의지 표명, 고충상담창구 등 홍보, 표준 상담안 배포** ■ **고충상담원 및 조사인력 역량 강화 교육,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카드뉴스 제작** □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 ○ 성비위 예방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26년에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9. 세무조사 성과평가 방식 변경 필요 현행 세무조사 성과평가는 100%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을 적절하게 조합한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것	□ 세무조사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 변경은 모든 조사공무원에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선 **현장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20년 정량평가 폐지의 취지 등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 앞으로도 성과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점검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0. 인사 조직 관련 제도개선 국세청 고액 소송 패소율 해소 등을 위해 송무 담당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 **승소시** 받는 금액보다 **패소**시 **차감**하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감액기준**을 **완화**하였음 ㅇ 승소포상금 감액기준 5~3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완화 □ 승소포상금 **지급금액 상향**을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0. 인사 조직 관련 제도개선 국세청 내 사적이해신고가 강화되었으나 직무재배정 조치 비율이 낮은 수준이고, 국세청장의 이해충돌 등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시 '직무재배정', '직무수행 일시 중지' 등 실질적 조치 비율이 높아지도록 '직무 계속수행' 가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앞으로 업무부서의 결재권자를 배제한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계속 직무수행 여부 등 조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0. 인사 조직 관련 제도개선 국세청의 고시/남성 편중 인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역량이 우수한 여성 및 비고시 인력을 발탁 승진하고 본청 과장 등 주요 보직으로 배치를 확대하는 등 ○ 능력과 성과 등에 입각하여 성별·임용구분별로 관계없이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음 * 비고시 고위 승진('25.10月) : 광주청장 김학선 / 여성 부이사관 승진('24.12月·'25.10月) : 전지현·전애진 ** (주요 보직) 서울청 조사1국장 김승민[비고시] → 12년만에 7公 출신 보임 *** (국세청 과장급) 여성 ('23.6월) 8.9% → ('25.10월) 30.4% 비고시 : ('23.6월) 33.3% → ('25.10월) 39.1%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0. 인사 조직 관련 제도 개선 '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증서 수여식'은 국세청장 명의로 사무관 임명장을 제작·수여하는 등 현행법과 어긋나고, 소수를 위한 행사이므로 폐지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	□ 해당 임명장은 수여식 행사 이벤트의 촬영 소품 목적으로 제작되어 사용된 것 ○ 개인별로 제작하여 교부하는 등 공적으로 행사한 임명장이 아님 ○ '25년 수여식 행사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행사 이벤트를 제외하였음 □ 수여식 행사는 승진자에게 승진에 대한 영예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사무관 승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데 큰 의미 ○ '25년에는 수여식 행사의 취지에 맞게 가족들과 동료들을 함께 초대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함 ○ 6급 이하 승진자를 위해 '25년부터 승진자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기념패와 축하선물 제공 ○ 직원 다수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심리치유 서비스, 힐링교실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 인사게시판·간담회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은 직원대표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직원 다수의 사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0. 인사 조직 관련 제도 개선 경제부처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할 것	□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 중** ○ 개방형 직위 운영 취지에 따라 내·외부 구분 없이 준법 정신과 전문성이 높은 인물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1. 청사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전국 임차청사 27곳에 높은 수준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임차청사를 줄여나가고 이른 시일 내에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구축할 것	□ 임차료 절감 및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노후청사의 신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3개의 청사를 준공하고 있음 * ('21년) 5개, ('22년) 3개, ('23년) 1개, ('24년) 1개, ('25년) 3개 ○ 전국 27개 임차청사 중 7개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5년에는 경기광주와 수성세무서의 신축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자체청사 신축을 조기에 개시하고, 차질 없는 신축 공정 진행으로 임차료 지출을 축소해 나가겠음 * 총 27개 임차청사 중 신축 추진 13개(설계 6개, 공사 1개, 부지확보 6개) * 신축예산 반영 후 준공 시까지 통상 6~7년 소요(설계, 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1. 청사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양주세무서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	□ 의정부세무서의 높은 **세정수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등을 고려하여 '26년 정기직제로 **양주지서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의정부세무서의 세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주세무(지)서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2.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발굴 노력 필요(서울청) 서울 지역 안내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장려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장려금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 도움 제공** ○ **(홍보) 취약계층 지원 기관**에 **제도 홍보** * **(고령자)** 서울지역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시니어 일자리센터 * **(특수직종)**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저소득층)** 서울시 쪽방상담소, 자활센터 등 ○ **(신청도움·안내) 미신청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신청 대리**를 **제공**하고 **자동신청 적극 안내** *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와 지방청·세무서에서 전화로 신청을 독려하고 신청 도움 제공 * **(자동신청)**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 자동신청 적극 안내 * **(신청안내)** 문자와 서면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 □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미신청자**에게 **안내**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이 **장려금 수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3.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인천청) 인천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함께 노력할 것	□ 인천청에서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결과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였음 ○ 또한,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간담회 및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 □ 앞으로도 특화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4. 납세인원 급증에 따른 조직 확대 검토 필요 (인천청) 인천지방국세청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므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직 확대를 검토할 것	□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전국 최상위로 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증원을 본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 또한, 늘어나는 세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위해 1급청 승격의 필요성 대두 ○ 1급청 승격 등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역 각계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진행 □ 인천·경기북부 지역의 위상과 높은 세정수요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조직 확대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본청 등에 건의 예정 ○ 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5. 인천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세정지원 필요 (인천청) 인천의 벤처기업 성장률이 높은 수준이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인천청에서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결과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였음 ○ 또한,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간담회 및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 □ 앞으로도 특화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6. 세무조사 참관제도 실적 개선 필요(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부진관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세무조사 참관을 적극 독려한 결과, 실시 건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 * (’23년) 2건 → (’24년) 14건 → (’25년) 24건 □ 앞으로도 ‘세무조사 참관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7.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필요(대전청) 대전·충청지역의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탄력적인 세금 부과·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 또한 각종 간담회[1]운영,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다양한 소통[2]을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에 힘쓰고 있음 1) 신고간담회, 지역상공회의소 간담회 2)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 앞으로도 지역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강화 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8. 과세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의 엄밀한 적용 필요(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6,800억원대에 달하고 불복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액 부과 시 세법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적용할 것	□ 과세 전 사전검증제도* 운영을 통해 과세처분을 신중히 하고, 과세 후에는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복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음 * 과세기준자문제도(법령해석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사실관계자문) □ 앞으로도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내용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등과오납환급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9. 미수령 환급금 축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대전청) 미수령환급금은 5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므로 대상자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신고단계부터 환급계좌 신고를 권장하고 미수령환급금 조회 서비스 확대[1],지속적 대민홍보[2]등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적극 축소하겠음 1) (기존)홈텍스에서 조회→(확대)민간채널(네이버비즈, 국민·기업·우리·신한은행)추가('25.6월~) 2) 「환급금 찾기 메뉴(QR코드)」를 소주병라벨(맑을린, 50만부인쇄 및 지역 시내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2,000여대)에 게시 □ 앞으로 환급금 발생사실이나 수령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미수령환급금 지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액 관리 필요(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액이 2022년 1,408억원에서 2023년 2,153억원으로 50%정도 증가하였고, 다른 지방청들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징수권 소멸시효는 독촉·압류·수색 등 집행 시 중단되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제기 시 소송기간 동안 정지됨 ○ 따라서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제기,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1) 압류건수 :('23년) 16,998건→('24년) 19,353건 2) 공매건수 :('23년) 533건→('24년) 590건 □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소득을 면밀히 파악하여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수색·소제기 등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부당하게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시효완성 :('23년) 2,153억원→('24년) 1,745억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1. 체납액 및 심판청구 불복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대전청) 체납액 및 심판청구 불복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징세기관으로서 만전을 기할것	□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있으며, ㅇ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불복 축소를 위해 과세 전(前) 단계에서 과세자문제도, 법률 자문활성화를 통해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불복 대응을 더욱 강화활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체납자 실태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응하겠음 ㅇ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수색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등 은닉재산을 철저히 징수하겠음 □ 앞으로 과세품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귀책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책임성을 제고하여 과세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효과성 제고 필요 (대전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력 확충, 홍보 강화 및 세무상담 시 기록을 관리할 것	□ 컨설팅 업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컨설팅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 상담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컨설팅 검토내용과 처리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명회 참여·산업단지 설명회 개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방문 홍보 등 □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업이 컨설팅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수집·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운영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3.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제출 의무 관련 홍보 강화 및 신고방법 안내 필요 (대전청)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대상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가 포함되어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홍보 부족 등에 따라 자료 제출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업자 수가 3,000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방법을 안내할 것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른 자료 수집은 월평균 9만 건이 수집되고 있으며 '22년 귀속 소득자료는 연간 94만 건이 수집되었고 제출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 불이익을 받은 대상은 3,000명(0.3%)에 불과함 ○ 영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소득자료 제출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등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미제출된 사업자단체 및 국가기관에는 매월 소득자료 기한 수 제출 안내를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제출 대상자가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신고방법을 안내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4.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비율은 78%로 전국 평균인 97% 대비 저조하므로 자동신청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하도록 우편·국민비서·문자메세지로 여러 차례 신청을 안내하고, 생활속 홍보*를 병행하여 미신청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음 * 지역방송 자막송출과 대중교통 전광판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 방송 등 비대면 홍보 □ 신청기간 막바지까지 미신청한 고령자에게는 신청도우미가 먼저 전화하여 신청을 도와드림 □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가 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안내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5.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직원들에 대한 예산성 과금 지급 실적, 탈세제보 보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체납자의 재산·소득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소송제기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출할 예정임 ○ 체납자 실태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등 은닉재산을 철저히 징수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6. 다단계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정지원방안 강구 필요(대전청) 이자소득세 신고 납기 연장 또는 법적 절차 유예 등 다단계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대금업 등록 없이 사인간에 약정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다만, 사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개별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 이자소득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7.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부산청)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체납액에 대하여 지원 형태의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학생 등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 채무자의 상환부담 및 체납발생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 (종전) 연체금 3%, 매월 1.2%(5개월간) → 최대 9% (현행) 연체금 2%, 매월 0.5%(6개월간) → 최대 5% ○ 저소득 청년층 채무자의 채무를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학자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였음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통합·조정해주는 제도 □ 앞으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제도 및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7.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부산청) 지방국세청 중 부산국세청이 국세 과오납 환급금이 높은 수준이며 그 중 불복환급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과세행정의 품질 제고 필요 및 부산청의 미수령 환급금을 국민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과세품질 향상 및 적법과세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미수령 환급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음 ○ 과세 전 단계에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 세무조사 심의팀 및 법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음 ○ 과세 이후 단계에서는 조세소송 경험이 많은 외부 조세전문 변호사 선임을 확대하고, 세목별 소송 전담팀 운영 등으로 적극 대응 ○ 아울러, 소송사례와 불복인용 사례 주기적 전파,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수령환급금 축소를 위해 우편, 모바일, 개별문자 및 지역 커피 프랜차이즈 및 주류 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대외홍보*를 강화하였음 * 컵홀더, 소주병 보조라벨에 '국세환급금 찾기' QR코드 삽입 □ 앞으로도 과세품질 제고를 통해 불복환급금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개별안내 강화 등을 통해 미수령환급금을 축소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7.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부산청) 노인세금교실 및 세금교육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하며,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세무취약 계층에 대한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따뜻한 세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고령층 대상 세금교실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상담실과 신규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생업에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각종 지역행사 등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더 많은 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8. 인사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부산청) 비연고 직원들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 비연고 직원들의 개별숙소 임차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전액 지원 불가하지만, ○ 신규 직원들에게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8. 인사조직 운영 관련 제도개선 (부산청) 통영지역의 세무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조사과를 신설하고, 창원 중부산세무서에 대한 착공 지연으로 인해 세금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착공할 것	□ 본청과 더불어 행안부 등 유관기관에 통영세무서 조사과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건의하겠음 ○ 행안부에 '24·'25년 정기직제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과 신설을 건의 중임 ○ 조선경기 호황 등 거제지역 세정수요 확대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부산세무서 신축공사는 사업비* 부족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 (사업비) 197억원 ⇒ 203억원 ○ '24.10月 기획재정부로부터 6.4억 추가 예산 확보하고 '25.9月 현재 구청사 철거 진행 중임 ○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신축 공정률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 공사착공('25.하반기) ⇒ 신축준공('27.하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9. 부산 지역내 탈세·탈루 관리감독 강화 필요(부산청) 부산지역의 부동산 탈세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부동산 거래 관련 지자체, 법원 등으로부터 자료수집 및 거래동향 파악 등 정보수집 강화하고, ○ 미성년자의 재산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거래과정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검증하여, ○ 편법증여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현황 정보수집 강화 및 미성년자 재산취득 정밀 검증으로 ○ 부동산 거래 탈세행위와 세금없는 부의 무상이전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0. 상속·증여 조사 시 일괄조회 제도의 엄격한 활용 필요(부산청) 상속·증여 조사 시 일괄조회를 지양하고 전체 재산 내역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파기할 것	□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금융일괄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 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즉시 파기하고 있음 □ 앞으로도 일괄조회 승인 시 사유와 필요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최소한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파기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1. 영세 납세자 대상 세정 지원활동 강화 필요 (부산청) 부울경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구역 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산불 등 자연재해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 중소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하였음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수출 중소기업 등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방법·혜택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 공제·감면 적용가능한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채널,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항·시청 전광판을 통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하였음 □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2. 서민상대 폭리 수취자 등 민생침해탈세 근절 대책 마련 필요(부산청) 국고계좌 출납 담당자 등의 횡령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며, 서민 상대 폭리 수취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 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장려금 심사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장려금 신청서를 직접 처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탈세제보, 등록면허세 자료 등 자체 정보 수집 및 검찰·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조*를 통해 매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기소자료(검찰), 수사자료(경찰), 피해신고자료(금감원) 등 정보 공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점검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음 □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탈세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3. 특별재난지역 납세유예 제도 홍보 강화 필요 (부산청) 호우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납세 유예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산불·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 내용에 대한 문자 및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는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였음 □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4. ㈜타이거월드 관련 과세처분(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은 ㈜타이거월드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의 오류를 시정할 것	□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사항은 개별 과세정보로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다만,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고충청구 등을 통해 민원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세무조사 진행 시 과세처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징수유예 및 납부유예제도 홍보 필요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징수유예 및 납부유예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음 □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과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6.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통계를 각각 작성하여, 조사대상 선정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조사 선정할 것	□ 국세청은 2024년 말부터 선정사유 입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대상 선정 과정**을 **관리·개선** ○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조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 ○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정기 승인**을 **엄격히 제한**하여 부실 선정을 차단 □ 앞으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 선정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과정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7.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내 낮은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MZ세대 대상 상담창구 운영 등 소통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기타 공공기관과 공유·소통할 것	□ **여성공무원**의 지방청 전입을 **확대**하고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있으며, **MZ세대**인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과 성장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 **소통활동**을 추진 중임 ○ (여성인력 활용) 여성관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 **적극 발탁** ■ **지방청 여성관리자 비중 확대** * (지방청 과장) '24년 2명(12.5%) → '25년 3명(18.8%) 6.3%p↑ * (지방청 팀장) '24년 13명(26.0%) → '25년 18명(36.0%) 10.0%p↑ ○ (소통활동 강화) **MZ세대**인 신규직원을 위한 새내기지원팀 운영, 워크숍 개최 등 **소통활동** 추진 ■ **MZ세대 위한 상담창구 운영 및 소통활동 현황** * (새내기지원팀 운영) 지방청 인사팀장 및 인사팀 직원으로 구성 - 5년 미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고충해소 및 인사제도 안내 등 개별 요구정보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 (신규직원 워크숍) 신규직원의 적응을 돕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첫걸음 동행 워크숍」 실시 - 승진, 전보, 순환보직 등 인사제도 안내와 선배직원의 경험담 및 노하우 전수, 소통법 강연 등 공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여성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지방청 **전입을 확대**하며, MZ세대 직원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과 다양한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7.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대구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불복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국선대리인의 실적 제고를 위해 실비지원 금액을 현실화 할 것	□ **2025년부터**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 사건을 지원하는 경우 1건당 15만원의 기본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면 **추가**로 **15만원**의 수당을 지급중 □ 국선대리인 **기본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본청에서 추진중임 ○ 앞으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수당 현실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7.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대구청) 대구지역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높은 수준이므로 대구청 차원의 외부감사 임명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감사관 주관 **청렴 교육** 실시 ○ 비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5년 상반기에 감사관이 **직접** 관내 14개 세무서 및 4개 지서를 방문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도 지방청 및 14개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음 ○ 조직내 불합리한 요소·관행에 대해 과장 이상 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음 □ **적발위주**의 감사 실시 ○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서 순회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관서장**의 **주기적 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음 ○ 또한, **적발 위주**의 복무감사를 계속 실시하여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7.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대구청) 대구청의 기숙사가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 대구청은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기숙사가 늘어나면서 매년 직원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세무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김천세무서 및 안동세무서) 기숙사 내 LPG 난방시설을 LNG(도시가스) 난방 시설로 변경하였음 ○ (구미세무서) 노후된 화장실의 부식된 나무 소재 문과 바닥타일 등을 교체하였음 ○ (영덕세무서) 노후된 화장실의 부식된 타일 및 마감재, 파손된 변기·세면대 등을 교체하였음 □ 노후 기숙사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으로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8. 간병비 세액공제 포함 방안 검토 필요(대구청) 높아지는 소득 대비 간병비율을 고려하여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납세자가 부담하는 고액의 간병비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간병비를 성격이 유사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건의**하였음 □ 앞으로도 간병비 세액공제 등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9. **체납액 정리보류 금액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내 체납액 정리보류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원 증가와 관련하여 대응책을 수립할 것	□ 정리보류는 생활실태 파악 및 재산조사 실시 후, 무재산인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 정리보류 후에도 **분기마다** 재산·소득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있음 □ 고액체납자의 재산·소득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 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과 **재산 추적조사**로 **엄정 대응**하고 있음 □ 앞으로도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금징수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추적조사, 현장수색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0.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대구청) 학자금 상환 체납액 관련 유연한 상환유예제도 운영 등 체납관리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	□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시 ○ (상환유예 안내) 상환유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미신청자에게 직접 전화로 개별 안내하여 **신청도움 제공** □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0.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대구청)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적극 지원 등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	□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전통시장·다문화센터·노인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자체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시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상담실, 세금교실, 지역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음 □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0.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대구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장려금 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지자체·지역기업 등과 **협업**하여 장려금 제도 및 신청방법 **홍보***, **자동신청제도** 적극 활용하여 **신청 누락 예방** * 가족센터·박람회 등 현장 홍보, 청년센터SNS·도시가스 고지서·주류병 보조라벨에 홍보문구 게시, 시니어클럽·장애인·노인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공문 발송 등 □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1. 대구 수성세무서의 조속한 청사 이전 필요(대구청) 높은 임차료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대구 수성세무서를 조속히 이전할 것	□ 대구 수성세무서는 현재 임차료 동결 및 신고창구 무상 확보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캠코**와 **복합청사 신축**을 **진행 중**임 ○ 최초 계약('18.03.01) 후 계약 갱신('20.1.1.)시 5% 인상된 **임대료**로 현재까지 **동결**하였으며, '21.6.1. 165㎡ 공간 **무상 확보**하여 신고창구로 이용 중임 ○ 수성세무서 신축사업은 기금개발사업으로 '24.12월 기금 예산안 국회 승인 후 '25년 설계비 확보 등 캠코와 복합청사 **신축 협업 진행 중**임 □ 대구 수성세무서의 임차료 절감을 위해 조속한 청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캠코와 **협업**하여 전 공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2. 세무조사 시 일괄조회 제도의 엄격한 활용 필요 (대구청) 납세자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괄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각별히 관리 감독할 것	□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상속재산 확인과 편법 증여 검증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등의 일부 조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실시** ○ 일괄조회에 대한 지방청장 승인 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꼼꼼히 확인** ○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강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3.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 개선 필요(대구청) 대구지역 내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소비자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신고시 소비자가 **직접신고**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제도와 **증빙** 제출 예시 등을 적극 **홍보*** 하여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공공전광판 등 홍보문구 표출 * 지하철 역사 포스터 게시 * 홍보 리플릿 등 배부 □ 앞으로도 그간 추진해 온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4. 대구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법인세 감면 필요(대구청) 대구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구경북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해 대구청 **자체 적극행정** 추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안내** 및 **컨설팅** 진행 ○ 2차례의 화상 **온라인 설명회** 실시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 앞으로도 법인세 공제·감면 관련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5. 처리사건이 없는 국선대리인의 연임에 대한 대책 마련(광주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의 일환인 국선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 및 처리사건이 없는 국선대리인의 연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납세자 선택제[1]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된 국선대리인이 이미 국선대리인 업무수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활동관서'[2] 순차 배정방식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 지방청 단위 광역풀에서 필요한 국선대리인을 선택('24.6.1. 시행) 2) 납세자와 면담이 용이한 국선대리인의 '활동관서'파악·관리 □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에 제한이 있어 지원대상 건수가 많지 않으나, 지원대상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국선대리인의 법령검토 및 자문을 받아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복청구 시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6.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광주청) 광주청의 5년 이내 근무자 중에서 8명의 퇴직자가 발생(올해 9월 기준)한 사유에 대한 질의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 권고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정기전보 시 전보일로부터 3개월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예정 직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관서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및 여성 공무원, 임신·출산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승인하고 있으며, ○ 결원 예상인원을 수시로 파악하여 복직자 및 신규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부족에 대한 걱정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개선사항[1],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인상[2] 및 지급기간 확대[3] 등 근무환경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1)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 (기존) 최대 1년 → (개정)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 2) (기존) 월봉급액 80%(상한 150만 원) → (개정) 육아휴직 시작인~3개월 :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 월봉급액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상 : 월봉급액 80%(상한 160만 원) 3) (기존) 최대 12개월 → (신설)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최대 18개월 □ 앞으로는 육아 공무원의 현장 의견 수렴 및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7. 국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등을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광주청) 국산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또는 위스키가 지역특산주로 포함되지 않아 주세 경감 및 온라인 판매 등이 불가하므로, 국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등을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특산주 주종을 결정하는 것은 조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맥주의 경우 기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통해 주세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위스키의 경우 '25.2.28.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으로 포함되었음 □ 앞으로도 전통주 육성 및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주류제조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지자체 및 주류면허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8. 지속적으로 낮은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광주청) 고질적으로 낮은 조직성과평가를 보이고 있어 직원 사기문제로 연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직성과 평가 항목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보고를 통하여 부진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 성과평가 순위는 '24년간[1] 3위, '25년 상반기[2] 4위를 달성하여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 '22년 (7위) → '23년 (7위) → '24년 (3위) 2) '23.상 (6위) → '24.상 (6위) → '25.상 (4위) □ 앞으로도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9.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탄력적 집행 검토 (광주청) 통계적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 비율은 낮고 생계형 체납자들의 징수 비율은 높은데 생계형 체납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징수의 탄력적 집행을 검토할 것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소액금융재산·급여채권 등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소액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24.2월)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채권, 거래처매출채권 등 압류를 유예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재산은 매각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를 집행하고 있음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제105조) ○ 또한, 5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을 제외하고 있음 * 신용정보기관에서는 제공 받은 체납자료를 신용도 평가 등에 활용 □ 앞으로도 자금부담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체납액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겠음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시 체납 후 발생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0.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광주청) 타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 지역의 근로장려세제 지급비율이 높고, 올해 대상자도 확대될 계획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의 신청비중이 높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에 집중하였음 ○ 수급 안내대상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60세 이상은 서면안내문과 문자로 신청안내하고,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카카오알림톡으로 안내함 - 시니어클럽 설명회에 참여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독려하고, 활자가 큰 ARS신청흐름도를 제작하여 광주청내 37개 시니어클럽에 발송 및 적극 게시하도록 함 - 안내대상 외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채널*로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음 * 지역축제(함평나비·고창수박축제), 시니어클럽 설명회, 무등산탁주리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기관 협업 에코백 및 수어포함 동영상 제작·배포,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전주시버스승강장, 전통시장, 주택관리사 오이톡 등 ○ 방문 또는 전화 신청대리*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도움 창구와 세미래 장려금 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함 - 신청대상자가 사전 동의하고 다음 2년내 신청요건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신청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본인 동의하에 신청을 도와주고 있음 * 직원 및 상담원이 고령자.장애인의 동의를 구하고 장려금 신청 처리('20년부터 시행) □ 또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에 대해 본청에 적극 건의하였고 현재 일부 반영되고 있음 □ 앞으로도 미신청 가구를 축소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함은 물론 장려금 수급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1. 광주전남지역의 국세수입 목표 설정시 한국은행과 공조(광주청) 에너지 공기업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의 부가가치세 비중이 매우 치중되어 있으므로, 국세수입 목표 설정시 한국은행과 공조할 것	□ 지방청별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 광주·전남지역의 세입여건이 적극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상황 및 시장동향·우발요인 등을 본청과 즉시 공유하고 있음 □ 세입 징수기관으로서 필요하거나 공유할 부분은 원활히 소통하도록 노력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2.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필요(광주청) 세수결손에 불구하고 체납 정리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	□ 고액체납자의 재산·소득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였음 * 압류건수('24년) : 14,042건(전년대비 605건↑), 공매건수('24년) : 595건(전년대비 67건↑) ○ 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해 수색, 소제기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3. 탈세제보의 활용율 제고 방안 마련(광주청) 탈세제보 처리건수가 저조하므로, 탈세제보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접수된 탈세제보서 중 구체적 증빙이 있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제보내용이나 증빙이 부정확한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고 있음 * 추후 세무조사나 탈세혐의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과세자료로 등록하여 관리 □ 탈세제보 중에는 탈루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 및 탈세내용이 부분적이거나 구체성 없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음 ○ 이에 인적사항이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1차로 보완을 요청하고, 탈세 내용이 부분적이거나 구체성이 낮은 경우 2차로 1회 이상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적극적 보완 접수절차를 운영하여 탈세제보가 과세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탈세제보서 작성이나 증빙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보담당자의 1:1 안내를 통해 미비한 사안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서·지방청 제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 □ 더불어, 지역축제·기아챔피언스필드 등에서 객관적 탈세증빙이 제출되도록 홍보물을 배부하여 과세활용이 높은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과세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탈세제보 접수부터 증빙이 미비하거나 탈세내용이 추상적인 경우 보완가능 여부를 재차 검토하여 안내하고 ○ 세무서·지방청 제보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제보담당자와의 1:1 안내를 통해 증빙 제출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으며, ○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과세활용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4. 지방국세청에 대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산업 확대 (광주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수도권보다는 납세환경이 취약한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지방에 수요가 더 많을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을 확대할 것	□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4년부터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음 □ 납세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원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본청에 적극 요청하여 '25년에는 6개(직전 2개) 세무서*로 확대하여 신고 안내를 지원하고 있음 * 광산, 서광주, 전주, 북전주, 익산, 목포 각 1명 ○ 아울러 부족한 신고지원 인력 확보를 위해 관내 세무학 전공 대학생*을 신고 도우미로 모집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에 활용하고 있음 * 2개교 : 전주대, 광주대('25년 56명) □ 앞으로도 납세환경이 취약한 지방에 위탁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청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이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5. 파산 및 회생신청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광주청) 호남지역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인데, 법인파산과 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 파산 및 회생기업에 대해 세정지원 계획 수립 후 회생신청 법인과의 거래처를 파악하여 지원내용을 개별 안내하였음 ○ 또한, 세무서에 세정지원대상자 명단을 시달하여 납기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적극 세정지원하였음 □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6. 증가하는 악성·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광주청) 악성·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23년부터 일상회복에 맞춰 체납징수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소제기, 범칙처분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고액체납 정리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음 □ 앞으로도 소득·재산 분석을 통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실시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 특히 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교한 기획분석과 엄정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징수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음

관 세 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 관세청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직원의 마약범죄 가담여부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등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마약류 밀반입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마약류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25.1월) ○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개정 □ 특정직원에 의해 단속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휴대품 검사직원 근무구역 랜덤배정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밀리미터파 검색기·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보강함 ○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24년 13대를 전국 주요 공항만에 추가 배치·운용('25.8월 기준 총 16대) **2. 향후 추진계획** □ 통관검사 강화, 국제공조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사전파악, 취약분야 등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등 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최근 19세 이하의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물뽕(GHB) 등 마약에 대한 2023년 단속건수는 2021년 대비 350건 감소하여 마약밀반입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마약 밀반입 단속을 강화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❶검사와 선별 강화, ❷단속 인프라 확충, ❸국제공조 확대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여행자 신변 검색체계 강화*, 우범화물의 개장검사와 파괴검사 확대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검사 강화 * 우범항공편 여행자 입국심사전 전수 검사('25.1.~) ○ 마약단속 관계기관이 보유한 고위험자 정보를 수집*하여 우범자 선별 등 정보분석에 활용 * '25.1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사범 정보 입수, 향후 법무부·국방부·식약처 등 확대 추진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성능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석기 등 마약류 검사장비를 지속 확충, 단속 인프라를 개선 * (밀리미터파) 현재16대 → '25년말 +2 18대 / (라만분광기) 현재 19대 → '25년말 +4 23대 / (이온스캐너) 현재99대 → '25년말 +8 107대 / (파괴검사용 글러브박스) 현재1대 → '25년말 +6 7대 ○ 글로벌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HSI(美국토안보수사국)·DEA(美마약단속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 (현황) 양자 태국·베트남·네덜란드·말련·미국·독일 6개국, 다자 WCO RILO 아태지역·아세안, EU부패방지청 **2.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은 상기 조치사항을 포함, 마약 차단 최우선 정책을 지속 유지하여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마약사범 정보입수를 확대*(現대검·외교부·법무부 → 확대 국방부·식약처)하여 우범 여행자·화물 분석에 활용 * (국방부) 마약범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자 등 ○ 고성능 검사장비* 확충,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대 * 이온스캐너(+14대), 라만분광기(+5대), 밀리미터파(+11대) 등 '26년 예산 확보 ** AI 융합 영상관리시스템(X-Sync), AI 기반 우편 위험 선별모델 개발 등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 마약류 불법 거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등
관세청은 해외 불법마약류판매사이트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차단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1. 시정·처리결과** □ 마약류 밀수사건 중 인터넷 판매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국내 접속차단* * (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하는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할 것</td><td>≪ 방통위 접속차단 요청내역 ≫
<table><tr><th>구 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h>25.8월</th></tr><tr><td>차단요청</td><td>17</td><td>7</td><td>8</td><td>27</td><td>65</td></tr></table>
2. 향후 추진계획
□ 마약류 불법 거래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는 해당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조치
○ 차단 요청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가능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접속 가능 시 재 차단 요청 (분기별)</td></tr>
<tr><td>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통관인력 및 예산은 여행자 반입 마약 단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td><td>1. 시정・처리결과
□ 마약류 등 고위험물품 검사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 (인력 증원) 특송화물 인력 ’24년 26명, ’25년 18명 증원
- 마약 등 고위험 물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해상 특송화물 전담인력 증원*
* ’24년 항공(2명), 해상(24명) / ’25년 : 항공(17명), 해상(1명)
○ (예산 증액) ’25년 예산 6,582백만원(+1,143백만원 증액)
-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노후장비교체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송화물 통관지원 예산 증액
2. 향후 추진계획
□ 특송화물 인력·예산 지속 확충 추진
○ (인력 증원) ’26년 특송화물 전담인력 138명 증원 요청
○ (예산 증액) ’26년 예산 12,022백만원 확보 (+5,440백만원 증액)</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제 우편검사센터 구축 등을 위해 '26년 특송화물 통관지원 예산 12,022백만원 정부안 제출
관세청 내부의 마약류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청주국제공항 마약탐지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인력충원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탐지견 훈련용 마약류의 관리 방법 개선 ○ (보관) 마약 종류별로 각각 격리된 공간의 이중금고*안에 보관하고, 출입문을 3중시건하여 보관 관리를 강화하였음 * 전자보안(지문인식) 장치가 있는 최신식 금고로 교체('25.2월) ○ (입출고) 훈련용 마약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가자가 직접 입출고하는 등 입출고 관리 강화 □ 관세청은 청주세관('25.2월) 및 속초세관('25.7월)에 탐지견을 배치해 지방 공항만 세관의 마약탐지 공백에 대응 **2. 향후 추진계획** □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은 전담 직원이 반·출입을 담당하고 훈련용 마약류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증가하는 마약 탐지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운용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증원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2. 대마제품의 밀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대마성분이 들어간 과자, 젤리 등 식품들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가공형태의 대마제품 암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마제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마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철	**1. 시정·처리결과** □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대마제품 내역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임 * 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제품명 또는 성분명 조회 □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이버 블로그(카드뉴스), 유튜브(영상) 등을 활용하여 '대마 제품 반입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 중* * '24.9월 이후 카드뉴스 5건, 유튜브 영상 메세지 1건 등 제작·홍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저하게 안내하여 유의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 무지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대마 함유 제품 구입·반입 행위방지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속 홍보 □ 대마제품 등의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
3. 마약탐지견 확대와 마약 레드팀 운영 필요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탐지견을 늘리거나 국내 유입 마약의 주요 출발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합동으로 마약 레드팀(감독관)을 운영하여 마약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24년 9개 세관(36두) → '25년 11개 세관*(38두)로 탐지견 확대, 탐지조사요원 증원** *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대구,광주,제주,추가청주 (4개 항만)인천,평택,군산,추가속초 ** 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신규직원 8명 교육중(11월 현장 배치 예정) □ 주요 마약 출발국인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공조 강화 ○ 동남아發 주요 출발국 상위 3개국과 한국向 마약우범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태국) '25.3.~5월, 합동단속작전(Op. SIREN) 실시, 마약 출발 최상위 국가(베트남) '25.10.~11월, 합동단속작전(Op. Twin Guardian) 실시(예정) (말레이시아) '25.9.~10월, 합동작전(Op. Dragon MK) 진행중 ○ 합동작전은 상호직원 현지 파견, 우범대상 합동분석·선별·검사하는 체계로 레드팀 기능을 보완* 수행 * 의도적으로 약점을 공격하는 레드팀 운용은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 각 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상호 약점을 점검·보완하는 형태로 운용 2. 향후 추진계획 □ 탐지견 보유 두수 현행 102두(현장운용 38두, 센터보유 64두) → '28년까지 150두로 확대, 견사·교육관 등 시설 증축 예정 □ 동남아 국가와 국제공조 확대 및 합동단속 효과성 제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합동작전 지속 실시 및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마약 우범 국가와 신규 확대 추진 ○ 향후, 동남아 각 국가별로 마약밀수 우범경로를 정밀분석하는 등 합동작전 효과성 제고
4. 통관 관련 수사 개입 최소화 필요 관세청 간부들이 수사 중인 경찰에 접근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행위를 공적협의로 두둔하는 관세청장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경찰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하려는 행위 등은 당연히 안된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간부들이 참여하는 관세청 확대간부회의 시 공직기강 교육 등을 실시함('25.6~7월) **2. 향후 추진계획** □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공직가치 교육을 강화할 것임
5. 통관인력 증원 필요 2023년 통관건수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간 세관 인력 증가율은 2배 미만으로 통관 인력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통관행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 증원 등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특송화물 전담 인력 증원** ○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유지를 위하여 '24년 26명, '25년 18명 증원 완료 * '24년 : 인천공항 2명, 인천세관 2명, 평택세관 20명, 군산세관 2명, ** '25년 : 인천공항 17명, 용당세관 1명 **2. 향후 추진계획** □ **특송화물 인력 지속 확충 추진** ○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6년 138명 증원(해상 104명, 항공 34명) 요청
6. 첨단 산업기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입관리 강화 차원	**1. 시정·처리결과** □ 첨단 산업기술 등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 ○ (**방산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에서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산업기술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위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범위에 포함('24.12.) ○ (**산업기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에 추가 추진* * '25. 2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고 개별법 담당부처인 산업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산업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됨 **2. 향후 추진계획** □ 관세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특허청과 협의추진 ○ (**관계기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관 관련 부처의와 관세법 개정을 위한 협의 지속추진
7. 오픈마켓 서면실태 조사 관련 관리책임 전가 등 유의 필요 관세청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서면실태조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서면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조사방식 개선 조치('25.6월)** ○ 오픈마켓 실태조사에 따른 과도한 관리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사 항목을 축소·조정하고, 전년도 이행 완료한 조사 항목의 자료 제출도 생략 ○ 조사방식도 실제 부정수입물품 유통이 적발된 내용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와 관련한 조사 항목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 서면실태조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 실시** ○ 국내외 9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관한 1:1 사전 설명회 실시('25.3.12.~3.13.)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업체 간담회('25.4.30.)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특송화물을 통한 위험물 반입 방지 필요 특송화물이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사회안전 유해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장검사를 효율적으로 하여 사회안전 유해물품 반입을 방지하고, AI 기반 우범 선별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효율적 개장검사를 위해 X-ray 검색 및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개인이 수입하는 특송화물에 대해 AI 선별모델 적용 ○ 특송화물은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며, 정보분석 등으로 선별한 마약 등 고위험 화물을 중심으로 개장검사 시행 ○ '24년 개인이 수입하는 특송화물에 대해 마약,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우범화물을 선별하는 AI 기반 선별 모델사업을 추진, '25년부터 운영 중 **2. 향후 추진계획** □ 위험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추진 및 특송화물 목록통관 대상품목에 대한 AI 기반 선별모델 개발 중 ○ 전용 플랫폼 구축시('26.) 공급망이 보유한 거래정보(주문·결제 등)를 입수·활용*하여 고위험 물품 중심으로 선별 강화 * 전자상거래업체가 보유한 구매자의 거래정보(주문·결제·상품 등)를 사전제공 받아 우범 판매자 또는 과거 적발 물품 등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관리 가능 ○ 특송화물 목록통관 대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을 선별하는 AI 기반 선별모델 개발 중으로 '26년부터 적용 예정
9. 노후화된 'e-SEAL'의 최신화 필요 밀수위험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e-SEAL'이 노후화 되고 있으므로 신규장비 신속히 도입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신형 전자봉인(e-Seal) 구입 ○ '24년 책정된 예산으로 신형장비 308대를 도입하여 주요 세관에 배치 완료하였음('24.12.6) **2. 향후 추진계획** □ 우범화물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예산 확보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전자봉인 고장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추가 구매 예정 - '25년 도입분(225개)은 구매계약이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인수 후 일선 세관에 배치 예정임
10. 담배의 니코틴 성분 속인 불법업자 처벌 강화 필요 담배 내부의 니코틴 성분을 합성니코틴등으로 속여 탈세한 불법업자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은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❶니코틴 종류·함량 신고, ❷증빙서류 징구, ❸간이통관 배제, ❹성분분석, ❺서류진위 확인 등 엄격한 수입통관 절차를 적용 ❶ 니코틴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❷ 거래계약서, 수출국 내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제조공장 등록증,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성분명세서 ❸ 특송화물·우편물 반입 니코틴 용액에 대해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❹ 천연니코틴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리전 분석 및 최근 전신마취제 등 마약성분 함유 위험이 있는 니코틴 용액 선별 분석 강화 ❺ 중국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공인기관 홈페이지에서 진위 확인 □ 니코틴 불법 수입업체 정보수집 강화 ○ (**정보수집**)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을 불법으로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 (**단속활동**) 전자담배 니코틴 성분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저가신고한 업체 적발시 철저히 단속 **2. 향후 추진계획** □ 니코틴 성분을 속인 세금탈루 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한 엄격한 통관관리를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액상 니코틴 밀수 또는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실시 ○ (**밀수입**) 액상 니코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밀수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실시 ○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에 대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탈루한 세액추징 ※ 세계 각국은 검사율, 적발률, 선별기준 등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외 공표 시 검사·선별 정보 등을 이용하여 안보위해물품, 불법물품 반입 시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 등 대외 유출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개인통관부호 도용 불법 해외직구에 명의대여행위죄 적용 필요 수입품 통관 시 번호 도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통관번호를도용하여 해외직구하는 경우 명의대여행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	□ 관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처벌 확대 ○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외직구 물품을 탁송품 또는 우편으로 수입한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행위죄로 처벌(관세법 제275조의3, '25.1.1. 시행) □ 명의도용 및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 실시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용품 분산 밀수 등의 해외직구 악용범죄에 대한 특별단속('25.6.16.~8.22.) ※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타인 명의를 이용·도용한 사건 16건, 46억원 적발
12 식용견 금지 잔여견의 마약탐지견 활용방안 검토 필요 식용견 금지로 인한 잔여견 중 일부를 탐지견 등 특수목적견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식용 목적의 잔여견 중 일부에 대한 특수목적견 활용 검토 ○ 탐지견 양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자견 훈련*부터 대담성·탐지과정·반응표현·소유욕 등 탐지견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이 요구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자견훈련) 생후 4개월~12개월령(9개월간) 탐지견으로서의 기본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6개월령·9개월령 점검과 12개월령 최종 평가를 통해 합격한 견을 선발하여 양성훈련에 투입함 ○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된 잔여견은 탐지견 양성의 전문 훈련 없이 단순 사육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탐지견으로 활용이 적합하지 않음 **2. 향후 추진계획** □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된 견을 특수목적견인 탐지견으로 전환하여 탐지견으로 양성할 계획은 없음
13. 관세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 등 대책 마련 필요 관세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장기간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의 제도개선 시기에 맞추어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나 기타 대책을 수립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기업 관리 강화 대책 수립·시행 ○ (납세편의 제외) 월별 납부* 승인 취소에 더하여 담보제공** 생략 중지 추가 도입('25.7월.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관세법 제9조제3항) ** 납세자가 관세 미납 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제공토록 하는 금전 등 ○ (실무 가이드라인) 납세편의 제외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전국세관 활용 통보 ('25.6월) * 제출지연·제출거부 등 조치(처분) 기준, 단계별·제재별 프로세스 등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제도 도입·시행('25.9월 시행) ○ (제도개요) 가격(수입)신고 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화. 연 1회(반복 수입) 제출 및 30일 내 사후 제출 허용 *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 5억 원 이상 기업(AEO, ACVA 참여시 제외)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제출대상) 8개 분야* 과세가격 결정자료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2. 향후 추진계획** □ 제재방안과 제출된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 조세일실 방지
14 관세청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높은 관세청 퇴직자 취업비율 및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시정하는 한편,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 순방시에도 세관 등의 관리 감독 강화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유니패스') 운영·유지관리의 공공성·투명성 회복과 전문성·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니패스 운영 전담 법정법인『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24.7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 대통령 및 그 수행원의 해외 순방 시 휴대품 통관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중임 ○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휴대품 통관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성남세관 소속)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 **2. 향후 추진계획**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26.1월) □ 대통령 순방 시 근무하는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관세법 등 관련 법규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대통령경호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의전과 경호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효율적인 관세국경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15 온라인 플랫폼 내 유해물품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1. 시정·처리결과** □ 효율적인 위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위해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각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이 차단조치를 했지만, 각 플랫폼에 유해물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으므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유해물질을 판정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전달하면 관세청이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td><td>물품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여 직구물품 안전성 조사 정보 공유(5회)
* (주관) 공정위, (참여) 환경부,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등
□ 소관 부처에서 안전성 조사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경우「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조치
○ 환경부 등에서 제공한 금속장신구 등 378개 물품 정보를 검사선별에 활용 중('24～'25.8월)
2.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위해물품 차단 노력 지속</td></tr>
<tr><td>16. 세관별 인력배치 개선 필요
2024년에 특송화물 전담인력이 20명 증원된 평택항 마약 단속 실적은 저조한 반면, 증원이 없었던 부산항은 마약단속 실적이 전년대비 2.7배 늘어났는데, 이는 세관별로 관세청 직원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배치를 개선할 것</td><td>1. 시정·처리결과
□ 마약 적발 건수가 높은 세관에 특송화물 전담인력 증원
○ 공항만별 마약 밀반입 현황은 중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 컨테이너 수입·환적화물 적발 실적이 포함되어 부산항 적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은 주로 항공화물로 이루어지며 특송인력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세관에 배치되어 있음
- 마약류 검사 강화를 위해 '25년 인천공항에 17명 증원
< 특송통관 전담인력 현황 ('25.8월 기준) >
(단위 : 명)
<table>
<tr><th>세관명</th><th>인천공항</th><th>김포공항</th><th>인천</th><th>평택</th><th>용당</th><th>군산</th><th>합계</th></tr>
<tr><td>현 원</td><td>204</td><td>3</td><td>49</td><td>46</td><td>7</td><td>12</td><td>321</td></tr>
</table>
2. 향후 추진계획</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특송화물 인력 지속 확충 추진** ○ '26년 특송화물 전담인력 138명 증원 요청
17. 해외직구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24년 9월 기준 관세청이 소관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위해 직구제품 정보 건수가 96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관세청과 타 기관 간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해외직구 문제를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각 관계부처 전문가의 협업 검사 인력을 확대하며, 소관법령별 해외직구 위해물품의 반입차단 대상 지정 및 관세청의 차단 절차 법제화를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위해물품 반입 차단** ○ 해외 위해물품관리 실무협의체(공정위 주관,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서울시 등 참여)를 통해 안전성 조사정보 공유(5회) 및 위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시 적극 협조 **2. 향후 추진계획** □ **위해 직구 제품 유해성분 분석 지속 및 통관검사 강화** ○ 관련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식약처, 국표원 등 관계부처에서 위해물품 반입 차단 요청시 선별·개장검사 등 적극 협조
18.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 재검토 필요 입국장 인도장 공항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우 관세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반대하고 있으므로,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연장 ○ 인도장 운영요건인 반출입전산시스템 부재로 시스템 개발 완료시까지 시범운영 연장('25.1~) ○ 입국장 인도장 시스템 오류 개선 진행 중 (~'25년 말) □ 시범운영(부산항) 결과('23.4월~'25.7월) ○ 〔참여업체〕 주요 대기업 3사 ○ 〔인도실적〕 일 평균 인도건수는 약 84건 인도금액 약 6천불 주요품목은 화장품, 가방, 식품류 순 ○ 〔인도율〕 연 평균 약 7.5%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실시) 입국장 인도장 전방위적 효과 분석 및 다양한 찬반의견*을 고려한 운영방안** 도출 * (찬성)국민편의 제고, (반대) 중소면세점 피해, 마약등 세관 검사 지장, 시설 권자 반대, 입국장인도장 운영비용 부담 등 ** 설치 장소, 인도 품목, 입국장면세점 운영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방안 등
19. 세관의 감시 역량 강화 필요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서 감시정과 CCTV 등 기존 장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밀수 적발을 역량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드론의 운영이 곧 종료될 예정인데, 마약 및 위험물 밀반입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인적·물적역량을 강화하여 고도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 ○ (인적) 항만세관에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기획감시팀을 활성화하고, 자체 정보분석관 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간 정보협력 강화 - 주요 공·항만세관에 대테러 등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마약 및 위험물 반입을 차단역량을 제고 - X-ray 영상판독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검색 노하우를 전파 및 안전위해물품 적발사례 공유 등 판독능력 제고 - 항만세관 운용 검색장비에 대한 장비운용 숙달교육 병행 ○ (물적) 새로운 밀수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장비 도입·운영 - 마약 은닉 장소로 악용되는 선박의 선저 정밀검색을 위해 '24.11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을 도입·운영(주 2.5회 검색) **2. 향후 추진계획** □ 정보분석을 통한 선별역량을 높이고, 효과적인 물품 검색을 위한 적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 검토하겠음
20. 드론 성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시정·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드론의 운용은 항만감시를 위한 필수 장비로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므로 드론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지원 R&D를 투입하거나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항만 감시를 위해 드론 성능을 제고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산 드론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하여 도입을 검토 중** ○ 과거 도입 실패 사유*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산 드론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음 * 드론 장비 자체 결함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활용도 저조 ○ 드론 도입기관 인터뷰, 드론산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 기술 능력을 지속 확인하고 있는 중임 **2. 향후 추진계획** □ 타기관 드론 운용사례 및 국내 드론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항만감시에 적합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을 재검토하겠음
21.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의 세관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대통령 해외순방 시 대통령 수행원의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세관신고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대통령 및 그 수행원의 해외 순방 시 휴대품 통관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중임 ○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휴대품 통관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성남세관 소속)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 ○ 고가 휴대품의 경우, 재반입 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출국 시 자율적으로 반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 사항을 포함한 출국신고 안내를 서울공항에 배너 등으로 홍보 **2. 향후 추진계획** □ 대통령 순방 시 근무하는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관세법 등 관련 법규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대통령경호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의전과 경호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효율적인 관세국경감시가 이루어질 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있도록 하겠음
22. 언더밸류를 활용한 관세 탈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직구 시 실제 가격보다 낮추어 과세가격을 조작하는 언더밸류 수법으로 관세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의 판매자가 언더밸류를 할 경우 세관에서 소비자에게 소명요청을 하거나 소비자가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직구 저가신고 해외판매자·구매대행자 처분 ○ 해외판매자가 소비자 몰래 언더밸류로 신고한 경우 해외 판매자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음 *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 제269조 제4항(부정감면),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 또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에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도 구매대행업자를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음 * 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1호 ○ 소비자들은 해외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에게 이미 관세 등 세금을 지불한 것으로 소비자가 관세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이 아님
23. 산업기술 유출 피해 관련 수출입관리 강화 필요 최근 산업기술, 방산기술,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입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세청의 수출입 통제 범위에 산업기술, 방산기술, 영업비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첨단 산업기술 등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 ○ (**방산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범위에 포함('24.12.) ○ (**산업기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에 추가 추진* * '25. 2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고 개별법 담당부처인 산업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산업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됨 **2. 향후 추진계획**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td><td>□ 관세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특허청과 협의추진
○ (관계기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관 관련 부처의와 관세법 개정을 위한 협의 지속추진</td></tr>
<tr><td>24. 북한산 물품의 불법반입 단속 강화
북한산 물품이 국내 온라인 유통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제재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물품의 불법반입 단속을 강화할 것</td><td>1. 시정·처리결과
□ 북한산 물품의 불법 반입 등에 대한 단속강화
○ (단속강화) 북한산 물품(그림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실시
* 북한산 서적 16권 등 북한물품 47점 불법휴대반입자 적발('25.6월)
○ (밀수근절) 북한산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반입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
2.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강화 및 단속철처
○ (정보입수) 외교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북한산 물품 불법반입 우범 정보교류 강화
○ (단속철저) 북한산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밀수입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td></tr>
<tr><td>25.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방식 개선 필요
전국 지정장치장 57개 중 화물관리인이 지정된 28개의 지정장치장 모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업무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외부 공시를 강화할 것</td><td>□ 화물관리인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세청·세관 홈페이지에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및 유관기관에 홍보
<table><tr><th>기준</th><th>기존</th><th>완화</th></tr><tr><td>① 자본금</td><td>50억원 이상</td><td>10억원 이상</td></tr><tr><td>② 시설·장비</td><td>최대 30대</td><td>최대 10대</td></tr><tr><td>③ 유사사업경력</td><td>10년(20건) 이상</td><td>5년(10건) 이상</td></tr><tr><td>④ AEO</td><td>5점</td><td>0점(단, AEO 보유시 가산점 1점)</td></tr></table></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CIQ 인력 충원 필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CIQ 인력이 부족하여 공항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김해공항세관은 인력 증원 요청('25.4.)을 하고, 행안부·기재부 검토 후 10명 증원이 결정('25.7)됨 ○ 해당안이 국회로 제출되어 심사 예정임 **2. 향후 추진계획** □ 증원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력 충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음
27. 특송물량 비용 부담 제도 개선 필요 중국발 특송물량이 2019년 4,300만 건에서 2023년 1억 3,100만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관 인력이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아 세관 직원의 검사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세관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책임 의무를 부과하여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거나 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특송화물 전담인력 지속적 증원** ○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유지를 위하여 '24년 26명, '25년 18명 증원 완료 * '24년 : 인천공항 2명, 인천세관 2명, 평택세관 20명, 군산세관 2명, ** '25년 : 인천공항 17명, 용당세관 1명 **2. 향후 추진계획** □ **인력 지속 확충 추진 및 특송물량 비용 부담 제도 신중 검토** ○ '26년 특송화물 전담인력 138명 증원 요청 ○ 외국기업에게 통관비용 증가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나, 국민과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검토 예정
28. 개인통관고유 부호 유출 차단 필요 2024년에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44.6% 증가하였으므로 본인인증서비스의 활용 또는	**1. 시정·처리결과**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체계 개선 ○ 부호 관리와 발급 정보 현행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효기간(1년) 및 추가 도용 방지를 위한 부호 직권 사용정지 등 개인통관고유부호 고시 개정 완료('25.6.) - 시스템 개선기간 필요로 '26년부터 시행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일회용 통관부호 도입을 검토하고 개인통관번호 유출 차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체계* 강화 ○ 다건 배송주소(20건) 등 신청 서식을 변경하여 우편번호도 일치하는 경우에만 통관목록 접수 가능토록 추진('26~) *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 + 이름 + 전화번호가 일치 시 통관목록 접수 가능 □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을 통한 구매 확인 ○ 해외직구 물품 주문 시 작성한 수하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가 일치하면 수하인의 이메일로 일회용 인증번호 전송 ○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하인에게 해당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통관 정보 작성하고 통관 단계에서 일치 여부 확인 ○ 이를 통해 실제 부호 발급자의 구매 건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부호의 도용 사전 차단 가능('26.하)
29. 통관고유부호의 도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인증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일회용 통관고유부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사업 과제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방안을 사업의 한 과제로 반영하여 현재 개발 중('24.12.~) **2. 향후 추진계획** □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을 통한 구매 확인 ○ 해외직구 물품 주문 시 작성한 수하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가 일치하면 수하인의 이메일로 일회용 인증번호 전송 ○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하인에게 해당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통관 정보 작성하고 통관 단계에서 일치 여부 확인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이를 통해 실제 부호 발급자의 구매 건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부호의 도용 사전 차단 가능('26.하) □ 일회용 개인통관부호 도입 추진 ○ 본인인증 확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에게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수하인이 아닌 업체로 바로 전송하여 도용을 방지하면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중('26.하) * 주문자와 수하인의 일치 여부, 본인인증 여부 확인 등
30. 기관 간 협력 개선 필요 최근 가짜 임신테스트기 수입 차단에 대해 관세청과 식약처 간 협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유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계 기관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협업전담팀 구성**) 관세청에 '협업정보팀*'을 신설하여 유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합동근무를 하고 있음 * '24.8월 구성되어 식약처, 환경부, 국표원, 무역안보원 등에서 파견근무중 □ (**협의체 운영**)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검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관세법」 제246조의3 제7항에 따라 산업부·환경부·식약처 등 참여('16년~) 2. 향후 추진계획 □ 수출입안전관리기관 기관협의회 개최(4분기)
31. 위조품 판매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우리나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데, 위조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통관 절차에서 판매업자를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등 위조품 판	1. 시정·처리결과 □ 특허청·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외직구 위조품 반입을 방지하고, 해외직구 성수기 등 집중단속 실시 중 ○ (판매사이트 차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지재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은 해당 판매사이트를 차단 및 결과 회신 * 총 2,155건 정보 제공한 결과 1,836건 판매사이트 차단 ('25.8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매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타겟팅 검사) 특허청으로부터 해외직구 위조 상품 의심 정보를 제공받아 통관단계에서 검사 선별 및 통관보류 * 해외직구 위조물품 총 595건 통관보류 ('25.8월) ○ (집중단속) 가정의 달(5월), 광군제(11월)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지재권 침해물품 집중검사 시행 * K-브랜드 3만점을 포함하여 총 7만5천점 적발 ('25.5월) □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조품 유통 단속 실시 ○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24.10.28.~11.29.) -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위조상품을 분산 반입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 지재권 침해 사유 통관보류 해외직구 물품 분석 및 조사지시 ○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 범죄 및 명의도용 특별단속('25.6.16.~8.22.) - 해외직구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상용물품 분산 밀수, 관세탈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민·관 합동 부정수입물품 온라인유통 모니터링 실시 ○ 국내외 주요 오픈마켓 등과 합동*으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계도('24.10.28.~11.29.) * 네이버, 쿠팡, 옥션·지마켓,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당근마켓 등 **2. 향후 추진계획** □ 해외직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시행 ('25.11월) ○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짝퉁 반입이 급증하는 시기에 지재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 판매사이트 차단 및 타겟팅 검사 지속 운영(연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재권 침해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여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특허청 정보를 활용하는 타겟팅 검사를 운영하여 위조품 차단
32. 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의 화물관리비용 감면 개선 필요 특송물류센터의 화물관리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관리비용 감면을 통해 소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화물취급수수료 요율개편('24.12.1.) ○ 특정업체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감면요율을 폐지하고, 기본요율을 인하하여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함
33. 할당관세 정책의 효과성 점검 필요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되어 적용대상 품목이 2021년 165개에서 219개로 증가하였고 약 2년 동안 4조 5,0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신선식품 및 신선과일 등 농축산물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할당관세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	□ 「관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를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34. 포괄가격신고 제도 개선 필요 포괄가격신고 요건 중 '같은 물품'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포괄가격신	□ 포괄가격신고 제도 활성화 추진 현황 ○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기준요건을 완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25.2월) * 〔관세법 시행령 제15조②〕 (개정 전)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개정 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고 신청건수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므로, '같은 물품'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을 통해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활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27조)되어 있으나, 실제 과세자료 제출은 매우 저조('24년 기준 가격신고 건 중 0.23%만 과세자료 제출)하여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음 ※ [참고]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25.9.1.)을 통해 그동안 운영이 미진했던 가격신고 제도의 정상화 추진 * 수입통관 시 필수 과세자료(로열티 등 8개 분야)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방법 등을 합리화 ○ 수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확보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오류를 조기 치유토록 노력 * [제출 생략] 납세협력 프로그램(AEO, ACVA) 참여 기업, 납부세액 5억 미만 기업 [중복 제외]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수입 시 연 1회만 자료 제출 등
35.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필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액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휴대품 검사율은 일반 여행자 대비 훨씬 높게 유지 ○ 지방세 체납자의 휴대품 검사율은 일반 여행자 대비 9배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음 ※ 무착륙 관광 비행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기간('20.12.12.~'22.6.27.) 동안 일반 여행자 검사율은 5% 수준 □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후 압류·매각·충당 등 강제징수 지속 실시 * ('22.) 11건 → ('23.) 259건 → ('24.) 501건 → ('25.8.) 320건 **2. 향후 추진계획** □ 체납자 검사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마약·테러 우범자 및 여행자 증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사율 운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체납자의 출입국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지방세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행안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인천공항세관 체납관리과 신설 추진(현재는 소액 체납팀 운영 중)
36.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선 필요 중국발 해외 직구 소비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 등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하여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 정책 조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하여 주요 현안 논의 ○ TF 회의(총 9회/20회)에 참석하여 유해·불법 직구물품의 효율적 반입 차단 등에 대해 논의 2. 향후 추진계획 □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신중 검토 ○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소액 면세제도 개편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민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검토 예정
37.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확대 필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부산항 시범운영 만족도 평가에서 이용자 편의가 높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내수 진작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전국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연장 ○ 인도장 운영요건인 반출입전산시스템 부재로 시스템 개발 완료시까지 시범운영 연장('25.1~) ○ 입국장 인도장 시스템 오류 개선 진행 중(~'25년 말) □ 시범운영(부산항) 결과('23.4월~'25.7월) ○ 〔참여업체〕 주요 대기업 3사 ○ 〔인도실적〕 일 평균 인도건수는 약 84건 인도금액 약 6천불 주요품목은 화장품, 가방, 식품류 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도율〕 연 평균 약 7.5% **2.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실시**) 입국장 인도장 전방위적 효과 분석 및 다양한 찬반의견*을 고려한 운영방안** 도출 * (찬성)국민편의 제고, (반대) 중소면세점 피해, 마약등 세관검사 지장, 시설 권자 반대, 입국장인도장 운영비용 부담 등 ** 설치 장소, 인도 품목, 입국장면세점 운영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방안 등
38. 면세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국내공항 면세점 노동자는 휴식공간이 없는 점,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관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면세점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보세판매장 비소속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24.10.25) - 세관과 비소속 노동자 간 대화창구 마련 및 상시 운영 - 면세점/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 의견 전달 및 협조요청 □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근로환경 적정성' 평가분야 개선 - 보세판매장 근무자(간접고용)의 근로환경 여건 적정성 및 소통창구 마련 계획 평가에 반영 □ 노동조합-관세청 간담회 개최('25.7.14) - 비소속 근로자의 근무환경 관련 애로사항 청취 - 관할 세관 및 유관기관에 논의 결과 전달 및 협조 요청 **2. 향후 추진계획** □ 공항공사·면세점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추진
39. 불법 환전업체에 대한 대책 보고 필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불법 환전	**1. 시정·처리결과** □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예정 ○ 환전영업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영업자에 대한 제재는 3개월 업무정지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환전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전소에 대한 검사율을 제고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인가된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말소하였으나 관세청 등록 환전영업자를 폐지하지 않은 경우, 직권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24. 12월, 최은석 의원 대표 발의) **2. 향후 추진계획** □ 하위법령 개정 지원 ○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원
40.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확보 필요 가상자산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국내 무역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세청에서 단속한 가상자산 관련 무역범죄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의 국외 이전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법 개정 대신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범죄자금 유출, 자금세탁 등을 종합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24. 12월, 최은석 의원 대표 발의) **2. 향후 추진계획** □ (**하위법령 개정 지원**)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원 □ (**내부역량 강화**)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이후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범죄유형별 분석기법 제고* * 예)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장외거래소(OTC)의 거래 특징 패턴화
41. 카지노 환전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보고 필요 카지노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실적이 저조하고, 검사 이전에 검사 대상 환전업자에게 조사 계	**1. 시정·처리결과** □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검사 강화 및 이원화 ○ 환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환전 검사 실시 - 1년 단위 서면검사, 3년 단위 실지검사 □ 사전통지 의무 규정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카지노거래의 고위험 특성을 반영해 검사 및 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단속의 밀행성과 보안을 훼손하는 관세청 고시를 개선하는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 환전검사시 검사대상자의 우범성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예외 단서조항 적용하여 행정조사 목적 달성 가능('24. 10월,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2. 향후 추진계획** □ '25년 하반기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42.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악용 직원에 대한 조치 필요 관세평가분류원은 무리한 세종시 이전 후, 직원 다수가 세종시에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는데, 직원의 공무원 특공 악용에 대해 적절한 징계 및 환수 조치를 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주택법 위반으로 1명이 수사 의뢰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됨 ○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만료로 '엄중경고' 처분함 **2. 향후 추진계획** □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임
43.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인력 관리 개선 필요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중 성희롱 등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인력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사전 검증 규정 마련 및 겸임교수 선발 프로세스 개선 ○ (**검증 규정**) '23년 겸임교수 위촉 이전 비위* 발견 시 해촉, 비위 확인 검증 절차 등을 보완한 규정 마련 후 '24년 시행 중 * ['22년] 겸임교수 중 성희롱·금품·향응수수 등 비위사실 3명 확인 ('23.6월 자체 종합감사) ※ ①「세관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교수요원 자격, 결격사유 해당 시 미임용, 결격사유 조회 마련, ②「세관공무원 교육운영에 관한 내규」에 교수 해촉 규정 마련 ○ (**프로세스 개선**) '24년부터 겸임교수 선발·위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시 사전 자격검증 후 징계자 등 제외하고 위촉하도록 선발 프로세스 개선 * ['24년] 겸임교수 신청(57명) → 검증 제외(△2명), 전문성 미흡(△3명) → 선발(52명) **2. 향후 추진계획** □ '26년 겸임교수 위촉 시 사전 자격 검증 절차 강화 ○ 향후 '24년 겸임교수 위촉 기간('24.7.1.~'26.6.30) 만료에 따른 '26년 겸임교수 선발·위촉 시 개선된 프로세스 운영
44. 조사 시 인권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시행 필요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관세청에 권고결정을 했는데, 관세청에서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직무에 대해 인권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범칙조사 절차 규정 개선 및 조사직무 교육 실시 ○ (규정개선) 검찰・경찰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훈령」에 부족한 부분**을 개정 * 특사경 수사준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등 ** '인권보호 원칙', '차별금지',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등 반영 ○ (인권교육) 조사직무 교육*의 개별과목(압수수색영장집행 실무 등)에 인권보호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선 * 관리자 수사지휘(연1회), 조사 기초(연3회), 조사 전문(연1회), 수사기법 및 사례(연2회), 마약조사 실무(연2회), 외환조사 실무(연1회) 등 **2. 향후 추진계획** □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지속 실시 ○ (직무교육)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직무 교육 뿐만 아니라, 세관 자체 수시 교육 실시
45. 성비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세청에서 매년 성비위를 사	**1. 소속직원의 성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 □ 각 기관별로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피해직원 신변 보호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유로 직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직원들이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성비위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td><td>○ 각 소속기관별로 남·여 직원 각각 1명씩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여 38개 기관 총 76명의 고충상담원 운영
○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초기 상담제공하고 이후 진행될 고충처리 철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
○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및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실시

2. 성비위 관련 예방 교육 강화 대책

□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매년 각 기관별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 및 이러닝교육 실시('25년9월기준 55회 실시, 총 5,018명 이수)

< 성비위 예방교육 이수율 추이 >
<table><tr><th>'20년~'24년 평균 이수율</th><th>'25년 목표 이수율</th><th>'25년 현재 달성 이수율</th></tr><tr><td>92.5%</td><td>95%</td><td>96.8%</td></tr></table>
○ 대면교육 시 내실있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를 초빙

< 전문 초빙강사 주요 프로필 예시>
<table><tr><td>소속</td><td>OOOO연구소 소장</td></tr><tr><td>경력사항</td><td>·OO청 등 성평등 전문강사
·OOOO공단 성희롱 심의위원회위원
·(사)OO여성 집행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통합강사 등</td></tr><tr><td>연수사항</td><td>·성폭력 상담과정 수료
·심리상담사 교육과정 수료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 수료 등</td></tr><tr><td>주요 활동사항</td><td>·다수 공공기관 성비위 관련 외부위원 및 전문강사
·공공기관, 군인, 민간, 학생 대상 강의 (월30회 이상)</td></tr></table></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부서별 예방교육 이수율을 부서장 성과계약 평가에 반영하여 전 직원이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독려 ※ 본인 및 부서원 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 미달시 감점(최대 -3점) - 본인 교육 미이수(-1점), 부서원 평균 교육이수율 90%미만(-2점)
46. 관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으로부터 AEO 심사업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AEO진흥협회에 관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해 있는데 관세청이 AEO 제도 관련 계약을 한국AEO진흥협회에 몰아주고 있고, 관세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면세점협회로 총 88명이 재취업 했는데 한국 면세점 3사의 매출이 2020년 119.8억 달러에서 2023년 99.1억 달러로 20.7억 달러 감소한 문제가 있으며, 관세청은 조달청 및 통계청에 비해 재취업 승인 심사가 유독 많으며 승인율이 100%에 달하고 있으므로, 유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이 재취업 심사 신청이 많은 이유 및 취업심사 현황 ○ 타 기관*에 비해 관세청 퇴직자의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관세사, 보세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취업 심사 신청이 많은 것으로 판단 * 최근 3년 재취업 심사 신청(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 조달청(8건), 통계청(1건) ○ 최근 3년간 총 55명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신청하였고 이중 53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였음 ※ 최근 3년 재취업 심사 신청 : ('22) 12명 → ('23) 19명 → ('24) 15명 → ('25.9) 9명 □ AEO 공인심사 지원업무의 위탁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이며, '10년, '18년, '23년 3차례에 걸쳐 수탁기관 신청 공모를 하였으나, 한국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함 * 근거법령: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8조 제10항 □ 수탁기관 지정 후 수의계약 하던 것을 최근 관련 고시를 개정('24.10.22.)하여 매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함 **2.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개선방안 ○ 유관 단체 재취업자 모두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심사*와 각 기관의 채용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재취업함 * [취업심사대상 기관 재취업 절차] ①퇴직자, 취업심사 신청 → ②관세청, 취업가능 여부 검증 및 관련의견 전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 ③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최종 결정 ○ 앞으로도 관세청 퇴직자가 유관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엄격히 검증하겠음 □ 최근 국회 지적과 같이 성과지표 설정, 사후평가 실시 등을 통해 AEO 심사지원 위탁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47.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 재직중인 협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 재직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와의 수의계약이 과다하므로, 기획재정부 차원의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유니패스') 운영·유지관리의 공공성·투명성 회복과 전문성·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니패스 운영 전담 법정법인『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24.7월)하고 '25.1월부터 정부 출연을 통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2.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업체가 참여·경쟁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체 정보화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보화 사업의 참여 업체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48. 관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축소를 위해 실행계획 마련 타 기관에 비해 관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긴급공고와 수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 사업 참여업체 확대를 위하여 관세청 전체 정보화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및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개('25.10.1)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의계약 규모가 과다하므로, 긴급공고 또는 수의계약 규모 등을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2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만 설명회 개최 의무(행안부 지침), 하지만 우리청은 21, 22, 24년 전체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 개최('24년도 총 184명 93개 업체 참여) **2.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 전체 정보화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및 관세청·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자료 공개 등을 정례화(매년)하고, 사업 담당자 교육·안내를 통해 업체가 충분히 입찰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찰공고 기간을 확보(긴급공고 지양)하는 등 정보화 사업의 참여 업체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49. AEO 인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 AEO 인증제도를 악용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AEO 공인업체의 법규위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혜택 정지, 공인취소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 AEO 공인업체의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6개월 범위에서 공인 혜택을 정지하고, 처벌 확정 시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 또한, AEO 업체의 엄격한 법규준수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24.10월)하여 검찰 송치하는 범죄는 형 확정 이후에 혜택 정지하던 것을 검찰 송치와 함께 혜택 정지하도록 제재 강화 조치하였음 **2. 향후 추진계획** □ 현행 관세법 시행령 규정상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 대표자·관리책임자 외 소속직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가 처벌받을 때도 형량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겠음
50. 재해복구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	**1. 시정·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CIQ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조기 구축 및 재해복구 서버 장비 증설의 추진이 미흡하여 전산망이 마비가 됐을 경우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산망 마비 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것	□ CIQ시스템이 포함된 재해복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중대 재난·장애에 대응하는 한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체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장애 위험을 최소화하겠음 ○ 원격지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진(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26년 예산 120억원 제출)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 전까지는 舊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지정하여 중대장애 발생 시 활용* 예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완료('25.6월)하였으며 재해복구 훈련('25.8월)을 통해 통관관련 주요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2. 향후 추진계획** □ '26년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정('25.12월)하고 설·추석,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기간 등 비상대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중대 재난·장애에 신속히 대처 ○ 추석 연휴 비상 대비 시스템 점검 등 실시('25.10.3～10.13.) ○ 해외직구 급증 시기(광군절·블랙프라이데이) 비상근무 실시('25.11월)
51. 고가 휴대품의 반출신고 관리 필요 반출신고가 되지 않은 고가의 신변장식용품을 착용한 채 입국한 경우, 세관에서 밀수 여부를 검사한 뒤 반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적정한 과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 휴대	**1. 시정·처리결과** □ 휴대물품의 반출 신고는 재반입 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제도로 의무 사항은 아님 ○ 다만, 반출 신고 없이 고가품을 반입하는 경우, 현장 세관 직원이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 ○ 국내 반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면세 한도(현행 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적정한 과세 조치 시행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td><td>○ 이러한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전국 공항만 세관에 관련 내용 공유 등 직무 교육을 강화

2. 향후 추진계획

□ 여행자들이 고가품 반출 시 휴대반출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음.

* 공항 내 안내문 게시, 항공사 협조 등</td></tr>
<tr><td>52. 압수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보관·관리 개선

관세청이 압수한 농산물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해 7일 이내에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등을 의뢰한 비율이 저조하므로, 압수 농산물의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개선할 것</td><td>□ 압수 농산물 등 압수물품 관리실태 점검 실시 및 관리개선

○ ’24년 압수 농산물 등 압수물품 관리실태 점검 (’24.12월)

○ 전국세관 대상 압수물품 관리실태 점검지시 (’25.7월)

○ 압수 농산물 검사 및 폐기 조치

- 압수 농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지휘를 받아 폐기 조치

< 압·몰수 농산물 폐기 내역(’24.10월～’25.8월) >

(단위 : 건,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24년(10~12월)</th><th colspan="2">2025년(1~8월)</th></tr><tr><th>폐기건수</th><th>범칙시가</th><th>폐기건수</th><th>범칙시가</th></tr><tr><td>농산물</td><td>1</td><td>11</td><td>3</td><td>0.8</td></tr></table>
※ ’24.10월～’25.8월 압·몰수 농산물의 농림축산식품부 이관·매각 내역은 없음</td></tr>
<tr><td>53.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중국 제품의 수입현황 파악 실시 등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제품의 수입현황</td><td>1. 시정・처리결과

□ 관세법상 수입 금지 품목*이거나 통관보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 제한이 가능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물품 및 화폐·채권·유가증권의 위·변조 또는 모조품 등
** ①관세법(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포함)에</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을 파악하고 해당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할 것	따른 의무사항 위반, ②신고서나 제출서류 등 보완 필요, ③안전성 검사 필요, ④불법·위해물품으로 확인 등 ○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품은 관세법상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고 조약 등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도 아니므로* 수입 제한이 불가 * 유엔 결의는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에 한정(제2371호[고용제한], 제2375호[노동허가금지]), 북한 노동자가 가공한 물품 수입금지 조치는 없음 / 미국 정부 제재('적성국 제재법' 등)는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국제법규 등에 비해당 □ 북한 노동력 사용이 의심되어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한 중국업체(4개사*) 제품에 대하여, 미국 세관(CBP)에 조사결과 요청 ** * Li-Ning Sporting Goods, Jingde Trading, Rixin Foods, 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 실태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 결과 등 미측에 요청('24.12.31.) 하였으나 아직 미회신 **2. 향후 추진계획** □ 미측 회신 결과에 따라 해당 해외공급자와 거래한 우리나라 주요 수입자에 대하여 주의사항 안내 등 검토
54. 반도체 등 특수화물의 한-일 복합운송의 간소화 반도체 등 특수화물의 한-일 복합운송이 한-중 복합운송보다 서류절차 등 더 복잡하므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간소화시킬 것	□ 「일시수출입 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5.5) ○ 일시수출입 특수차량 신고인을 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 까지 확대*하여 한-일 복합운송 차량에도 간소한 신고절차 적용 * (개정전) 한-중 복합운송은 관세사 신고가 가능하나, 한-일 복합운송(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은 화주로만 규정하여 세관 직접 방문 등 절차 복잡
55. 해외직구 의약품 및 유해물질 함유 제품 통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해외직구 의약품 중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1. 시정·처리결과** □ **마약류 의약품·유해물질 포함 물품 차단을 위한 검사 강화**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화물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반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외직구 물품 중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직구물품 포장의 물품 정보를 통관시 확인하는 등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	선별하여 집중 검사 ○ 또한, 동일한 경로로 마약류 의약품, 유해물질 포함 제품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 및 개장검사 강화 **2. 향후 추진계획** □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해물품 통관관리 강화 ○ 전용 플랫폼 구축('26.11.)시 공급망이 보유한 거래정보(주문·결제 등)를 입수·활용*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된 직구물품을 효율적으로 검사 가능 * 전자상거래업체가 보유한 구매자의 거래정보(주문·결제·상품 등)를 사전제공 받아 우범 판매자 또는 과거 적발 물품 등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관리 가능
56.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급증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납률이 9%에 불과하므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과태료 체납정리 강화 ○ 체납자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징세기관과의 합동조사 등 은닉재산 추적 강화 □ 과태료 수납률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안) 제출 ○ 과태료 체납에 없는 집행수단인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24. 12월) **2. 향후 추진계획** □ 조세 체납에는 있으나, 과태료 체납에 없는 집행수단인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제도 도입을 법무부 등 주무부처와 적극 협의 □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추진 * 정시직제 요구 시 서울 1과·부산 1과 ⇨ 현재 + 인천공항 1과 신설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7. 관세청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의혹 등 해소를 위한 조치 실시 관세청 직원의 마약밀반입 연루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을 실시하거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수사 중인 사안으로 중복 조사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강제조사에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고 있음 **2. 향후 추진계획** □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조치할 것임
58. 관세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재점검 실시 최근 5년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취약 시기·분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및 상시 비위 예방 활동을 강화함('25.1～8월) ○ 설명절, 선거철, 하계 휴가철 등 특별점검 실시 ○ 주기적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선박용품 관리 실태 점검 등 상시감찰 실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함('25.9월) ○ 취약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부패 사전차단 등을 위한 5개 핵심과제 및 15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 **2. 향후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예방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59. 한일간 특수화물 복합운송 절차 관련 고시 개선 필요 (부산본부세관) 한일간에 특수화물 복합운송 절차 관련 간소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할 것	□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 확대를 통한 신고 편의 제고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5.5.2) → 신고인을 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까지 확대* * (기존)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만 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0. 드론 활용 등 불법 마약 유통 검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항을 통한 불법 마약 유통을 드론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울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수립 및 용당세관 내 엑스레이 검색기 증설 등 인력 장비를 확충 하며, 해상화물을 통한 불법마약의 차단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수중드론('24.11.), GPS탐지기('25.5.) 등 첨단 마약 탐지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단속에 활용 중 □ 검·경 및 DEA, CBP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약관련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 실시 ○ 미국 DEA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컨테이너에 은닉된 코카인 600kg ('25.5.), 333kg('25.8.) 각각 적발 □ 신종 마약류 기획단속('25.2./김해공항), 환적화물 집중검색기간 운영*('25. 2. 6./신항), 냉동컨테이너 집중단속 실시('25.10./북항) * 환적·냉동컨테이너 집중검사, 우범 창고·선박 전수검사 실시 등 □ 용당세관 X-ray 검색기 추가 배치(1대, '24.10.) 및 인력 충원(1명, '25.2.), 부산신항 수입검사(마약 등) 인력(10명) 증원 중* * 증원 요청('25.4.) → 행안부·기재부 검토 후 10명 증원 결정('25.7) → 국회 심사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마약단속(통관검사 등) 인력과 밀리터리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 확보 추진 및 국제 공조·정보분석 지속 강화
61. 부산본부세관 통관 절차 관련 제도 개선(부산본부세관) 상승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을 고려하여 진해·웅동 등 효율성을 바탕으로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부산 지역 내 중국산 검색기의 잦은 고장과 관련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40년 진해신항 개장 예정임을 고려,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간 접근성 및 세관검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지확보 추진 중 ○ 부산항만공사 주관 진행 중인「항만시설용지 타당성 용역(~'25.11월)」에서 통합검사장 화물접근성·검사효율성 검토 중 □ 컨테이너검색기 주요부품 사전확보, 장애 발생 시 신속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고장 발생 최소화에 지속 노력 * 중국산 검색기(감만검사센터) 고장 발생 건수 : ('23년) 8건, ('24년) 1건, ('25년) 2건 **2.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신속·검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지를 최종 선정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추진 예정 □ 정기점검 및 고장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운용 중단 상황의 경우 인근 검색기, 차량형검색기(ZBV) 등 대체 수단 활용
62.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해 단속·통제를 강화하고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아래 부산본부세관 소속 전담 수사팀(2개팀, 11명) 상시 운영 중('25.3월~) ○ 부산세관 전략물자 사건처리 건수: ('24년)28건 → ('25년)17건 □ 전략물자 불법수출 및 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사전 차단·단속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공조 강화 * 산업부, 무역안보관리원, 국정원(부산지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2. 향후 추진계획** □ 전략물자 수사에 비전담팀 추가 투입 등 대응 강화 및 무역안보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 지속 유지
63. 관세 체납 징수율 향상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 지역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향상을 위해 추적 전	**1. 시정·처리결과** □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구성·운영 ○ 해외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 강화(32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담팀을 운영하고, 감치뿐만 아니라, 적확한 세금이 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팀당 4명으로 총 2개팀(8명) 운영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정리 활동 강화 시행 ○ 가상자산 등 압류 재산을 다양화하여 체납정리 및 엄정한 행정제재* 등을 통한 체납정리 실효성 확보 * 감치 집행(1명),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73명), 출국금지(20명) 등 □ 적확한 고지를 위한 과세 적법성 향상 추진 ○ 관세평가, 법령 학습 등 관세조사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15회), 과세적법성 향상을 위해 고지 전 처분검토회의* 개최(5회) * 심사국장(의장), 과세조사 부서장·팀장 등 6명으로 구성 **2.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체납 실태 전수조사 및 추적조사 지속 실시 ○ 실태조사요원 채용(2명) 등으로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 지속 □ 사전 보전압류 등을 통한 징수 효율화 ○ 조사부서와 협업하여 체납인계 전 선제적 보전압류 실시 ○ 과태료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재산(금융)조회 권한 확보 건의
64. 기업 수출 지원 확대 필요 (부산본부세관) 부산 지역내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 무역 시 통관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본부와 협업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해외 관세관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통관애로 해소 ○ 통관애로 최다 발생국인 인도 등과 협력 제고, 기업지원 강화 - 한-인도 EODES 시스템 장애를 위한 비상대응대책안 마련('25.2) - 한-인도 관세당국간 업무 협의 및 현지 진출기업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간담회('25.3.) - 한-인도네시아 등 통관애로 빈번국가 대상 사례별 표준안내문 제작('25.3.) - 주중 인도관세관 부산세관 방문을 통한 인도측 컨택포인트 구축('25.5.) ○ 본청 및 전국 본부세관 해외통관애로 간담회 등 소통 강화 - 센터별 현안·통관애로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25.2., 9.) - 기업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 관세관 상담회('25.5.) □ 최신 동향 및 기업 대처요령 등 정보제공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 (사례집) 기업 실무자를 위한 해외통관애로 사례집 배포*(수시) * 소책자: 기업 및 유관기관 배포 / e-Book: 관세청·부산세관 누리집 게재 ○ (설명회)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통한 기업 대응능력 제고 - 업체 실무자 대상 국가별·유형별 통관애로 사례 및 예방 교육(15회) *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설명회, 농협 수출회 설명회, 소상공인 교육 등 **2. 향후 추진계획** □ 기업방문·설명회 등을 통한 해외통관애로 파악·즉시 해소(연중)
65. 외화밀반출입 관련 제도 홍보 및 계도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의 경우 일본으로의 왕래가 잦고 외화밀반입은 보	**1. 시정·처리결과** □ 외화신고 대국민 안내 ○ 외화신고 방법이 포함된「여행자를 위한 세관신고 가이드」리플릿을 제작하여 출국 여행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이스피싱등 기타 범죄와 연루될 수 있으므로, 외화밀반출입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보안·단속요원들과 협의하여 사전 차단에도 노력할 것	항공사 대상 배포('25.10.~) ○ 제1출국장 세관 사무실 전면에 외화신고 안내문 게시(수시) * [외화 자진신고] ('24년) 6,236건 → ('25.8월) 4,338건(전년 동기대비 8.4%↑) □ 공항 보안검색대 업무 협조 요청 ○ 출국 여행자에 대한 외화·금괴 등 밀반출 적발 시 세관에 즉시 신변·수하물 일체 인계 협조 요청('25.3.) * (외화 미신고 적발] ('24년) 101건 → ('25.8월) 52건(전년 동기대비 23.5%↓) **2. 향후 추진계획** □ 외화신고 대국민 지속 안내 ○ 신설 예정인 제2출국장 세관 사무실 전면에 외화신고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 예정 □ 공항 보안요원과의 협조·공조 관계 지속 강화 ○ 합동 적발 사례 학습 및 유사 시 세관 통보 정기적 안내
6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내 통관 관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물품 반입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여행자 증가 대비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체계 구축 ○ (검사선별) APIS 정보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통관, 우범여행자는 정밀 검사 실시 * 입국 여행자 : 476,896명, 정밀 검사 : 6,157명('25.8.) ○ (검색장비) 입국시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수하물 전량 X-ray 검사 및 필요시 이온스캐너 정밀검사 실시 * 검색장비 : X-Ray검색기 7대, 이온스캐너 2대 운용 중 ○ (역량강화) X-Ray 판독, 휴대품 검사·통관요령 등 모의 훈련 실시자체교육, 마약 동향 수집, 안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위해물품 적발 * X-Ray 교육(8회), CIQ합동검색훈련(5회), 적발 모의훈련(8회) ○ (유관기관)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강화로 우범요소에 대한 정보 입수, 여행자 검사 등에 적극 활용 * 상·하반기 CIQ협의체(2회),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중 **2. 향후 추진계획** □ 첨단 과학 검색장비 도입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현재 인천공항·김해공항 등에서 운영중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관세청과 협의하여 도입 추진
67. 철강 수출기업 대상 CBAM 대응 필요(대구본부세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과정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구본부세관 관할 기업들에 대해 CBAM 대응을 위한 EU 수출입 관련 상담·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CBAM 대응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강화 ○ 포항시와 협업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사업 지원(25.4월) * 철강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업체를 분석·추출하여 포항시에 제공 ○ 포항상의와 협업해 철강산업 대상 설명회(25.5월, 12社) * EU CBAM ▲CBAM 제도 안내,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검증 체계 등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포항시, 철강업체 등 간담회(25.7월) *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 CBAM 대응방안, 저탄소 신산업 기반 마련 분임토의 등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개발 중인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을 FTA-PASS에 탑재할 예정이며, CBAM업체 대상으로 동 시스템 및 관리 방안 적극 홍보 * 탄소배출량 관리 : 원재료부터 수출물품까지 모든 탄소배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출량 이력·정보 관리 □ CBAM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대응 지원 강화
68. 통관관리 및 조사 단속 강화(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 내 노후화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AI 기반 우범선별 시스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AI 우범선별시스템) 시스템 사용 비율 상향 조정 및 직원 교육 ○ AI 선별 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대구세관에서 통관되는 수입화물은 우범성이 낮아* 선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중견기업의 원자재 위주 반입으로 동일한 물품이 반복적으로 통관됨 ○ 자체 분석을 통해 우범성 있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위험관리센터에 제공하여 AI기반 우범선별 검사비율 상향 요청('24.10월)하였으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적발기법 등 직원 자체 교육 실시 □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국내산 둔갑행위, 국내산 판정기준에 미달되는 국내생산물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 단속 직원을 1명 추가하고, 중국산 사무용 의자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 중국·베트남산 수입물품의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 등 적발(적발금액:10억원) 2. 향후 추진계획 □ AI 선별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검사비율 상향 □ 원산지표시단속 환경변화에 따른 단속범위 확장 및 단속활동 강화
69. 불법마약 단속 강화 필요(대구본부세관) 대구지역내 마약 적발량이 폭증하고 있으므로, 전담부서	1. 시정·처리결과 □ 마약수사 인력 보강 및 마약탐지장비 지속 확충 ○ (인력) 2024년부터 수사부서에 유동정원 2명을 증원하고 권역세관(울산·포항·구미세관)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를 신설하고 노후화된 검사장비들을 현대화 할 것	광역수사체계 강화 ○ (장비) 노후화된 수사장비 불용처리 및 수사장비 신규도입 - 분전함형 및 소화기형 통제배달용 위장카메라 도입('25.2월) -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수사장비(수갑 등) 불용처리('25.2월) - 신규 수사장비 (전자충격기등) 도입('25.3월) **2. 향후 추진계획** □ 마약수사전담팀 신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력 보강 요청 □ 노후화된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수사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 후 불용처리 및 신규장비 도입
70.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수출팩토링 홍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 사업을 강화 할 것 세관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경상북도 협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강화 * (세관) 수출여부 확인 ⇒ (경북도) 물류비 지급 ○ (자료공유) 실무자 협의회 개최를 통해 자료(자체분석 발굴하여 홍보한 업체 리스트 공유 등) 및 지원 현황 공유 ○ (수출확인) 경상북도에 연 2회 수출여부 실적 확인 통보하던 것을 '25년 하반기부터 월 1회로 변경하여 더 많은 지원 대상을 발굴토록 조치 ※ 지원업체 수 : '23년(2회, 255개사)→ '24년(2회, 364개사)→ '25.8월 (3회,151개사) □ 대구세관 자체 세정지원 실시로 지역 수출업체 지원 강화 ○「본부-권역 세정지원팀」편성·운영하여 '25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월말 기준 납기연장·부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해 총 75개 업체 지원(507억원) ○ 수출팩토링 등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코트라, 중진공 등과 협업하여 수출기업 안내 □ '세관사칭' 금융범죄 예방 홍보 활동 ○ '관세 납부'를 빌미로한 각종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주제로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세관 통화연결음 주의 멘트 추가 - 영상은 대구시청 옥외 전광판, 대구FC 전광판, 대구공항홍보 모니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영상 송출 - 카드뉴스는 대구본부세관 및 울산·구미·포항세관 홈페이지에 게재 **2.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중소 수출입업체들 대상으로 세정지원 미혜택업체 추가 발굴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강화 실시 □ 정확한 납세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수출입업체를 위한 맞춤형 오류 정보제공과 컨설팅 실시 □ 영상과 카드뉴스를 전달력이 높게 개선하고, 영상 송출 장소와 매체를 추가·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71. 군산세관의 검색기 추가 배치 필요(광주본부세관) 전자상거래 물량이 확대되고 있어 통관지연이 예상되므로 군산세관에 검색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군산세관 특송통관장 X-ray검색기 추가 배치 검토 ○ '24년 개장 대비 물량이 증가하여 '25년도는 기존 검색기 3대의 최대 처리량(연간 900만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본청과 협의하여 '26년도 X-ray검색기 추가 배치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향후 추진계획 □ 특송물량 증가추이에 맞추어 X-ray검색기 추가 배치 추진 ○ 물량증가로 인한 통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색기 등 장비의 지역간 조정배치 및 추가 도입 추진
72. 서남해권 관할 분석실 마련(광주본부세관) 화물반입 시 1차 엑스레이 검사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석실로 보내는데 광주 관할 내 분석실이 없어 타 지역으로 보내 분석을 요청해야 하는 바, 인력 재배치 또는 증원 등을 통해 서남해권에도 분석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전국의 분석실*은 총 5곳이며, 광주권역의 분석의뢰 건은 서울, 부산 세관 분석실에서 처리 * **관련규정**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5조 제3항 **제5조(분석업무의 범위와 관할)** ③ 세관별 분석실의 업무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세관 2. **서울세관 분석실**: 서울,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 군산, 전주, 속초, 동해 및 대전세관 3. **부산세관 분석실 및 분석관**: 부산, 대구, 광주, 김해공항,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울산, 구미, 포항, 광양, 목포, 여수 및 제주세관 4. 인천세관 분석실 : 인천, 수원 및 안산세관 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 평택직할세관 □ '24년 말까지 연평균 분석 업무는 2만여 건으로 광주본부 권역에서 의뢰하는 서울, 부산 분석실의 경우 각각 1,445건, 5,818건을 분석하고 있음 ○ 이 중 광주본부 권역에서 의뢰한 건은 각각 137건(9.5%, 서울 분석실), 343건(5.9%, 부산 분석실) 총 480건으로 연평균 전국 분석실 분석의뢰 건의 2.5% 수준 □ '25.8월 말 기준 서울, 부산 분석실에 의뢰한 광주권역의 분석 건은 총 293건*으로 전국 분석 건수 10,965건 대비 2.7% 차지 * 서울 분석실 총 991건 중 93건(9.4%), 부산 분석실 총 3,689건 중 200건(5.4%)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향후 추진계획 □ 광주본부 내 분석실 설치는 분석 수요 예측, 비용 등 설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 권역 내에서 의뢰되는 분석에 신속한 대응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서남해권 관할 분석실 설치를 검토하겠음 ※ 분석실별 운영 현황('25년 8월말 기준) (건, 명)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인천공항	평 택	합계
누계 처리 (전체 비중)	991 (9%)	3,689 (34%)	2,185 (20%)	3,019 (27%)	1,081 (10%)	10,965
근무인원*	3	13	7	6	4	33
1인당 처리	330	284	312	503	270	332

* 근무인원은 '25. 8. 31. 현재 총 실무자(부서장, 주무, 휴직자 제외) 기준

73. JDC 활성화 방안 마련 (광주본부세관) JDC의 이용자 및 매출액 모두 감소하고 있으므로, 제주 발전을 위해 JDC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지정면세점 매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 디지털 신원인증(바이오인증)을 통한 구매자 신원확인 방법 허용으로 면세품 구매 시 신원확인 방법 간소화 지원('24.12월) ○ 면세물품 보세운송 시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편의 제고, 면세사업자 ESG경영환경 지원('25.4월) ○ 지정면세점 관련 규정 개선으로 매출 증대에 기여 -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액상전자담배 등) 확대('25.1, 8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정면세점 지정기간 확대(5년→10년) ('25.1월) - 지정면세점 주류 판매한도 변경(병 수 제한 폐지) ('25.6월) ○ JDC공항면세점 수용능력 증감 허용(매장면적 10.8㎡↑)하여, 단기 임대차 계약을 활용한 팝업 매장 운영 지원('25.7월) - 최초('25.7.10.~8.8.)설치 후 현재 3차례 기간 연장(~10.31.) **2. 향후 추진 계획** □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 면세업계-세관 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면세점 운영협의회 운영 및 실무자 협의 활성화 ○「찾아가는 보세화물 규제개혁 신고센터」상시 운영으로 수요자 규제개혁 · 적극행정 활동 지속 추진
74. 세액탈루 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방안 마련(광주본부세관) 세액탈루 위험이 낮은 일반 기업까지 관세조사를 강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납세자의 관세조사 부담 완화 방안 시행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15일 전 → 20일 전) ○ 위험도가 낮고 기업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간이 관세조사(서면조사 포함)*로 신속한 업무 수행 및 조기 종결 * 방문조사 및 전체조사 기간 모두 단축 운용 ○ 관세조사, FTA원산지 검증, 외환검사 등 각각 통지·처리 하던 업무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단위 통합수행 **2.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세액탈루 저위험 기업 관세조사 완화방안 지속 발굴 ○ 사전 정보분석에 기반하여 세액탈루 고위험 분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 ○ 정기·예방점검 중심의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 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 경감 제도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
75. 군산세관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광주본부세관) 군산세관 특송통관장의 2월 대비 8월의 반입건수가 551.8% 증가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통관 전담인력이 2명만 증원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 X-Ray 검색기 설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력을 7명 증원하고 X-Ray 3대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군산세관 특송통관 전담인력 14명(X-ray 전문 경력관 4명 포함) 요구 ○ 기재부 검토 결과, '26년 2명(7급 1, X-ray 전문경력관 1) 증원 정부안 제출 □ 군산세관 특송통관장 X-ray검색기 추가 배치 검토 ○ '24년 개장 대비 물량이 증가하여 '25년도는 기존 검색기 3대의 최대 처리량(연간 900만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본청과 협의하여 '26년도 X-ray검색기 추가 배치 검토 2. 향후 추진계획 □ 특송물량 증가추이에 맞추어 인력증원 및 X-ray 검색기 추가 배치 추진 ○ 물량증가로 인한 통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색기 등 장비의 지역간 조정배치 및 추가 도입 추진

조 달 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품질점검 주기 단축을 위해 조달품질원 內 인력을 조정하여 품질점검 담당인력 충원 조치('25.2월, 8명→10명(25%↑)) 하였으며, '26년 정부 예산안에 시험 수수료 및 국내여비 165백만원을 추가로 반영 ○ '25년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목표를 최근 3년 평균 대비 25% 증가한 1,500여 건으로 설정하여 품질점검 수행 중
· 차단봉 형태의 지하차도·터널 차단시설은 안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안내) 차량차단기를 터널진입차단설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수요기관에 안내, 종합쇼핑몰을 통해 유의사항 공지 ○ (제품확대) 터널진입차단설비 혁신제품을 단가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 등재 * 기존에는 우수제품만 종합쇼핑몰 등재
· 우수조달물품 등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사후 품질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문제발생 우수제품 등은 매년 중점 품질관리 물품으로 선정하여 집중 품질관리(연중)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4개 품명을 품질·직접생산확인 점검 대상에 포함('25.1월) ○ 품질불량·규격위반 물품에 대해 신고·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연중) ○ 우수제품 지정 계약 및 품질관리 관련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25.4월) * 조달연구원, 쇼핑몰지원센터, 조달품질원
· 조달청-관세청간 협조를 통해 원산지 위반 제품 공급을 단속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파악을 명확히 하여 원산지 불명이 없도록 관리할 것	○ 계약단계에서부터 원산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총액계약 원산지 입력 시점을 '검사검수 시점'에서 '계약서 초안 응답 시점'으로 변경 개선 완료('25.9.)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입찰, 계약자료 등 공공조달정보 및 부정납품 단속 및 수입 정보 등 원산지 점검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 공공조달 제품 원산지 위반조사를 위한 '25.9월 합동조사팀을 구성·조사 실시
2. 혁신제품 시범사용 확대 · 수요기관이 직접 사용 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시범 사용 및 설치 지원을 확대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다각화) 임차 시범구매 도입 및 해외실증 시범구매 확대 등 시범구매 유형을 다각화 - 제한적이었던 고가 제품 시범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임차방식의 시범구매 도입 ○ (규모 확대) 전체 시범구매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25년) 529억원 → ('26년 정부안) 839억원
· 지방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그 결과를 본청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 조달기업과의 현장 접점에 있는 11개 지방청에 '공공조달길잡이' 전담관 지정 운영('24.3~, 36명) 하여,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파트너십데이) 지방조달청 주관으로 지역 혁신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을 매칭하여 구매상담회 및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실적을 본청에서 관리
3. 조달 공정성 강화 및 조달제도 보완 ·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건의 위법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수요기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 ·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포	□ **시정·처리결과** ○ 기존 업체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직접생산 위반 의심업체 선별 기능 고도화('25.8.25.) ○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처리 기준 개정('24.12) - 손해배상 소송 미제기로 인한 손해액 미보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수요기관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상황 분기별로 점검, 총괄 관리 * (확인·점검) 계약부서 →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상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환수 제도를 개선하여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포상금 상향) '26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상향하지는 못하였으나, – 포상금 예산집행 현황 및 신고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 ○ (부당이득 환수 징수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미수채권 관리강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25.8.28.)
· 조달절차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달절차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지정신청·제한 등 엄격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	– 위약금 산정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예정 ○ 허위·위조서류 제출 등 중대위반의 경우 일정기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토록 법령 개정 요청(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청, '25.12월 개정 예정)
· 벤처나라 제품의 지정 만료 이후에도 제한 없이 재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기업의 자력 성장 저해 및 신생기업에 대한 기회 제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 보완 및 관리를 강화할 것	○ (벤처나라 공고문 반영) 동일업체, 동일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나라 지정기간 만료 후 재신청·재지정되지 못하도록 벤처나라 지정신청 변경 공고 조치('25.1월부터 적용)
· 중소기업 성능인증제도 운영 시 조달청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기술인증 가점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특정 수요기관의 섬유류제품 2단계 경쟁 시 인증에 대한 가점 불인정 결정('25.5) – 특정수요기관(소방·경찰 등)의 피복류 섬유제품은 자체 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작에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업체들의 제조역량이 대동소이하여 고난도 기술을 요하지 않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매가격 사전공개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협상계약 기술능력 평가항목에서의 최고 및 최저 점수 관련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보하고, 정산 결과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기술인증 가점을 인정할 경우 불필요하고 무문별한 인증 취득 경쟁유발로 업체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및 공고서에 반영 예정('25.12) ○ 사전규격공개 통계자료 추출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개선 완료('25.9월) - 의견 제출 시 유형(입찰참가자격, 시험기준 등) 선택, 수용 여부 선택 등의 기능 추가 ○ 기술능력 평가항목(정량,정성) 관련 최고최저 점수 기준은 기도입하여 시행 중 - 편향된 평가점수 배제를 위하여 최종 기술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협의(5월, 기재부) * '25년 11월 개정 예정 - (개정내용)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의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후 감사원 통지
4.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및 제도 보완 ·부정당업자 제재 및 벌점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상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계약보증금 상향 및 제재효력 승계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건의(기재부, '25.5월) - (계약보증금 상향) 중대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집행정지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 (10% → 20%) * 반사회적 범법행위인 뇌물공여, 담합입찰, 서류 위·변조(허위 서류 포함),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한정(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2호, 4호, 7호, 9호 가목) - (제재효력 승계) 양수도 및 법인 분할, 배우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을 막기 위한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할 것	자 및 직계혈족에 상속 등을 통한 제재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제재효력 승계 근거 마련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거부,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신설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입법 완료(3.20, 박대출의원) -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음 ○ 허위서류 제출로 우수제품이 지정될 경우 지정취소를 하고 있으며, - 추가로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하여 신청업체에 경각심을 부여('25.4월) ○ 인증·시험 소관 기관인 중기부, 민간시험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증·시험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25.5월)
5.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 제도 개선 ・태양광 발전장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지대에 대한 직접생산기준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중기부에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구조물 관련사항 개선 요청('24.5.10.) ○ 이와 별도로 직접생산위반 조달청 조사결과 실효성 제고방안('25.4월)을 마련하여 중기부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협의 중 * 직접생산 취소 요청 등에 활용되는 표준화된 서식 마련, 취소과정에 조달청 참여범위 확대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 간 조화로운 운영방안 마련 ·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공공분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기재부 협의 결과, 동 제도와 유사한 단품 물가조정제도 도입을 결정('24.12,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물품제조계약 단품 물가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중(~'25.12월) * 선박, 수배전반, 빌딩자동제어장치 각 2건씩 총 6건 시범 도입 완료(5~7월)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기준 등 마련('25.12월)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정('26.上)
7. 국가보안시설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 마련 · 특정 국가보안시설의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공사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공사현장에서의 업체관리는 수요기관 소관사항으로 조달청이 공사진행 단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2항 ○ 다만, 국가보안시설공사 관련 계약 시 체계적으로 설계도면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기준* 개정('25.10.28) * (훈령)「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 (주요내용) 수요기관이 보안상 비밀유지를 요청한 공사의 도면은 보안도면으로 구분·관리 * 보안도면은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요청하여 처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조달청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 강화 ·공공조달 시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입찰 시 환경성적표시인증(EDP) 제출 의무화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연구용역) 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EPD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최소녹색기준) 제품별 분류체계 및 인용규정을 개선하고 적용의무를 규정에 명확히 반영('26년) – (EPD) 현재 EPD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인증 취득률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인증 취득률 추이와 조달 경쟁성, 중소기업 부담을 종합 고려하여 품목별 단계적 도입 검토
9.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자체계약 건에 대한 관리 강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조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위법적 면세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자체계약 건에 대한 위법한 사항 발생 시 조달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한 건의 면세요건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나라장터에 공지하였음('24.10.24.~12.31.) **<폐기물처리용역, 교육용역 등 입찰공고 시 면세요건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58조 따른 **면세대상 사업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금액(사업예산과 추정가격)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세법해석질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면세요건 소관부처(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조달청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 조달청 공무직 채용에서 특정협회와의 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조달청 공무직 채용에서 특정협회와의 유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정부조달마스협회 출신 공무직 10명은 지원센터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임 *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서류 검토 등을 수행한 실무직원 – 조달청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11. 공공주택 계약의 부실 심사 방지 방안 마련 ·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공주택 계약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발주 일정을 조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5년도 사업 발주 물량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LH에 요청('24.11월), LH는 사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로 발주 물량 분산 통보*('25.2월) * '25년 시설공사 총 발주예정 물량(69건) 중 33건을 3월부터 8월까지 분산하여 통보 → LH는 7월까지 11건 조달요청 후 사업지연 등을 사유로 8월말 ~ 9월초에 37건을 조달요청 – 조달청은 부실심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 중 ○ '26년 공공주택사업은 분기별로 적정하게 발주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중소기업 지원강화	□ 시정·처리결과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간담회 등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구성하여 건의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 ('24년) 총 40여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624건 건의사항을 접수, 518건(83%) 과제를 수용하여 개선 ** ('25. 10월) 총 80여회 간담회 등을 통해 550건의 건의사항 접수 및 조치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유입을 위한 조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소기업 및 약자기업의 진입요건 완화를 위해 진입요건 완화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에서 납품실적 건수에 따른 평가 시 우대('25.6월) * 납품실적건수기준 중기업 대기업은 3건이상 점수 부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1건이상 점수 부여 - 적격심사 및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기업이 불필요한 인증을 취득하지 않도록 활용률 낮은 신인도 항목*을 폐지('25.6월)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항목 ○ (파트너십데이) 지방청별로 지역 소재 수요기관에 해당지역 제품 홍보 및 기업과 수요기관의 구매상담 기회 제공 ○ (공공조달길잡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본청 외에도 조달기업과의 현장 접점에 있는 11개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 전담관 지정 운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G-PASS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G-PASS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조달청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G-PASS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완료('25.7.1. 시행) - G-PASS 지정등급 기준 정비하여 참여 유도 * 일정 등급 이상이어야 국내조달 입찰가점 등 혜택 - 조달청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G-PASS 재지정 특례) * 조달청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실적을 낸 기업 대상 G-PASS 재지정 1차 심사 면제
14.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전략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법률·하위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며, 수출전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 및 전략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규정개정) 기업별, 국가별 수출금액 및 수출노력도를 분석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원제도(G-PASS) 개선 및 시행('25.7.1.) * 주요개정내용 : 수출노력 유도를 위한 G-PASS 등급 정비, 실태조사를 수출역량 진단으로 개선 등 - (사후관리 강화) '25년 전략기업 육성사업부터 사후관리 기간을 확대(6월→1년)하고, 전략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모니터링 실시

통계청
(現 국가데이터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물가지수 등 통계지표 체감도 제고 · 자가주거비, 신규 상품·서비스 등을 물가지수 품목에 반영하는 등 통계지표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소비자 기호 및 구매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품목, 가중치 등을 '25년 기준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기준년 개편을 추진 중 * '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계획 수립('24. 5.) <향후 추진계획> □ 대표품목 선정 및 가중치 개편, 자가주거비 포함여부 등 '25년 기준 개편결과 공표 예정('26. 12.)
2. 지역별 GRDP 작성 시기 개선 · GRDP를 예산안 및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 시기를 앞당길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지역별 GRDP 작성 시기 개선 ○ 지역소득 통계 시의성 강화를 위해 분기 GRDP를 개발하여 실험적통계로 공표*('25. 6.) *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 <향후 추진계획> □ 실험적통계인 분기 GRDP를 공식통계로 전환 예정('26. 12.)
3.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하여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개선과제 이행상황 정기점검(3월, 9월), 장기간 미이행 개선과제 특별 관리* 등 점검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을 독려 * 8월 추가 점검, 통계책임관 회의 개최, 기관 방문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개선과제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이행 시 시정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포함 ·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적절한 조사방식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자산의 포괄범위 확대를 위해 가상자산 조사를 추진 중 ○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조사의 한계 ○ 또한 분류기준 등, 법·제도 관련 국내외 논의가 진행 중으로 자료 안정을 위한 시계열 검토 필요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기존 조사방식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공동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자료 연계·활용 가능성 검토 예정
5. 통계작성 변경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 · 각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변경에 대한 통계청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승인신청 시점 합리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 완료(9월) ○ 비조사 통계(보고·가공통계) 변경승인 신청시기 : (기존) 자료수집 20일 전 → (개선) 공표 20일 전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교육·홍보를 통해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음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

6. 농가경제조사 작성 개선

・ 농가경제조사 표본 교체 시 지표의 연속성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인 농가를 포함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td><td>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1인 농가 포함 농가경제조사 결과

○ 1인 이상 농가경제조사 결과 공표*('25. 5. 23.)

* '23~'24년 농가경제조사 핵심 지표 우선적 작성·공표

<향후 추진계획>

□ 1인 농가 포함 농가경제조사 결과

○ 1인 포함 소득지표 단계적* 확대(~'28년) 공표

* 데이터 품질 확보를 전제로 공표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표본 교체 시 지표의 연속성 단절 방지 계획

○ 농가경제조사는 5년 주기로 농림어업총조사 모집단을 반영하여 표본을 개편함

○ 표본개편 후 '23년 조사 결과는 신뢰성 높음에 해당하나,

<(참고) 상대표준오차(RSE) 신뢰도 수준>

<table>
<tr><th></th><th colspan="2">RSE < 30%</th><th>30% ≤ RSE < 60%</th><th>60% ≤ RSE</th></tr>
<tr><th></th><th>표본수(n) ≥ 10</th><th>표본수(n) <10</th><th></th><th></th></tr>
<tr><td>해석</td><td>신뢰도 높음</td><td>신뢰도 다소 낮음</td><td>신뢰도 다소 낮음</td><td>신뢰도 낮음</td></tr>
</table>

○ 향후, 변화하는 농촌현실 반영도를 높이는 보다 세밀한 모집단 분석과 표본설계('27년)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개편 1년차('28년) 조사 시 정확한 현장조사와 품질검증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

</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통계 발표 시차 및 주기 단축 · 통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포괄적 연금통계 등 발표 시차가 18개월 이상인 통계의 발표 시차와 5년 주기의 생활시간조사 및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통계 작성 주기를 단축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연금통계 공표시기 단축 ○ 통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24년도에 연금통계 공표시기를 단축*하였음('24. 8.) * 공표주기: 익익년 10월 → 익익년 8월(2개월 단축) <향후 추진계획> □ 연금통계 공표시기 단축 지속 노력 ○ 통계생산 단계별 불가피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표 단축의 어려운 점은 있으나, 자료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표시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5년 주기인 생활시간조사는 그간 통계의 시의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주기 단축과 조사 횟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옴 * '24년 제6회 조사에 '봄' 추가, 기존 3회→4회로 확대 ○ 향후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를 적기에 포착하고, 정책활용성 높이기 위해 조사 주기 단축(5년→3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주기단축의 기반 마련에 필요 예산확보 및 인력증원을 위한 관련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26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국민이전계정 공표시차 2개월 단축 ○ 국민계정(익익년 6월 공표)을 활용하여 11월에 공표하던 국민이전계정을 '25년에는 9월말에 공표 <향후 추진계획> □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26년 공표 예정이며, 공표 시차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 주기는 기초자료인 생활시간조사의 작성주기에 따라 작성됨
8.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계 확충** ・ 통계청은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통계를 확충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인구감소지역(89개)*의 생활인구 작성 및 제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89개 자치 시군구 ○ 인구감소지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함 □ 지역인구 주요 지표 7종*에 대한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제공 중 * 인구수,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인구비율, 청년인구비율, 청년순이동률, 추계인구, 생활인구
・ 지자체가 생산하는 지역특화통계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작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지방청(지청)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통계 컨설팅, 생산대행,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특화통계 생산지원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매년 지자체 대상 지역통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역통계 개발 및 지원 실시 * 지역통계 생산대행,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SDC 기반 작성지원 등 지자체가 필요한 신규통계 개발 (개선)수요 파악 □ 지역통계 관련 기관 간 공식적인 소통·협업의 장 운영으로 지역통계 확산 및 활성화 추진 ○ 지역통계발전포럼('25. 6.), 중앙-지방지역통계협의회('25. 12.), 열린소통회의('25. 3., '25. 9.) 개최 등
9. 안전한 통계 조사 환경 조성 ・ 통계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및 위험 지역 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통계조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조사, 안전유의지역* 방문 시 동료(2인 1조)와 동행 출장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운영지침(훈령) 및 내부 매뉴얼에 규정 *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철거 지역 등 ○ 동행조사 확대를 위해 '25년 상시출장여비 증액('25년 1.9억 원 증액)
10. 조직 및 운영 개선 ・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용역계약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25. 11.) ○ 기존 고시가 위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이 일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단독 수행 여건이 부족한 중소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개별 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확대하였음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개정('25. 11.)> <개정 전>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① 통계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별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 □ 아울러,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및 행위제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 퇴직자가 재취업한 일부 기관(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정보원(기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한 행위제한(업무취급제한) 규정 준수를 위해 '22년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취급 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9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재취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 필요 ·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소외계층을 살펴보고자 고립·은둔, 다문화, 이주배경, 옥탑·반지하, 장애인 등 다양한 통계 개선·개발을 추진 □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기존 조사 개선 ○ 사회조사에 외로움, 외출 등 신규 문항을 추가하여 고립·은둔 관련 현황 파악('25. 5.)·공표('25. 11.)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등록센서스) 취약계층 항목 공표 확대 * 옥탑·반지하 공표, 장애인 통계 공표범위 확대 및 장애정도별 장애인 1인 가구 등 신규 공표('25. 7.)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전 연령 인구를 포괄하는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통계 공표 예정('25. 12.) ○ '2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부문) 가족돌봄 청소년(영케어러) 파악, 비혼동거 항목 신규 조사('25. 11.) ※ '26년 11월 말 공표 예정
12. 타 기관 통계와의 정합성 필요 · 통계청과 타 기관 간 거시경제 지표가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 지표가 정합성을 가지도록 개선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산업활동동향은 타 기관 통계 지표(GDP 등)와 작성 목적 및 측정 범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자 목적에 따라 각각의 통계를 의미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언론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한국은행과 정합성 제고 관련 업무협의를 실시함 * 기자간담회('25. 5. 14), 신입기자 교육 ('25. 9. 11), 경제통계 협력협의회('25. 5. 16.) ○ 통계 이해도를 높이는 충실한 브리핑 및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13. 출산율 추계의 정확성 개선 필요
・ 통계청의 출산율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계 모델을 변경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d><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인구추계 모형 개선방안 종합 검토 중
ㅇ 최근 출생 추이 반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계 모형 개선 지속 검토
*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및 시도 인구추계 개선방안」 정책연구('24. 12) 수행
ㅇ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도 고려하는 추계 모형에 대한 기초 연구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개선 모형 적용('26. 12. 공표)
ㅇ 모형 개선과 함께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제공 예정</td></tr>
<tr><td>14. 60～64세를 포함하여 연금통계 작성 필요
・ 통계청의 연금통계에서 제외된 60~64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것</td><td><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23년 연금통계 작성 개선계획 수립('25. 5.)
ㅇ 60～64세 연령대를 추가한 연금통계의 포괄범위 확대*
<연금통계 포괄범위 확대(안)>
<table>
<tr><th>작성대상</th><th>기 존</th><th>개 선(확대)</th></tr>
<tr><td>수급자</td><td>65세 이상</td><td>60～64세(추가) + 65세 이상</td></tr>
<tr><td>가입자</td><td>18～59세</td><td>18～59세 + 60～64세(추가)</td></tr>
</table>
□ '23년 연금통계 작성결과 공표('25. 8. 25.) 및 자료 제공('25. 9. 24.)
ㅇ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결과를 보도자료 본문에 수록·공표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사회적 고립도 조사 실시 필요 · 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고립도에 대한 종합적·지속적·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고립·은둔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2025년 사회조사에 외로움, 외출 등 신규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5월) ○ 2025년 사회조사 결과는 '25. 11. 공표 예정 <향후 추진계획> □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 * 신규문항이 포함된 「사회참여」 부문은 2년마다 조사(홀수년도)
16. 가계부채 관련 통계 개선 필요 · 가구별 가계부채 DB를 조속히 구축하여 분기별 공표를 하거나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등 가계부채 통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기존 가계부채 통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 가계부채통계 승인 ○ 「통화금융통계」에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분기 작성) 추가하여 변경승인('25. 9. 2.)
17.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는 지수 개발 필요 · 경제지표 외에 국민행복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삶의질 지수 또는 국민행복지수 등을 개발하고, 해당 지수의 분야별 비중 결정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국민 삶의 질과 행복 측정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중임 ○ 중립성이나 가중치 부여 등을 고려하여 종합지수는 작성하지 않으며, ○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해외 통계청에서도 종합지수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는 사례가 일반적임 □ 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지표를 작성 중임 ○ 사회변화와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지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25년 아동청소년 및 청년 대상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였고, 26년 고령자 삶의 질 작성 계획임
18. 자산불평등에 대한 통계 개발 및 기후위기에 대한 분석 필요 ·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결혼율·출산율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고 기후위기가 경제 및 소득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등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개인의 '혼인·출산'과 '경제·사회적 특성' 및 '정책제도 효과'를 상호 연계한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추진 * 국가통계(제101094호) 작성 승인('25. 7.) ○ 거주지, 취업활동(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 등 경제·사회 특성별 생애사건(미혼→혼인→출산) 유지·이행 비율 분석 <향후 추진계획> □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 제공('25. 12.)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계개발은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안으로 범정부 협력이 필요 ○ 현재, 국내 기후 관련 통계 생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 * 기후취약계층실태조사 '25년 시범조사, '26년 본조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후변화 지표 프레임워크 기반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중 ○ 동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5대 영역*의 하나로 취약성 영역을 다룸 * 원인, 영향, 취약성, 완화, 적응 <향후 추진계획> □ '26년 초에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보고서' 발간 예정
19. 통계조사원 처우 개선 필요 ・ 통계조사원들의 불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우수조사원 확보 및 중도 포기 방지 등을 위해 '24년부터 도급조사원 현장조사 교통비 지급 중 ○ 도급조사원 대상 업무만족도 조사와 중도 포기 사유 등을 파악·반영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 개선 노력 필요 ・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통장을 명예 통계조사원으로 위촉하는 등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높은 불응률에 대응하고자 예비가구를 활용한 표본가구 대체, 불응설득반 운영, 2인 1조 동행출장 및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 노력 실시 중 ○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7,200가구 대비 조사 완료한 표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 유효표본 비율(%) ^{21년}66.4→^{22년}68.2→^{23년}70.6→^{24년}73.1 ○ 아울러, 지방청에서는 이·통장 대상으로 통계조사 설명, 협조 요청 및 홍보 실시를 통해 응답률 제고 노력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응답자 편의성 증대를 통한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조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5년) * OCR자료 인공지능 통계분류시스템 개발 <향후 추진계획> □ AI기반 자동항목분류 기능 시스템 적용 및 광학문자인식(OCR)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 추진('26년~)
21. 외국인 사망자 관련 통계 생산 필요 ・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사망자 관련 사망원인별, 체류자격별, 국적별 통계를 작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작년 국감 이후 법무부가 「외국인 사망통계」 현황들을 향후 공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 외국인 사망관련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집·관리 중 * 외국인 사망자료 관리 현황과 외국인 사망통계 작성 및 공표여부 논의('24. 12. 17., 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참석) □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사망통계」 작성 및 공표에 대해 내부 검토 중으로 확인('25. 10. 17 유선확인) ○ 등록외국인 사망자 집계는 가능하나 사망원인통계 작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업무협조를 검토 중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이민정보과)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에서 사망원인 등 작성기법 관련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IMD 국가경쟁력지수 관련 검토 필요 · IMD 국가경쟁력지수 인용 시 왜곡 등 발생한 오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e-나라지표는 국정모니터링 관련 748개 지표의 데이터를 시의성 있고 정확하게 관리·제공하고 있음 ○ 다만, 국가경쟁력지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면서 지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 재정건정성 순위를 단순히 막대그래프로 시각화 □ 이에 e-나라지표 전체 지표를 점검하고, 지표 특성에 부합하는 그래프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24. 10.) * 순위로 표시되는 지표의 경우, 막대그래프에서 꺾은선 그래프로 변경하고, 상위 순위가 높게 표시되도록 수정 <향후 추진계획> □ 향후 e-나라지표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적절한 그래프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겠음

한국은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의 병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응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가 요구되나 부동산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전재정 정책으로 취약계층과 취약 중소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시행을 검토할 것	□ 지난해 10월 이후 통화정책은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은 추경 등을 통해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음 ○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24.10월·11월·25.2월·5월)에 걸쳐 3.5%에서 2.5%로 1%p 인하하였음 ○ 재정도 금년 두 차례 추경(25.5월·7월)을 통해 총지출을 30조원 증가시키면서 건전재정 기조에서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였음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임 □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도 경기대응 효과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위주의 시장이라 금리의 변동이 가계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금리 시 가계부채 문제가 커진다는 점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	□ 정부 및 감독당국의 노력 등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증가 추세 ○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 ○ 또한,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위험이 DSR 산정시 반영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및 시행(24.2월~25.7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도록 유도하였음 □ 우리나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나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및 감독당국 등과 함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 제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에 물가와 성장 이외 신용변수를 추가하는 등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성장과 금융안정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안정도 고려한 신축적 통화신용정책을 운영 ○ 실제로, 2024년 들어 물가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이어갔음에도, 금융·외환시장,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긴축기조를 유지 -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완화되었다 판단하여 '24.10월부터 정책기조 전환 □ 최근 정책목표에 신용변수를 추가하자는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가 제안된 바 있으나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정도로 논의가 발전되지 않음 ○ 또한 금융안정을 주요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신용변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보다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도모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글로벌 논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경제전망 오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해마다 경제전망의 오차 발생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오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전망을 개선·보완할 것 산업 전문가의 배치·영입·육성을 통하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것	□ 한국은행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경제 흐름을 매분기마다 전망하고 있음 ○ 다만 경제전망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전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조건부 전망이기 때문에, 여건이 변하게 되면 기존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예컨대 2020~21년 중에는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충격으로 전망오차가 비교적 컸으나 이후 2022~24년 중에는 전망오차가 축소 □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음 ○ 새로운 모니터링 지표 확충 등을 통해 경기판단과 단기예측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전망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전망 체계를 꾸준히 개선중 ○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주요 현안과 관련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도모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사교류를 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산업 전문가를 채용하여 관세영향 및 산업구조와 관련한 연구를 추진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美관세정책,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등으로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전망 정도 제고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개선 경제전망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신뢰성을 떨어뜨려 경제정책의 효과를 줄어들게 하므로 현실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은행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립적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전망 정도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지표 확충, 경제전망 체계 개선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2023.5월 이후 시나리오 분석을 공개하고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2024.8월부터는 분기 전망경로를 공개하여 전망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美관세정책,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등으로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전망의 정도 제고를 위해 전망 프로세스 개선, 모형개발 및 기초데이터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탈달러화 트렌드 등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환을 다변화하고 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중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투자다변화를 추진해 왔음 ○ 또한 연간 운용계획 수립 시 외환보유액 및 국부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외화자산의 통화 및 자산구성을 결정하고 향후 금 운용방향을 점검 □ 앞으로도 외화자산 투자다변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국제금리 및 환율의 중장기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통화 비중을 구성하겠음 ○ 아울러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 국제금융시장 상황, 금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금 추가 매입을 결정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대외변동성 대응 방안 마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트럼프 당선,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외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에 한국은행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	□ 한국은행은 특정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지만, 높은 환율 변동성은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 특히 작년 10월 이후에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국내 정치불확실성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된 바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를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왔음 □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에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도 실시하였음 *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25.2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발행 외화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허용(25.6월)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 등 실물경제 흐름과 환율 및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임 □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정부와 함께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외환제도 및 외환시장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외환·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대정부 일시대출금 활용에 있어 부대조건 준수 정부가 금통위가 의결한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활용을 늘리고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및 부대조건에 부합하게 재정증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우선 조달하도록 촉구할 것	□ 한국은행과 정부는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세입·세출간의 일시적인 불일치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중 ○ 24년 일시대출 평잔(6.1조원)이 재정증권 평잔(8.4조원)을 하회, 25년(10월말) 일시대출 평잔(7.1조원)도 재정증권 평잔(9.3조원)을 하회 ○ 평균 차입일수(24년 13.5일, 25년 13.9일)는 재정증권 만기(통상 63일)를 크게 하회 ○ 한국은행과 정부는 매주 정기적으로 다음주 차입 및 상환 일정·규모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일시대출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해줄 것을 지속 요청 □ 한국은행은 일시대출이 정부의 기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지 않고, 「한국은행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총칙」에 따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한국은행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승인범위 축소, 법인세 부과 면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은행은 급여성 경비예산 편성, 법인세 면제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왔음 ○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한정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4.6월)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협의 ○ 한국은행 소득에 법인세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2025.2월)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협의 □ 앞으로도 급여성 경비예산,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한편 공공성과 책임성에도 유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에서의 논의에 충실히 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자영업자를 고려한 가계 대출비율축소 방안 마련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통제가 필요하나 획일적인 기준으로 무리한 축소를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대출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부채는 그간 정부와의 정책공조 등에 힘입어 GDP대비 비율이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관리되는 모습 ○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만큼,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향 안정화 노력을 계속 이어갈 필요 □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미시적인 보완대책으로 관련 리스크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음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및 감독당국 등과 협력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자영업자 관련 대출 및 연체율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부 및 감독당국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관련 정책 수립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된 부동산 정책 실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어있어 통일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시장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실시할 것	□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하는 등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가 지속되어옴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 현상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각종 협의체에 참여하여 관련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왔음 □ 향후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정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 ㅇ 중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나가는 것도 검토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주택시장 차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핀셋 및 타겟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데 10년째 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릴 것	□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의 총 한도, 금리는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조정 ○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금중대 한도를 세 차례 증액(18조원) ○ 이후에도 금중대를 통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운용하면서 긴축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신설 ○ 다만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14년 이후 한도가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2월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11.2조원을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보완 □ 금중대가 대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나가겠음 ○ 향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종료 시기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조정 필요성 등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위규대출의 방지 위규대출 방지를 위하여 한국은행 본점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심사결과를 이중으로 점검하고 감사실이 사후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한국은행은 지역본부가 수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심사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와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2024년 6월) ○ 본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심사와 사후 실물서류 대조·검증을 통해 중층적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잔액대사, 휴·폐업·부도업체, 지원한도 초과 여부 등에 대해 점검 □ 또한 은행의 금중대 취급 과정에서의 위규 방지를 위해 제재조치를 강화 ○ 서류 위변조 시 한도 전액 감축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 배수를 최대 3.5배까지 확대(24.9월) ○ 중과실 발생시 벌칙금리 신설(26.1월) □ 한국은행 감사실은 금중대 부실 심사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관리기록부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 ○ 24년 국정감사 이후 금중대 부실 심사는 없으나, 향후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점검하겠음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중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 ○ 국세청 등 외부기관 정보를 활용해 지원요건을 신속·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중개 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재 정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EU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팩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왔음 ○ 금중대 금리를 24.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1.0%p(2.0%→1.0%)인하 ○ 25.2월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25.7월중 최초도입분 9조원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 (현재 총 한도 14조원의 운용기한은 26.1월까지) □ 한편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25.3월)하여 시행 ○ 중기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해 금중대 배정 차감규모를 확대하고 준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 □ 앞으로도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 업황 및 자금 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추가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금중대 운용 방향을 고민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중기비율 제도는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보아가며 향후 은행의 중기대출 취급 확대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검토 대출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저리·장기로 빌려주는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출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산을 늘리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ㅇ 그간 가계부채 누증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가계대출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연체율도 꾸준히 상승 □ 따라서 정부에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들 취약차주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취약차주 관련 대출 및 연체율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부 및 감독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 정책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제도 정비 및 제반 환경 조성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 내역 조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시스템과 관련한 신뢰도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의 신뢰성, 안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참가기관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 —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고객의 동의없는 개별 거래기록 접근을 제한 — 금융보안원 및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성 검토 실시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익명성, 거래기밀성 제고 등을 위한 기술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 ○ 정보소외계층(노령층, 시각약자 등)의 디지털화폐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앞으로도 디지털화폐 상용화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소외계층 접근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지역거점국립대학 육성방안 마련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거점국립대학 육성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할 것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외부전문가와「지역거점대학 육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시사점」을 작성하여「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25.7월)」에서 발표하고 25.9월 최종보고서를 공개 ○ 동 보고서는 지역경제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거점대학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대학이 지역경제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초광역 단위의 대학 육성 전략 수립 등을 제시 □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조사·연구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 수행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정책 검토 거점도시 중심 발전이 총생산이나 고용에 효과가 있지만 지방 소도시를 포기하는 관점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 ○ 그간 균형발전정책이 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원이 다소 분산되어 정작 지역거점에 대한 투자는 과소했던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 ○ 이는 특정지역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 □ 당행 지역본부 역시 지역내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지역본부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 강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 제반의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구 검토가 필요한데도 지역본부의 연구 인원이 부족하거나 특정 지역본부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시 지역본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 수행,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역내 싱크탱크로서 역할해왔음 ○ 아울러 자체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연구기관과 활발히 협력하며 지역경제 연구 거점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역본부 장기근무 종합기획직원 채용·배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밀착한 연구인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22년에 신입직원(G5) 채용시 지역전문 부문을 도입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지역전문 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중 ○ 또한 조사국 지역경제부가 컨트롤타워로서 본부와 지역본부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 및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지역경제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한 조사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 o 또한 우수 연구인력 확충 등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목표 추가 고려 정부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정책에 접근하기에 중립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한국은행이 이를 담당하도록 책무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용안정은 한국은행의 명시적인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 운영 시 주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늘 염두에 두고 있음 □ 하지만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 확대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용안정 목적 달성을 위한 대응 시 물가 및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 본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고용안정을 목적 조항에 추가로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안정이 저해될 수 있음 □ 다만 한국은행은 고용상황이 물가,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한국은행의 내부 조직 구조 개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개방형 고위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고 한국은행 내부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은행 지역인재선발제도의 경우 지방인재 채용 목표 인원 자체도 미미하며 그마저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채용 목표 인원을 높이고 이를 달성할 것	□ 한국은행은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성 제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지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외부 인력 유입)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화를 위해 외부 전문·경력직원을 꾸준히 영입 ○ (여성 관리직 비중) 한국은행은 과거 여성 입행자 수가 너무 적었다는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여성 고위직 증원을 위해 노력을 지속 □ 한국은행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2011년) 이후 지방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지역전문 부문 채용제도 신설(2022년), 지역 순회 채용설명회 실시(2023~25년) 등 지방인재 채용 노력을 보다 강화한 결과, 금년도에는 지방인재 목표 비율을 최초 달성 ○ 그러나 지방인재 목표 비율 달성이 아직 한 해에 불과하고, 최근 지방인재 채용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목표(20%)의 상향 조정보다는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보다 긴요한 상황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직의 다양성 제고, 지방인재 채용목표의 안정적 달성 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국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방안 마련 한국은행 평판조사 결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기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경영정보 공시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할 것	□ 한국은행은 금리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은행이 되도록 노력 ○ 분기별 경제전망 발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에 대한 주관 금통위원 메시지 신설, 구조개혁 보고서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자료 작성·대외공개 ○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 및 조사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대국민 소통 노력을 한층 강화 □ 2024년 한국은행 평판조사(2025.2월 실시) 결과 종합평판에 대한 긍정 응답이 53.5%로 나타나 전년대비 9.6% 상승 ○ 신뢰도 및 친근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도 각각 65.9%, 40.8%로 전년대비 18.2%p, 18.5%p 상승 □ 한편 한국은행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및 내부 규정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음 ○ 총액 및 집행건수만 공개되던 업무추진비의 집행건별 상세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는 한편, 기관 내부규정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확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금융통화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다양성 확보 금융통화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금융통화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이 학력, 성별 등에서 편향된 측면이 있기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	□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한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제약하고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 ○ 금통위 의사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도 정책 결정과 관련된 개별 금통위원 견해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정내용과 그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표결내용도 당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의사록은 주요국보다 빠르게 공개하고 있음 ○ 최근에는 주요 보고서 공표시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위원이 실명으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개별 금통위원의 기자간담회를 매분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민과의 정책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비은행 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소기업 건설 분야에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기에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권, 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등을 활용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해 왔음 ○ 비은행권 부동산PF 대출 등 다양한 금융안정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 *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영향 및 관련 잠재리스크 점검」(금융안정보고서, 24.12월), 「비은행금융기관의 유형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금융안정보고서, 25.6월) 등 ○ 부동산PF 구조조정 등 비은행 관련 현안 이슈를 협의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공조도 강화 □ 앞으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시의성 있고 정도 높은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비은행권 자료 확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 한국은행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 지양 한국은행의 방만한 사내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무소장 및 사무소 소속 선임 주재원에 대해 주택 임차료를 외교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임차료로 조정할 것	□ 한국은행 사내대출제도는 이용 직원 대다수가 무주택 혹은 가정형성기의 하위직급인 점 등을 반영하여 주택자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생활안정자금은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적용 ○ 다만 채권보전비용을 직원이 직접 부담하게 하고 대여금리와 인정이자율간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 도모 □ 한국은행은 해외근무 직원에게 재외공무원 주택 임차료 수준을 기본으로 현지 시세, 예산 등을 고려하여 주택 임차를 지원하고 있음 ○ 24.6월 주택임차 면적 상한 규정 신설, 25.1월부터는 선임주재원 가산제도(30%) 폐지, 동거가족 수에 따른 차등한도 신설 등 지원 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조정 □ 앞으로도 사내대출, 해외근무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 수준 등이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위조지폐 방지대책 마련 위조지폐 활용으로 인해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및 고령층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위조지폐 유통 관련 통계 및 법적 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	□ 최근 한국은행권 위조지폐 발견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정교한 수준의 위폐 유통은 감소하고 조잡한 수준의 위폐를 SNS를 통해 판매하려는 시도가 적발 — 일부 언론에서 '위폐 대량 제작 및 유통' 등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판매 등 유통 시도 초기에 검거된 사례로 실제 사용된 것은 아님 ○ 한편 일반 국민이 위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규모는 실제로 유통된 물량을 집계하는 한국은행 위폐 통계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 □ 2024년 국감 이후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상그룹별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홍보 효과를 크게 개선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위폐 유통 시도 사례 소개 팜플렛 배포, 고령층 등 사용자그룹별 편의성을 개선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개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방송프로그램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출연 등 □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폐 제조 및 유통 방식 변화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7. 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 중앙은행이 사회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구조개혁 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한국은행은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음 ○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 균형발전, 생산성 제고, 금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확대 ○ 연구 결과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활성화 □ 앞으로도 구조개혁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제언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8.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통한 가사도우미 제도 확대 일·가정 양립을 해야 하는 가정들이 최저임금의 상승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기 어렵기에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	□ 가사 및 육아 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생 등의 문제를 초래 □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간하여 가사 및 육아 서비스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동 보고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의 2가지 방안을 검토 ①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음 ②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식 □ 다만 이러한 방안이 도입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가사 및 육아 서비스 부문의 높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녹색채권 발행의 확대 녹색채권 발행 확대를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활성화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것 한국은행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여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	□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발행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정기회의 및 수시면담 등을 통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계당국과 공유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업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녹색채권이 원활히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녹색기업 지원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0.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이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법적 책무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를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할 것 매입자산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유럽중앙은행처럼 적극적인 탈탄소화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은행이 기후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기관들의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공시 차원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 한국은행은 당행에 부여된 책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정책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책목표(물가·금융안정)와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주요 과제로 설정할 경우 본연의 책무 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한편, 한국은행은 공적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화자산에 대한 ESG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 ○ 외환보유액 감소세, 최근 글로벌 ESG 부채 발행 감소, 일부 국가의 ESG 투자 축소 움직임 등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 □ 또한, 금융사 등이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녹색금융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당국에 관련 정책을 제언 □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서는 최종안이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되, 국내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1. PF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계획 마련 부실한 부동산 PF 정리의 지연이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금리 인하로 PF 대출이 늘어나면 부실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 및 재구조화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한편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으로의 신규자금 공급은 지속 □ 또한 중장기적 시계에서 PF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PF대출 부실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강화 □ 앞으로도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는 신속히 진행하되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 과정에서 지방 및 非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노력해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2.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에 대한 용역 검토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정책이 내수 확대를 위해 일률적으로 진행할지 타겟팅하여 진행할지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정책연구를 검토할 것	□ 지역상품권의 효과는 가용 데이터 입수와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 다만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소비에 미친 영향(2020)」을 통해 지역상품권 발행이 지역내 소상공인 매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역외소비 유입 감소 등에 따른 단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여타 선행연구들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향후 지역상품권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연구가 가능하도록 가용 데이터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3. 국가 총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나 총량 관리에 실패했기에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책임감을 가지고 질적 또는 양적으로 일관된 부채 관리 정책을 추구할 것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민간부문 부채는 높은 수준을 지속 □ 이에 따라 민간부채를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한편, 정부부채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겠음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통화정책 운영시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판단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민간부채 및 정부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를 국회, 정부 및 감독당국 등과 공유함으로써 바람직한 부채 관리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특히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계부채의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질적 구조도 개선하는 한편,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정부 및 감독당국 등과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4.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검토 교육 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가계 부채 증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나 기계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면 억지스러운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	□ 우리나라의 입시경쟁 과열이 여러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가운데,「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다채로운 인재를 육성할 필요 □ 합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ㅇ 대학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 ㅇ 지역별 선발인원에 상하한을 설정 ㅇ 고교 기숙사 거주생 등 특이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ㅇ 대학이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시 자율권 보장 □ 다만,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 고착된 균형을 깨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한국수출입은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대규모 방산 수주 위한 수은 내 전담조직 구성 및 특화된 금융지원 수단 개발 국내기업들의 대규모 방산 수주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 내 방산 수출금융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수단을 개발할 것	□ 수은은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 '21.1월 방위산업팀을 신설 ○ 또한 '24.1월 전략수주지원팀을 추가 신설하여 방위산업팀과 함께 방위산업 전담 지원 중 □ 향후 방산 금융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증원 및 조직 확대를 검토할 예정 □ 방산 등 전략수주분야 지원 강화를 위한 "초대형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 신설('24.7월) 및 확대('25.2월) * 금리 우대, 5년('25~'29년)간 총 85→95조원 지원계획 확대 등 ○ 전·후방산업 지원 및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방산 수출생태계 경쟁력 강화
현재 납입자본금 수준으로는 폴란드 방산수출에 충분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주단을 구성하고 은행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 대규모 방산수출 금융지원 관련 국내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방산수출 지원을 추진중 ○ 폴란드 방산 수출 지원에 국내 상업은행과 공동지원 협의중 □ 한편, 폴란드의 경우 수은의 한도소진 우려가 있었으나, '24년 수은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이 확대 되고(15조원→ 25조원) 점진적으로 출자가 진행되어 금융소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특정 계열에 편중된 동일 차주 신용공여 관리 철저 특정 계열을 대상으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여신이 균형있게 공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 수은은 시행령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조항을 준수하여 특정 계열앞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중 ○ 내규상 신용공여한도 집중관리절차를 두어 동일 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리스크관리 전문위원회 등 추가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수은은 시행령상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상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내규상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최근 10년 이내 신용공여한도 예외승인 사례는 한화계열의 대조양 기업결합 관련 1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대출·보증 연계 직접투자 규정 개정 및 펀드출자 제약 완화 검토 수출입은행이 대출하고 보증과 연계되어서만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해소하여 해외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벤처케피털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투자 관련 수은법 개정안 통과시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및 유망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 사업 발굴 및 투자 예정 □ 또한 우리기업의 신기술 확보, 신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 및 수주저변 강화 지원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 예정 ○ ('26.上) 관련 내규 정비 후 ('26.下~) 정기출자 사업 공고시 벤처투자 문 신설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방식 다양화 수은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계정이 분리되어 별도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자금의 중복지원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수은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간 공동·연계지원을 통해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관련 법상, 수은금융은 수출,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 중심 지원, 기금은 수입대체 등 국내거래와 정책지원 필요성이 큰 일부 대외거래 지원으로 운영목적 및 대상이 구분 ○ (상호 협력) 수은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간 일부(광물수입, 해외생산 등)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동지원 및 역할분담으로 지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방식 다양화(계속)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따른 지원방식을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출자 등 다른 영역으로 넓힐 것	□ (지원 다변화) 법 개정 등 제도적 제약사항 개선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외 투자 활성화등 기금지원 다변화 및 효용성 제고 추진 ○ 수은의 기금 앞 출연 및 직원 면책근거 마련, 투자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포함 등 법 개정 대응 ○ 투자기간 확대(10년→20년), 투자회수시 회수조건 완화, 펀드 출자시 최대투자자 제한 폐지 등 제도 개선 협의 추진
5조원 규모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과정에서 위험성 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내실 있게 기금을 운영할 것	□ (리스크 관리) 수은에 축적된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활용, 기금 손실 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지속 ○ 기금은 대상사업 확인, 금융심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최종 심의 등 단계별 전문성·객관성 기반 지원절차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면밀한 관리 유턴기업 49개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규모가 2조 5천억원을 넘는데, 실제 돌아온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현행 유턴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실질화 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 계획 ○ 또한,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유턴기업 지원 제도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예정
유턴기업 지원사업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후관리를 공조하고 자금 회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산자부 및 코트라 등에서 복귀 및 이행점검 등 담당하나 수은도 산자부 인증취소 여부 및 국내 복귀계획 이행결과 확인 등 자체 사후관리 정기 실시 중* * 수은 지원중인 유턴기업 복귀상황에 대한 별도 확인 완료('24년 하반기 및 '25년 상반기) ○ 향후에도 유턴기업의 조속한 국내복귀 독려를 위해 조업미개시 기업에 대한 복귀 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중소기업 등 지원강화	
수출팩토링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조건 차등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방안 마련('25.1월), 시행 중 ○ 중소기업 수출팩토링 지원규모 확대 중* * 지원액(억원) : ('24)101 → ('25.10)440
히든챔피언 사업자 선정이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세울 것	□ 연 매출액 1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은 히든챔피언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24.11월 제도개편 완료 ○ 제도개편 후 매출액 1조원('24년 회계연도 기준) 이상 기업 10개사에 대해 히든챔피언 취소 처리 완료('24.11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중소기업 등 지원강화(계속)	
수출입과 해외 진출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나 ESG 금융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을 보다 지원할 것	□ 수은은 다양한 ESG 금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SG경영을 이행하는 중소기업 앞 우대금리 지원중임. ○ '25년 안전경영 우수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는 금융우대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
RG 발급이 대형 조선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 조선소에 대한 RG 발급을 확대할 것	□ 국내 중형조선사의 일부 선박 수주건 지원을 위해, '25.12월 중 RG 발급 재개를 위한 최종 심사절차 진행 중(총 2건 예정) ○ 향후에도 조선사의 무리한 저가 수주와 부실위험은 점검하되, 수은 앞 RG 수요 발생시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을 적극 검토 예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높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여신정책을 펼칠 것	□ '25년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등 적극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증가* 추세 * '25.10월말 기준 10조원(전년 동기 9.6조원) ○ 수출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폭 확대(최대 △2%p) □ 유관기관(무역협회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정책금융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은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중소기업 고객수 증가* * '24년말 3,982개 → '25.10월말 4,219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내실화 수은은 추가적인 신규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고, 금융지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구체적인 관리 목표를 조속히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 수출입은행의 탄소배출량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배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사무기기 도입 확대 및 외부감축사업 폭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 정부의 해외 석탄화력 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21.4월) 이후 석탄화력 발전사업 신규승인 중단 ○ 신규 화석연료 투자 관련 한국의 수출산업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분야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 □ 수은은 정부(환경부)의 탄소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아래와 같은 노력 지속 예정 * '30년까지 탄소배출량 37.4% 이상 감축 ○ K-RE100 가입('25.2월), 재생에너지인증(REC) 시범구매('25.10월) 및 REC 외 추가 감축방안 검토 중 ○ 추후 친환경차량 구매, 친환경・저에너지 시설* 구축(건설시) 등을 통해 탄소 감축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금년 완공('25.4월)된 당행 IT센터의 경우, 녹색건축(우수) 및 에너지효율(1++) 취득 □ 수은은 '25년 금융배출량 측정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진행하였고, '26년중 전산시스템을 구축 예정 ○ 금융배출량 측정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이후 정부 공시지침, 기업 배출량 공개 추이 등을 감안, 금융배출량 목표수립 검토할 계획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EDCF 사업 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ODA 지원이 필요하고, 개도국 고부가가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면서도 수원국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수 가능한 나라에 대해 승인할 것	□ (처리결과) '24년 16개국 22개 사업에 대해 4.9조원 승인 ○ 1억불이상 사업 승인 비중을 총 승인금액의 83.7%로 확대하는 등 대형사업 지원 지속 □ (추진계획)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및 공급망안정화 등 상생형 경제협력을 위한 EDCF 중점분야 우선 지원 ○ (기후변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 ○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에 AI 기반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 패키지 지원 ○ (공급망) EDCF 공급망 협력사업을 우선 발굴·개발하고, 정책금융 등과연계 지원 추진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EDCF 사업 관리 강화(계속)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ODA 지원이 필요하고, 개도국 고부가가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면서도 수원국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수 가능한 나라에 대해 승인할 것(계속)	□ EDCF는 차관사업 심사 시 수원국 채무불이행을 사전 방지하고자 수원국의 정치 및 경제상황 등을 검토 중 ○ IMF·WB의 채무지속가능성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채무고위험국 사업 지원 시 사업심의 전 '지속가능채무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별도 심의해오고 있음. * 저소득국가 채무건전성을 검토하여 낮음, 보통, 높음, 채무불이행 4단계로 위험등급 분류 □ 차관 상환이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차주국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3개월 이상 상환 지연 시 해당 사업을 특별관리사업 분류하고 자금지출 중단 등 관리·감독 중 ○ 다만, 대외채무상환 중단 발표 등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의 사업인 경우 즉시 특별관리사업으로 분류
EDCF 사업 대형화에 따라 공여국 신용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국가별 자본조달상황과 신용상황 파악 등 리스크에 대응할 것	□ IMF·WB에서 발표하는 채무지속가능성 분석 결과 위험등급 악화 시 해당 국가의 자본 조달 상황 및 신용상황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현황을 중간점검하는 제도 개선 검토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EDCF 사업 관리 강화(계속)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해 선정될 경우 수출입은행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EDCF는 수원국 정부와 기금사업 참여자들로부터 '구매와 컨설턴트 고용과 관련된 윤리헌장' 서명본과 '경협기금 지원사업 참여 관련 확약서' 서명본을 각각 징구하여 윤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부적절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매가 이뤄졌을 시, EDCF는 차관공여계약에 의거, 해당 집행을 중단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심의위를 통해 해당 참여자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건의토록 하겠음. ○ 한편, EDCF는 표준입찰서류 내 기금사업 참여자가 허위자료 제출 시 발주처(수원국 정부)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기금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전공지 중
미승인된 사업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체변경이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집행가능성이 낮은 미승인 사업의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겠음 ○ '26년 정부예산안은 미승인사업을 제외하고 기편성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EDCF 사업 관리 강화(계속) EDCF 사업의 사후평가가 취사 선택되어 이뤄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EDCF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EDCF 업무세칙 등에 따라 사후평가 후보 사업 선정 및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대상 최종 확정 □ 국별·분야별 평가 등 통합 평가를 활용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차관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예외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사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 개정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여신관리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경제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익성, 자금회수 가능성 및 지식재산권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것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과도한 저가 수주나 저리지원이 국제투명성협약 또는 EU 내부의 법률에 저촉돼서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받을 우려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것 원전 수주 사업 관련하여 경제성, 수익성의 예측과 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원전 건설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수은 앞 금융지원 요청 또한 없었음. □ 향후 우리기업이 수주한 원전사업 금융지원시 내규 부합여부,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 ○ 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부지급보증 등 채권보전장치 마련 및 OECD 수출신용협약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금리 적용 예정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현물출자 비율, 동일차주 신용공여 및 KAI 지분 관리 등 강화	
수출입은행에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현금출자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현물출자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BIS 규제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현물출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 정부 검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 중 ○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을 통해 국회의 결산 심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회 앞 요구자료, 업무보고 등 통해 수시로 현물출자 관련 보고를 드릴 예정
수은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적용은 과도함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임의로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은 신용공여한도규정은 수은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소관)에서 정한 사항으로, 수은에서 해당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는 한계가 있음 ○ 수은은 시행령상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상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내규상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최근 10년 이내 신용공여한도 예외승인 사례는 1건)
KAI의 공적 특성 및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KAI의 민영화 이슈에 대응할 것	□ 수은은 현재 KAI 지분 매각(민영화)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로 필요시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하여 대응하겠음.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현물출자 비율, 동일차주 신용공여 및 KAI 지분 관리 등 강화(계속)	
KAI의 리스크관리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지분구조로 인해 KAI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KAI 지분을 정리하고, 즉시 정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것	□ KAI 지분 매각은 수은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정부차원에서의 의사결정 선행 필요 *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자부 장관 사전승인 필요(방위사업법 제35조) ○ 앞으로 KAI의 리스크관리 외에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대주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를 관리함에 있어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위원회에서 대출금 출자전환 건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 수은은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자회사 보유현황, 취득·매각실적 및 회사별 재무상태, 영업실적 현황 등을 점검 및 관리중* * 정기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개최(필요시 수시) ○ '24년부터는 대면회의 개최를 연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 향후에도 수은 출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 □ 한편, 연1회 정기적으로 대출금 출자전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가능성 검토 중 ○ 또한, 매각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수시로 매각 추진 중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남북협력기금 사업관리 및 법원에 공탁된 북한 자금 가압류 등 남북관계의 경색 이후 실질적인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은의 교추협 참여시, 오랜 기금관리·대북거래 지원 및 EDCF · 수출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기금운용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법령상 정부 결정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 ③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 정부가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으로 매년 1조원 내외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 수은은 기금수탁기관으로서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음
남북사업이 활발했던 기간과 경협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기간 모두 같은 규모로 남북본부 인력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예산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수은 남북협력본부는 기금 집행 외에도 기획(제도, 예결산), 관리(대출 사후관리, 무상정산·환입), 연구 등 역할 수행 ○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국정과제 추진 지원을 위해 필수인원 위주 인력 유지 계획 ○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방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음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남북협력기금 사업관리 및 법원에 공탁된 북한 자금 가압류 등 (계속) 북한에 빌려준 자금으로 지은 자산을 훼손시킨 경우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북한의 자금을 가압류 하는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자금을 환수하도록 할 것	□ 수은은 미회수 채권에 관련하여 조선무역은행 앞 상환촉구를 지속*하는 한편, 향후 남북간 대화 재개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 강구 예정 * 최초 상환기일 도래('12.6월) 이후 현재까지 102회에 걸쳐 조선무역은행 앞 상환촉구 통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자금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유가족이 경문협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료 공탁금이 북한 당국 소유인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음.
대북교역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사업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이 운영자금 지원 및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므로 회수가 어려운 금액은 정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정부는 남북 경협기업의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특별대출, 피해지원금 등 유동성을 여러 차례 旣지원 ○ 정부와 협의하여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 대출 사후관리 실시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세수결손 대응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배당금을 과도하게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바, 다른 나라의 국책은행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도화시키고, 배당협의체에 수은 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	□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 국책은행 배당체계를 조사한 결과, 해외 국책은행별 배당체계는 당행과 유사하나 배당금 결정방법은 은행별로 차이 ○ (배당체계) 규정된 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은과 유사 ○ (배당결정) 당기순이익 중 일정비율 배당(日), 전액 내부유보(獨) 등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정부와의 협의가 아닌 명문화된 법령에 따라 결정 □ 정부 훈령(기재부,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당협의체에 각 기관장의 참여가 제한되나, ○ 배당수준이 과도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협의체의 결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배당 총괄부처 앞 적극적인 건의 및 협의 지속 예정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계속)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임금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석인 임원 후보 추천 시 여성후보자를 적극 물색하는 등 임원의 인적 다양성 제고 노력 예정 □ 여성관리자 비중은 지속 증가 중*이며, 향후 5개년 확대 계획도 추가 수립하여 성별 다양성 높일 예정 * 여성관리자 비중현황 : ('21) 19.4% → ('22) 22.8% → ('23) 23.4% → ('24) 25.8% □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 원칙이나, 성별 근속연수 차이로 임금격차* 존재 * 평균 근속연수·임금('24년): 남성(14.3년·129백만원) 여성(11.1년· 92백만원) ○ 최근 여성직원 입행 및 여성관리자 비중 증가로 임금격차는 축소* 추세이며, 향후에도 점진적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평균보수 비율(여/남): ('20) 67% → ('22) 70% → ('24) 71%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계속) 해외근무 직원들의 성과 측정이 불분명하고 국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성과평가 과정에서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며, 특히 대외 여신 지원과 기금 운용 등 당행의 핵심 기능에 대한 업무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 ○ 각 평가군별로 유관부서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영업지원(본점업무/여신/기금업무) 실적 등 정량적인 지표를 집계하여 평가함 □ 해외직원에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되,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수준과 유사한 범위내 운영 중 ○ 상당수(60%)가 최빈국(캄보디아·에티오피아 등)을 비롯한 개도국에 근무 ○ 수은 국외수당은 공무원의 94% 수준(세후) □ 향후에도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하였는바 이를 시정할 것	□ 혁신지침 준수를 위해 노사 합의를 지속 추진 중이나, 노조의 강한 반대로 합의 지연 중 ○ 금리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조 동의 필요 □ 과도한 복지로 비치지 않도록 연내 규정개정을 위한 노조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음

한국조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모바일 신분증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모바일 신분증 위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마련하고 모바일 신분증이 투표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장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이나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	□ **모바일 신분증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 민간 신분증 확인 서비스와 다르게 기울기에 따라 화면이 반응하는 자이로스코프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화면 위조 예방 있음 ○ 이용자 정보를 개인의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어날 수 없으며, 생체인증(안면, 지문) 등 다양한 보안기능을 적용 중 ○ 완벽한 재해복구센터(DR) 구축으로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음
2. 전자여권 핵심자재 국산화 추진 전자여권의 전자칩과 COS의 국산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전자칩 솔루션 개발 및 성능시험 완료** ○ 공사는 국내 삼성전자 칩을 기반으로 한 COS v5.1(Chip Operating System, 전자칩 운영체제)을 자체 개발 완료 □ **전자여권 전자칩 솔루션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검증 로드맵 수립 및 기술 검증 실시** ○ 보안성 검증, 글로벌 규격 및 기능 검증, 내구성 등 신뢰도 검증 로드맵 등 추진계획 수립 완료 ○ 성능, 보안성 및 조달 안정성이 확보된 전자칩 솔루션으로 공인 CC 보안인증, BSI 성능인증을 획득(2025년 10월) ○ 추가 내구성 시험 확인 예정(2025년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여권 재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여권 재발급이 세금 낭비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권 재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외교부와 사안 공유, 지속적 협의 및 개선대책 마련(여권 재발급 가이드라인)** ○ 여권사무 대행기관별 재발급률 분석 및 무분별한 재발급 문제 관련 공사 자체 「여권 재발급 품질 기준 안내(안)」 수립 ○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외교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여권 육안식별 오류 재발급 관련 안내」 게시 및 대행기관 전파 완료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일원화된 행정처리 기준 적용으로 여권 재발급 감소 확인
4.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 압인 도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압인을 장애인복지카드에 도입할 것	□ **장애인복지카드 점자 도입 관련 대책** ○ 한국점자 규격 기준에 의한 점자 높이가 카드의 두께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단순 적용 시 칩, 자기띠 등이 손상될 수 있어 기기를 통한 신분증 인식률 저하와 위변조 방지요소의 훼손도 우려됨에 따라, ○ 화면 글자 읽어주는 음성지원 기능 포함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개발 완료('26.1월 출시 예정) - (근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담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24.10월) ○ 추후에도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성 제고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조폐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와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익성 제고로 경영효율화 추진 ○ 단기 및 중장기 전략에 따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디지털신분증 사업 등 ICT사업과 고부가가치의 잉크·면펄프 수출사업 등을 확대하고, 각 본부 생산부문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영업이익이 '23년 110억원에서 '24년 179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6. 기술개발 개선 방안 마련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세부사업별 집행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 연구활동진흥비 안에 지식재산권 보상을 위한 포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 과목을 신설하여 계상할 것 R&D 투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R&D 권고율에 5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R&D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술개발 추진 ○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진흥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예산 변경 시 기술연구원이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본사 기술개발 주관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관리를 강화하였음. 또한 매 분기 연구과제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도 점검을 체계화하였음 ○ 기존 연구활동진흥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식재산권 보상용 포상금을 2024년부터 별도의 비목('연구용 포상비')으로 신설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개선 완료 ○ 화폐, 신분증 등에 적용되는 보안기술의 연구개발을 확대한 결과, 2024년 R&D 투자율은 7.67%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R&D 권고율(7.00%)을 상회하였으며, 앞으로 AI·ICT기반 디지털 보안기술 등으로 연구개발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화폐 내구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 화폐의 내구성 강화 등을 위한 폴리머 화폐 개발 연구 등 연구개발 확대 필요	**□ 화폐 내구성 관련 연구기술 확보 추진** ○ 은행권 표면에 도포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은행권용 프로텍팅 바니시(보호용 코팅제) 양산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폴리머용 보안잉크 제품도 개발 중임. ○ 화폐의 내구성 강화 등을 위해 프로텍팅 바니시 개발을 통한 화폐의 항균성 향상 연구를 확대하겠음
8. 여권 발급 절차 개선 전자여권 개별배송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절감과 묶음 배송을 검토하고 모바일 신분증과 연계하여 여권의 재택 신청을 도입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업하여 검토할 것	**□ 개별배송 이용률 재고 및 편의서비스 개선 노력 추진** ○ 시행 초기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편의 서비스의 꾸준한 홍보 및 대리인 지정 수령 제도 도입 등으로 이용률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발급신청의 약 22%를 차지 ○ 현재 가족단위 등의 묶음으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 및 신규장비 도입을 준비 중('26년 개시)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분증 연계** ○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공사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인증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향후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공사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과 연계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 문제 해결 일회용컵 보증급제 도입 보류에 따라 중소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간업체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원 조정과정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협력업체 피해문제 해결** ○ 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25.7. 법원의 협력업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사가 수용함 ○ 이에 3개 업체에 총 8.94억원 지급 완료
10. 조폐공사 판매·전시 시설 실적 개선 방안 마련 조폐공사의 판매·전시 시설인 오롯디움관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적을 개선할 것	□ **화폐제품 판매관* 실적 개선 완료** * MINT사업 활성화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롯디움관'에서 '화폐제품 판매관' 으로 명칭 변경('24.11.) ○ 화폐제품 판매관은 공사 최초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공사 골드바, 실버바, 특수압인메달, 화폐기념품(굿즈) 등의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운영 ○ 공사는 화폐제품 판매관 활성화를 위해 화폐굿즈, 광복 80주년 골드바 등 전용 제품개발 및 프로모션, 매장 내·외부 리뉴얼, 신제품 출시 행사(포토세션 등), 인플루언서 SNS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방문객 및 매출액이 증가하였음 **<최근 3개년 화폐제품 판매관 주요 실적>** 구 분 / '23년 / '24년 / '25년 10월까지 (전년대비 증가율) 방문객(명) / 624 / 997 / 1,731 (73.6%) 매출액 (백만원) / 3,950 / 4,877 / 6,609 (35.5%)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휴가 관련 제도 개편 필요 병가 사용을 출근 불가할 때가 아닌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로 개정하고 연차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연차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저조한 연차 사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연차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연차 사용은 노동력 보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질 것	**□ 병가 사용 관련 규정 개정완료** ○ 병가 사용을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관련 규정(취업규칙) 개정 완료 (25. 3월) **□ 연차사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추진** ○ 관리직 솔선수범을 통한 연차사용 확대 - 연도별 관리직 평균 연차 사용일수 ○ 제도 및 문화 개선 시행 - 연차 선사용 제도 도입('25.3.)을 통한 휴가사용권 확대 - 시간단위 연차휴가('24년 도입) 지속 시행 - 휴가사용 권장 캠페인 및 문서시달 진행

연도	'23년 9월	'24년 9월	'25년 9월
일수	1.8	5.3	5.4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여성 임직원 비율 확대 여성 전체 임직원 비율이 27%에 불과하고 여성 고위직은 7%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여성 비율 확대 노력**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적용 직렬과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ICT직 신규 적용, 기술직 비율 확대 등)하여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함 ○ 그 결과, 신규 채용자 중 여성비율이 '21년 20%에서 '25년 41%로 2배 이상 증가함 **□ 여성 고위직(관리자) 비율 확대 노력** ○ 공사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풀 확보, 정기 승진 인사 시 여성인재 발탁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여성 인재를 승진임용하고 있음 - 여성 관리자수 비교 ○ 또한 승진인사에 그치지 않고 관리·생산·ICT 등 경영 전 분야의 주요보직에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기회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쇄처장, 성과관리처장, ICT운영개발처장 등

연도	'13년	'24년	'25년
여성관리자(명)	2	9	10
전체관리자(명)	123	121	121
비율(%)	1.6	7.4	9.1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GKD 경영 실태 개선 방안 마련 GKD 경영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행위가 밝혀진 직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	□ GKD 내부감사제도 고도화 등 내부통제 강화 및 현지 점검 실시 ○ 모든 지출사항 및 견적서 등에 대해 GKD 경영감사실을 신설하여 사전 모니터링 중 ○ 지출권한을 회수하여 대표이사 승인 범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부산물 무단반출도 금지하였음 ○ 모회사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사 감사실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내부통제 취약 분야를 보완하였으며, CEO 현지 점검을 통해 경영 정상화 및 생산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음 □ 업무분장 조정 및 관련자 징계 처분 ○ 부정행위에 대한 상호견제체계 정착을 위해 업무분장 조정 완료하였으며, 부정행위가 밝혀진 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완료하였음 (공사직원 4명, 현지직원 15명) □ 이와 같은 GKD 경영실적 개선 노력을 통한 실적 개선 ○ '24년도 GKD 역대 최대생산량(14,849톤) 및 최대매출액(25,838천달러) 달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지역 본부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 강화 제지본부가 환경법을 위반하는 등 지역본부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분기별 관리·감독 실시 중** ○ (지역본부) 체크리스트 관리를 통한 지역본부 보고체계 개편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본사) 환경법규 준수평가를 통한 지역본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였음 ○ 그 결과 '24년 이후 환경법규 위반사례 없음
15.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 조폐공사 직원들의 열람 건수는 증가하고 미신고율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것	**□ 해킹메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임직원들이 국내외 유포되고 있는 해킹메일의 주요특징을 파악하고 보안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근 증가 추세의 생성형 AI를 악용한 해킹메일 보안 교육 실시 ○ 미 신고자에 대한 해킹메일 대응 교육 추가 실시 **□ 최근 발생한 해킹메일 인지 제고** ○ 최근 유포된 피싱 메일과 비슷한 유형으로 훈련메일을 제작 및 훈련 실시(생성형AI 활용한 훈련메일 제작,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문구 적용 등) ○ 공사 메일로 유포되고 있는 해킹메일 분석 및 전사 열람주의 안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사업타당성과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 필요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어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통합전자지갑) 사업 중단 관련** ○ 성장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공적 역할 모색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로 선정('23.4.)되었으나, 관련시장 미성숙 및 시범사업 성과 미진으로 사업 중단(새로운 사업에 활용을 위해 소스코드나 산출물 관리 철저) ○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겠음
17.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관련 제도 개선 콤스코시큐리티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 특수경비원들에게 가산세 납부동의여부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철회할 것 콤스코시큐리티의 특수경비원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상향하고 특수경비원 시중노임단가 상향 계획을 마련할 것	□ 콤스코시큐리티는 근로자들에게 가산세 납부동의여부 요구 이후 국세청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재인정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2024년 10월 전원 환급 조치함 □ 전 사업장 근무시설별로 휴게시설을 설치 완료 후 대전지방노동청 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24.10. / '24.12.)'으로 인증 받았으며, 모자회사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활동 지속 중 □ 공사는 현재 자회사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이 지급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종업계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조폐공사 사업의 다각화 방안 검토 조폐공사의 개척형 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전략을 재검토하여 새롭게 수립할 것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CBDC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으로 사업다각화 노력** ○ 전통적인 수주형 사업 의존도 감소 및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공사 주도형 사업인 개척형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중에 있음 ○ 개척형 사업(보안인쇄 부문, ICT사업 등)의 성장을 위해 설비 투자 및 사업 인력 부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단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전략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CBDC 발행방안 검토**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CBDC 기반 지급결제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음 ○ 공사는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결제와 신원인증 등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공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 전문인력의 높은 퇴직률 개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내부 육성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할 것 전통자산 운용역의 퇴직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우수인력 확보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보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등 개편 - 성과-보상 연계 강화 원칙으로 시장 대비 보상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적급 기준 비율을 상향하는 보상 체계 개편 완료('23년) - 직무별 보수 차등을 확대 적용한 직무급제 개선으로 보수체계 고도화 추진('25년) - 전문계약직 제도를 외부 영입(채용) 중심에서 운용 부서 대상(내부전환)으로 확대 개편하고, 성과 중심 보상 체계 강화와 고위직 성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우수인력 유지 제고('25년) ○ 보상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 시장 대비 열위인 일부 직급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직급별 기준급 인상률 차등 조정 통해 보상경쟁력 지속 강화 추진 - 지속적으로 글로벌 컨설팅업체를 활용하여 시장 대비 보수 수준을 파악하여 업적급 제도 개선을 통한 보상경쟁력 강화 추진 ○ 비금전적 동기부여 강화방안 발굴 지속 - 해외근무 및 연수기회 확대, 조직문화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복지 등 비금전적 동기부여 강화방안 지속 발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외 주재원들의 귀국 후 퇴임 문제를 개선할 것	□ 해외 주재원의 장기근속 유도 제도 마련 ○ (장기 커리어 로드맵 제공) 귀임 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운용역의 커리어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경력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는 제도 마련 검토 - 해외 주재 경험이 직무 역량(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 귀임 후 이직보다는 내부 성장과 안정적 경력 발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2. 저조한 투자수익률 개선 및 전략적 투자 대책 마련 KIC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낮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위탁운용사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용사 선정과정 투명화, 성과·페널티시스템 구축 및 지나치게 높은 위탁운용 수수료 산정체계 점검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공사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토대로 성과 기반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금 운용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 중 ○ (전통자산) 고정 수수료가 국제표준으로 타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경우에도 고정수수료 방식 계약 체결 - 운용 수수료는 자산 운용 대가 및 비용으로 글로벌 표준으로 여겨지는 합리적 수준의 고정 수수료를 지급 • 운용사 선정 시 동일 전략에 투자하는 기관 대비 최저 수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수료를 확보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 • 위탁 규모가 확대될 경우 Breakpoint (투자 규모별 단계적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하여 총보수율이 불필요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 - 장기성과가 우수한 전략은 투자 규모 확대, 운용역량이 저하된 전략은 투자 규모 축소 또는 전액 해지를 통하여 보상과 페널티를 부여 ○ (대체자산) 성과 모니터링 정교화 및 성과 부진 운용사에 대한 투자 중단 등의 개선방안 실천 중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td><td>- 성과 부진 위탁운용사에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수수료 조정, 투자 기간 종료 이후 차기 펀드에 대한 투자(Re-up)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성과·페널티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

• 일정 수준 이하의 성과를 기록하는 투자건에 대해서는 리스크전문 위원회를 통하여 부진 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td></tr>
<tr><td>공사의 운용 수익률이 타 국내 연기금이나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 시 낮다는 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 및 우수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조직의 역량을 높일 것</td><td>□ 기관목표, 투자방식, 인력 등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

○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 시계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및 흐름에 대응
- 절대수익체계 도입(19년), 자산배분 정책 비중 변경(22년), 채권 정책 벤치마크 변경(24년),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 계획(25년~) 등 중장기 절대 수익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 노력을 지속

- 올해 들어 수익률 개선 중(11.7%,'25.9)
(기간별 연환산, %)<table><tr><th>구분</th><th>~2018
(도입 전)</th><th>'19~'25.9
(절대수익체계 도입 후)</th><th>~2025.9
(기간전체)</th></tr><tr><td>총자산</td><td>4.0</td><td>7.8</td><td>5.4</td></tr></table>- 단, 국/내외 연기금 및 국부펀드는 기관별 설립 목적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배분과 평가에 대한 기준통화, 결산월 등 투자정책 차이로 성과의 일률적 비교가 어려움</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외지사별 투자실적이 집계되고 있지 않아 자산 운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 하고, 기관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화바스켓 수익률과 달러 기준 수익률을 병행해서 공개할 것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투자 전문인력 확보 추진 - 'KIC 新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마련한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실행 ('25년 6월) • 해당 계획에 따라 투자 운용인력 확보, 육성 및 유지 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해외지사 역할 및 평가체계 개선 ○ 해외지사의 주도적 역할 확대 및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효율화 지속 추진 - 해외지사 맞춤형 계좌 확대 등을 통한 지사 역할 확대 ('25년 6월) ○ 해외지사 투자역량 및 인력 전문성 강화 - 해외지사 대체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파견 확대 - 현지 채용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현지 시장의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확보 ○ 성과관리 체계 개선 - 모든 해외 지사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통화바스켓 수익률은 환 변동 효과를 배제한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가치 변동 분석을 위해 내부 지표로 활용 중 ○ 외부 요청 시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병행 공시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등을 고려해 검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에 활용하라는 목적으로 위탁된 7조원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 첨단기술기업 인수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집행할 것	□ 전략적투자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국내 위탁운용사 선정 및 개별프로젝트 투자 검토 병행을 통해 본격 집행할 계획 ○ 투자 건 검토시 전략적 시너지 면밀히 검토해,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해외 실사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므로, 부동산 투자 위험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 운용세칙 상 명시된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있으며, 여러 단계의 투자 검증 심의/의결을 통해 리스크 사항을 재점검하고 있음 ○ 부동산 해외 실사 시, 별도 부서인 리스크관리실에서도 실사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리스크 검토를 이행 중 ○ 상업용 부동산 관련 우려에 유의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구하고 기투자자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
3. 국부펀드로서의 사회적 책무 등 수행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투자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하	□ 공사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기관투자자의 주식 투자는 글로벌 범용지수(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내 있는 약 3,000여 종목에 대하여 분산 투자 ○ 벤치마크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벤치마크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 해당 종목들은 가상자산 투자 목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는 것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립된 투자 방침을 세울 것	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 - 관련 회사들은 해당지수(벤치마크)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동 기업에 벤치마크 비중과 유사한 규모로 투자 □ 향후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치마크 비중 대비 과도한 확대나 축소를 지양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
ESG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ESG 투자수단을 개발하며,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것	□ ESG 투자 강화 및 다변화 추진 ○ 공사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초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신규 ESG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ESG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 지속 - (신규 전략 추진) 기후 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 및 리스크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신규 주식 전략을 발굴하고 현재 선정 추진 중이며, 향후 채권·대체투자 등 他자산군으로 확장 검토 - (투자 기회 발굴) 탄소 자산, 기후 적응 기술, 임팩트 투자 등 신규 지속가능투자 테마 리서치 강화 및 투자 실행 방안 모색 - (신규 투자배제 테마 도입) 외부 자문용역을 통해 신규 투자배제 테마로 아동노동(child labor) 도입하고, 주주권리 연계 등 실행 전략 강화 ○ 공사는 현재 모든 투자의사 결정에 ESG 요인을 고려하는 ESG Integration 체계를 구축하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 (ESG Investing) ESG 요인을 주요 투자 아이디어로 고려, ESG 전략 펀드 투자, 녹색 및 사회 프로젝트 투자 등 운용 - (ESG Review) 전통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대체자산 직접/공동/간접 투자 건에 대해 ESG 관점 투자 검토 수행 - (ESG Program) 전체 자산군 대상 ESG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테마·산업에 대한 투자배제 및 전통자산 직접 운용 대상 ESG 열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제한 ○ 녹색 채권 발행의 경우 관련 제도 및 정책적 기반 조성에 위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
투자공사가 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 기업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투자 규모 및 비중을 조정할 것	□ 공사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범용지수(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MSCI All Country World Index에 있는 약 3,000여개 주식 분산 투자 중 ○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산업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님 ○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국 기업에 대한 일부 투자는 글로벌 펀드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 단기 손실이 발생한 일부 투자의 경우 시장 변동성 등 외부요인에 따른 일시적 평가손실로 장기성과 기준에서는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가 전략산업 관련 투자는 투자 비중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연차 보고서, 위탁운용사 현황 등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	□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연차보고서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투자운용 (성과, 자산배분 등), 재무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 및 보고 ○ 다만,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글로벌 국부펀드의 경우 정보 공개에 제한적 - 외환보유고 등 국부 운용전략 노출에 따른 투기 세력 약용 가능성과 기관 신뢰도 하락 우려에 따라 세부 투자 내역은 비공개 - 특히 개별 위탁운용사명 등 세부 사항은 공사의 투자 전략과 포지션을 노출하여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어 자산 운용 효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 □ '24년 국정감사 이후 부동산/인프라 자산군별도 구분 정보, 대체자산 연도별 수익률 등을 공개 ○ 향후에도 외환보유액 운용의 특수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노력
해외기업 공동투자 역할 강화를 위해 전략투자팀 인력을 확충하고,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인도	□ 전략적투자 활성화 ○ 전문인력 지속 확충 중이며, 복수의 투자 건 검토를 통해 투자집행 제고 ○ 현재에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투자 건을 균형 있게 검토 중이며, 중소·중견 기업들 및 관련 운용사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뭄바이사무소 개소 후 투자성과가 미미하므로 인도 뭄바이사무소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 할 것	기회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양성 추구할 계획 □ 뭄바이사무소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 ○ (투자역량 강화) 설립 시점을 전후로 하여 현재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 - 우수 매니저와의 전략적인 협업을 목적으로 공동투자 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인도 전략 강화중 - 본사 대체투자본부 및 싱가포르지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Deal-sourcing 및 Deal Delivery 시스템 구축 - '지역/전략별 다변화' 및 '인도 경제 성장에 따른 Capture Growth'를 위해 공동/직접투자 기회 선제적 발굴 노력 ○ (사무소 운영 안정화) 신규 사무소 설립에 따른 운영체제 및 관리 안정
4.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동북아의 금융 허브 취지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운영과정을 점검할 것	□ 공사 경영 전반적인 운영 점검 ○ '25년 KIC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장기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25년 6월) -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국부 증진 및 국가 미래가치에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수립 -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관점의 중장기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마련 ○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 - 국내 운용사 위탁규모 지속적 증가 ('22년) 5개社 5.4억 달러 → ('25년 8월) 7개社 11.6억 달러 - 주식거래 국내증권사 위탁 프로그램 지속적 추진 ('25년 8월 기준 38.4억 달러 규모) - 국내 은행 해외점포 론 신디케이션 참여 주선 ('25년 8월 기준 누적 20억 달러 실행)
세수 결손 대응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배당금을 과도하게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바, 당기순이익의 전액을 정부 배당액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업 진행의 차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국책은행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 배당 성향은 정부 배당정책, 당기순이익,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부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 ○ 공사는 자산 운용 업무 특성상 제조업과 달리 인프라,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 소요계획이 빈번하지 않아 타 기관 대비 배당 성향이 높은 측면 존재 ○ 재무적 안정성 및 장기 기관 성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정부 협의를 통해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내부 배당원칙을 수립, '24년 운영위원회 결산안 보고('25.3월) ○ 공사와 유사한 업무 특성을 지닌 기관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학자와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할 것	□ 정부 방침 및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제한 정책을 내부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 ○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지 못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하도록 「윤리·행동강령」에 규정함 □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공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중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 공사법 제11조에 의해 투자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타기관 대비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 공사는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적합한 민간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중요 사안들은 국회에 정보를 정확히 보고할 것	□ '24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심의·의결 결과, 회의록 및 안건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공개범위를 확대 ○ 다만, 투자전략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거나 임원 선임 후보자군 관련 안건 등의 경우, 외부 공개 시 협상력 약화 우려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고려하여 제한적 정보 공개가 불가피 ○ 공사는 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향후 공개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단기성과 위주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연지급비를 도입할 것	□ 장기운용성과 평가 반영 및 업적급 등 이연제도 운영 현황 ○ 장기운용성과 평가 반영 -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과도한 리스크 방지 및 안정적 수익 창출 유도 위해 당해 연도 성과와 함께 장기 운용 (3년~10년) 성과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업적급 등 이연제도 운영 현황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 유도 및 우수 핵심 인재 유지를 위해 업적급 및 초과 성과 인센티브에 대한 이연제도 도입 - 업적급은 당해 연도 업적급 총액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3년간 6:2:2로 나누어 지급 - 초과성과인센티브는 3년간 6:2:2로 나누어 지급

한국재정정보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 향상을 위한 노력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 증가를 위해 합동현장점검 활성화, 보조금부정징후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정수급 적발률 향상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 확대 및 점검역량 강화 ○ (현장점검 확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합동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부처·공공기관·지자체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재점검 요구 또는 특별 합동 현장점검 추진 ○ (점검역량 강화) 내·외부 전문인력 참여 확대, 자체점검 적발률 제고를 위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부정수급 점검 담당자 교육 □ 지속적인 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 (탐지패턴 개선) 부처의 보조금 관련 제도 및 부정수급 사례 분석,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탐지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부정징후 탐지 정확도 제고 ○ (연구용역 추진)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 징후 탐지패턴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디브레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디브레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분할 수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출성과 달성을 위한 전사 TF 구성 및 국제협력 강화 ○ (민관협의체 구성) 공공, 민간간 해외진출 협력 사례 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모색* * 공공행정 디지털 플랫폼 민관협의체 개최(2회) ○ (사절단 파견) 범정부 단위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 사절단 파견('25.5.) ○ (업무협약 체결) PEMPAL(유라시아 재정협력 네트워크) 회원국 재정정보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5.6.)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이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외수입포털 이용실적 제고 ○ (홍보강화) 고지서에 포털을 공식 안내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개선 추진 - (민간포털 활용) 주요 포털(구글, 네이버 등)에서 국세외수입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우선 검색될 수 있도록 대국민 대상 지속 홍보('25.2.~) - (타 재정시스템 활용) dBrain+, 열린재정, 국유재산포털 등을 홍보에 활용('25.4.) - (양식변경) 포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안내문구 및 QR코드 추가('25.6.)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모바일납부 방식, 정보제공 강화 등 시스템 개선 수행 - 모바일웹을 이용한 납부기능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 개선 ('25.7.) - 사용자 친화적인 메뉴체계 구성 및 국세외수입 관련 콘텐츠 추가('25.8.)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재정정보분석센터의 효율적 운영 재정정보분석센터의 연구실적을 증진하고 연말에 편중되는 보고서 발간 시점을 개선할 것	□ 재정정보분석센터 효율적 운영 노력 ○ (연구주제 발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연구 주제 발굴 추진 - 기획재정부·유관기관 등 연구 주제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진행('25.10.~11.)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재정정보분석 계획 수립('25.12.) ○ (발간 시점 개선) 연구계획 수립 및 진행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연말 편중 현상 완화
5. 사무실 이전 임대계약 시 예산 낭비 여부 확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새로운 임대계약 시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23.6. 일시 계약(메트로타워) 이후, 신청사 임대차 계약을 위해 주변 건물 시세를 조사하였으며, 가장 낮은 임차료 수준이었던 서울시티타워와 계약 체결('23.9.) □ 향후 임대차 계약 추진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장애인·청년 의무 고용 준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인사제도 개선 장애인 및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인사 관련 직원과의 소통강화 및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고 ○ (목표 달성) '25년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100% 달성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홍보, 장애인 고용공단 컨설팅 등 추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원 POOL 확보 및 지속 채용 추진 □ 청년 고용 의무 고용 제고 ○ (목표달성) '25년 청년 채용 목표 100% 달성 - (홍보 강화) 대학 채용설명회,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통한 청년 대상 채용 홍보 강화 □ 소수자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 (교육 운영) 신규 채용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 매년 여성리더십 교육 및 여성관리자 양성과정 운영 ○ (홍보 강화) 여성, 장애인 소수자 실질적 기회 확대를 위한 채용 홍보 추진 ○ (역량 강화) 차세대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리더십, 리더스 포럼, 중간관리자 등) 운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 노력

한국원산지정보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원산지정보원의 역할 강화 필요 원산지 도용을 막고 국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 증명 전문성을 확보하고 표시 업무뿐만 아니라, 단속 및 교육 등에서도 역할 할 것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정착 및 글로벌 관세·원산지 리스크 대응 지원 등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역량 집중 ○ 국내산 물품 보호와 원산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 ❶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 발간('24년, 10개 품목) ❷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24년12월) ❸YES FTA 전문교육을 통해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증명제도 교육 실시('24년 20회, '25년10월 20회) ○ '25년에는 수출업계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실질적 변형 판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 철강, 자동차 부품, 식품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등 주요품목 원산지 판정사례집(5회), Origin Case(월간, 76건) 발간('25년 10월) – 주요 FTA체결국*을 대상으로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변화(양허 훼손 및 보호주의적 양허변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수혜 누락 방지를 추진하는 한편, * 우선 점검 대상 : 한-미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및 한-인도 CEPA – 중소 제조·수출기업의 EU CBAM 대응을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 내 거래 물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관리기능을 구축('25년12월 완료 예정)하고, – 인증수출자 인증 이후의 관리 강화를 위한 서면·현지확인 등의 사후관리 지원업무 수행 및 인증요건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현장컨설팅**을 제공함 * 사후관리 지원 총 161건('25년10월) ** 관세사 등 원산지관리 전문가 현장 컨설팅 87개 업체('25년10월)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원산지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조직 운영 관련 개선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보유한 주식 중 관세청 퇴직자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할 것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	□ 조직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 비상장 주식 처분을 위하여 분기별 수시매각 공고 중이며, 현재까지 ❶자기 주식매입, ❷다른 주주들의 매입 의사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24년 청년 2명, '25년(10월) 청년 6명을 신규 채용하여 청년 의무고용(2명)을 이행하였음 □ 앞으로 비상장 주식 처분과 청년층의 고용 문제 해소 및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음
3.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자격시험 관리 개선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자격시험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므로,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합격률, 난이도 출제오류율 등을 개선할 것	□ 자격시험 출제오류 방지를 위해 오류검증 및 사전검토 시간 확대 등 자격시험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수행 ○ 오류검증 강화*를 위해 교정작업 인원을 추가 배치(1명)하고, 출제·선정위원 대상 시험 합격률 및 이의제기에 대한 피드백 제공 * '24년 문제 오류 1건 → '25년 문제 오류 0건 ○ 또한, 수험생 이의제기에 대한 체계적 심사 및 출제문제 품질 개선을 위한 정답심사위원회를 신설('24년 11월)하였으며, ○ 안정적 합격률 유지*를 위해 3단계(사전검토, 오류검증, 문제선정) 난이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24년 평균합격률 43.8% → '25년 평균합격률 33.3% (전체 평균합격률 31.4%로 평균합격률 안정성 개선) □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문항과 보안 체계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하여 유사사례 분석, 보안성 등 관련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수요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마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수요는 급증하나 담당인력 수는 10년 가까이 변함이 없으므로, 적기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적기시행과 사후관리 강화 지원 ○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관과의 간담회* 및 자체 내부교육**을 통해 예비조사 품질 제고 * 관할세관과의 업무간담회('24년 10회, '25년10월 12회) ** 자체 내부교육 실시('24년 20회, '25년10월 22회)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이후의 관리 강화를 지원 - 인증수출자 운영 고시를 개정하여, 원산지정보원 지원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 추가(시행 2025.2.12.) - 원산지관리팀 신설 및 인원을 배치(2명)하여, 서면·현지확인 등의 사후관리 지원업무 수행 및 인증요건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 대상 원산지 관리 현장컨설팅**을 제공함 * 사후관리 지원 총 161건('25년10월) ** 관세사 등 원산지관리 전문가 현장 컨설팅 87개 업체('25년10월) □ 인증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수요에 맞춰 관련 업무의 신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및 정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 관세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52) : 원산지정보원으로 이관

한국통계정보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장애인 의무고용을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려는 태도를 지양 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 법정 비율을 준수할 것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연계 및 제도 활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장애인 고용 통합컨설팅' 및 '장애대학생 기업탐방 프로그램' 참여 - ('25.6.19.) 장애인 고용 통합컨설팅 참여 - ('25.7월~8월) 전산 직무 3명 인턴 채용 ○ 무기계약직 대체 인력, 기간제, 청년인턴 등 일반 채용 시 장애인 우대가산점 제도 지속 시행 중('24.1분기부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역량 진단' 및 '장애인 고용 통합컨설팅' 등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예정 * 행정지원(사무보조, 문서·자료관리 등), 전산·연구 및 통계 보조 등 직무 발굴을 통한 채용 확대
2. 여성 관리직 비율 제고 여성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직 비율을 제고할 것	□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관리 직무분야에 대한 사내공모 시행 ○ '24년에 이어 '25년에도 팀장급 관리자 중 2명을 여성 관리자로 선임('25.5.1. 인사발령) ○ 향후 평가 및 승진에 성과, 역량 및 리더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리자 직무분야 사내공모를 실시하여, 여성 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예정